

2019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정오표

페이지	수정 전	수정 후
128p	34.0%	91.7%
	3.2%	6.8%
129p	33.4%	89.3%
	3.3%	9.4%

179p 표 3-9

수정 전

<표 3-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구 분	일반국민(=N=1,000)			경영단체(N=100)			노동단체(N=111)			X^2
	적정	부정적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야 함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야 함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야 함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50.0	33.2	2.4	66.0	30.0	16.0	36.0	56.9	3.1	18.897***
개정 산안법 (가중처벌) 적정성	62.9	32.6	3.6	70.0	26.4	2.9	60.0	23.5	22.7	2.490
개정 산안법 (수강명령) 적정성	64.6	29.1	4.8	74.0	15.0	10.0	58.2	31.4	3.6	5.840
현행 산안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41.1	34.0	3.2	60.0	20.2	8.1	29.7	35.2	1.5	20.474***
산안법 사망사건의 양형인식	24.3	33.4	3.3	56.6	23.1	5.8	25.5	34.9	1.4	47.684***

*** p<.0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수정 후(빨간색 표기 수정)

<표 3-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구 분	일반국민(=N=1,000)			경영단체(N=100)			노동단체(N=111)			X ²
	적정	부정적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양형 기준을 높여 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 야 함		양형 기준을 높여 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 야 함		양형 기준을 높여 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 야 함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50.0	44.7	3.2	66.0	20.0	10.7	36.0	56.9	3.1	18.897***
개정 산안법 (가중처벌) 적정성	62.9	32.6	3.6	70.0	26.4	2.9	60.0	23.5	22.7	2.490
개정 산안법 (수강명령) 적정성	64.6	29.1	4.8	74.0	15.0	10.0	58.2	31.4	3.6	5.840
현행 산안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41.1	54.0	4.0	60.0	26.9	10.8	29.7	65.3	1.7	20.474***
산안법 사망사건의 양형인식	24.3	67.6	7.1	56.6	33.4	8.4	25.5	68.7	1.7	47.684***

*** p<.0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기타 제외

연구보고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이 진 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 조사”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9년 10월

연구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 2019. 3. 13. ~ 2019. 10. 31.

연구책임자 : 이진국(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동연구원 : 송강직(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도우(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양승국(아주대 연구원)

요 약 문

연구기간

2019. 3. 13. ~ 2019. 10. 31.

핵심 단어

산업안전보건법, 제재인식조사, 안전보건조치의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 양형기준

연구과제명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 연구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도를 제고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책임에 적정한 형량을 확보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에서 출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일반국민,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는 일반국민들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과악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규정과 관련된 사항과 양형기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한 온라인 패널조사방식으로 2019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약 10여일 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표본은 95% 신뢰수준($\pm 3.1\%p$)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영자(사용주)집단과 노동자(근로자) 집단을 구분하여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집단 조사는 경영자집단 100명과 노동자집단 100명

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 경기, 경남지역의 경영자 단체와 노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자기기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경영자단체 103부, 노동단체 12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경영자단체 100부와 노동자단체 113부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결과

(1) 인식조사 결과

인식조사 결과 일반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모두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순응도 및 적정성 인식에서는 대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지는 반면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정확한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정된 법안 중 처벌강화 및 수감명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현행 양형기준의 가중 및 감경요인들에 대하여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만큼 이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업종별 인식 차이는 대체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받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이 그렇지 않은 일반국민들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높게 나타나

고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 간의 인식수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하여 인식수준이 다소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결론 및 논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범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본 연구의 인식조사 결과도 현행 처벌규정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0%에 불과하여 법정형 상향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범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치사의 결과에 대해 법정형의 상향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양형기준이 부적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4.7%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양형기준보다 낮아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현행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하여 권고형량범위를 상향해야 한다.

3. 연구의 활용방안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규범적 조정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4. 연락처

- 연구책임자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진국
- 연구상대역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
 - ☎ 052) 703. 0824
 - E-mail psy0906@kosha.or.kr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범위	3
제3절 연구의 방법	4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 및 선고형의 적정성 평가방법	4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 방법	5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성 ...	7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의 적용실태	7
1.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벌칙규정과 법정형	7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공식 통계	14
3.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분포에 관한 실태조사	18
제2절 환경 관련 법률상 벌칙규정의 적용실태	25
1. 환경 관련 법률상 주요 벌칙규정과 법정형	25
2.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43
3.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형량분포	61
제3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의 실태	64
1. 영국	64
2. 미국	74
3. 일본	83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검토	92
1.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92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형의 적정성 검토	97
3. 결론	103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 105

제1절 조사개요	105
1. 조사배경 및 목적	105
2. 조사설계	105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08
1. 일반국민	108
2. 경영자(사업주) 및 근로자	112
제3절 일반국민의 인식도 조사결과	115
1.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115
2.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118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 및 양형태도	121
4.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124
5.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130
제4절 업종별 인식비교	135
1.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135
2.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139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 및 양형태도	147
4.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152

5.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162
제4장 집단 간 인식조사 결과비교	166
제1절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166
1.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166
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제공 수준	168
3.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169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171
1.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171
2.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인정도	172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평가	173
4. 처벌강화의 필요성	175
제3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의 적정성 평가	176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176
2. 관련 법령의 적정성 인식 비교	178
제4절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180
1.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180
2. 양형기준의 신뢰성 인식	181
3.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식	182
4.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의 인지여부	184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185
1.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일반적 인식	185
2.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187
3. 산업안전보건법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188

제5장 결 론	190
참고문헌	193
ABSTRACT	194
# 부록 : 교차분석표	197

표 차 례

<표 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와 환경관련 법률 위반범죄 소추 실무(2016년)	4
<표 2-1>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발생 및 검거현황	14
<표 2-2>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15
<표 2-3>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현황 ...	16
<표 2-4> 최근 10년간(2008~2017) 제1심 법원의 처리	18
<표 2-5>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처리(자연인)	19
<표 2-6>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처리(법인)	20
<표 2-7>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에 대한 징역 및 금고형의 분포	21
<표 2-8>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금고형의 기간 ..	22
<표 2-9>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분포	23
<표 2-10>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 액수	24
<표 2-11>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부수처분 선고현황 ..	25
<표 2-12> 환경범죄 발생·검거 현황(2008년~2017년)	44
<표 2-13> 최근 5년간 주요 환경사범의 죄명별 발생현황	45
<표 2-14> 최근 5년간 환경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	46
<표 2-15> 2017년 환경범죄의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	47
<표 2-16> 환경관련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제1심 공판처리 현황	49
<표 2-17> 환경사건 유형, 발생매락, 오염원, 위반행위별 1심 평균 징역형량	62
<표 2-18> 환경사건 유형, 발생매락, 오염원, 위반행위별 1심 평균 벌금액수 ..	63

<표 2-19>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3A	65
<표 2-20> 영국 HSE 사건 수 별 범집행 조치 내역 및 추이	68
<표 2-21> HSE/지방정부 통지건수	68
<표 2-22> 영국의 산업별 기소된 위반건수 및 유죄건수	69
<표 2-23> 2015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민사벌금	77
<표 2-24> 2019년 민사벌금 기준	78
<표 2-25> 연방산업안전청(OSHA) 점검/집행 활동	79
<표 2-26> 연방산업안전청(OSHA) 주요 사건(벌금액 기준)	80
<표 2-27> 역대 최대벌금액 부과 기업	81
<표 2-28> 일본의 사망자·사상자 수 및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휴업4일 이상)	86
<표 2-2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	98
<표 3-1> 조사설계	106
<표 3-2> 이해집단 대상 조사설계	106
<표 3-3> 주요 조사항목	107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국민)	108
<표 3-5> 조사대상자의 업무상 특성(일반국민)	110
<표 3-6> 조사대상자의 업종별 특성(일반국민)	111
<표 3-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경영자&노동자)	112
<표 3-8> 조사대상자의 업무상 특성(경영자&노동자)	114
<표 3-9> 집행유예 인자에 대한 인식	134
<표 3-10> 업종별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136
<표 3-11> 업종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일반국민)	138

<표 3-1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140
<표 3-13>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관성 인지 (일반국민)	144
<표 3-14> 업종별 산업안전기본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145
<표 3-15>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147
<표 3-16> 업종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일반국민)	148
<표 3-17>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150
<표 3-18>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151
<표 3-19> 업종별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153
<표 3-20> 업종별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154
<표 3-21> 업종별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156
<표 3-22>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일반국민)	158
<표 3-23>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일반국민)	160
<표 3-24>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161
<표 3-25> 업종별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163
<표 4-1>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비교	167
<표 4-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비교	169
<표 4-3>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중복응답)	170
<표 4-4>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비교	171
<표 4-5>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비교	173

<표 4-6>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반성 인지 비교	174
<표 4-7>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비교	176
<표 4-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비교	177
<표 4-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179
<표 4-10>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비교	181
<표 4-11> 양형기준의 신뢰여부 비교	182
<표 4-12>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인식 비교	183
<표 4-13>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비교	185
<표 4-14>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비교	186
<표 4-15>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188
<표 4-16>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189

그림 차례

[그림 3-1] 근로자 및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 ...	115
[그림 3-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일반국민)	116
[그림 3-3]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복응답)	117
[그림 3-4]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118
[그림 3-5]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일반국민)	119
[그림 3-6]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엄격성 및 일관성 인식(일반국민)	119
[그림 3-7] 현행 산업안전기본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120
[그림 3-8]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121
[그림 3-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일반국민)	121
[그림 3-10]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122
[그림 3-1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123
[그림 3-12]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124
[그림 3-13]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125
[그림 3-14]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125
[그림 3-15]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인식(일반국민)	126
[그림 3-16]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127
[그림 3-17]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128
[그림 3-18]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129

[그림 3-19]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130
[그림 3-20]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131
[그림 3-21]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132
[그림 3-22] 업종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 (일반국민)	135
[그림 3-23] 업종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 (일반국민)	136
[그림 3-24] 업종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일반국민)	137
[그림 3-25] 업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복응답)	139
[그림 3-26]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일반국민)	140
[그림 3-27] 일반국민의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중복응답)	141
[그림 3-28]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인지(일반국민)	142
[그림 3-29]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일관성 인지(일반국민)	143
[그림 3-30] 업종별 산업안전기본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145
[그림 3-31]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	146
[그림 3-32] 업종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일반국민)	148
[그림 3-33]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149
[그림 3-34]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151
[그림 3-35] 업종별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152

[그림 3-36] 업종별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154
[그림 3-37] 업종별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155
[그림 3-38] 업종별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지여부(일반국민)	156
[그림 3-39]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일반국민)	157
[그림 3-40]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일반국민)	159
[그림 3-41]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161
[그림 3-42] 업종별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162
[그림 3-43] 업종별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164
[그림 3-44] 업종별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165
[그림 4-1] 근로자 준수수준	167
[그림 4-2] 경영자 준수수준	167
[그림 4-3]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비교	168
[그림 4-4]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170
[그림 4-5]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비교	171
[그림 4-6]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비교	172
[그림 4-7] 처벌의 엄격성 인지	174
[그림 4-8] 처벌의 일관성 인지	174
[그림 4-9]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비교	175
[그림 4-1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비교	177
[그림 4-11] 양형위원회 인지여부	180
[그림 4-12]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180
[그림 4-13] 양형기준의 신뢰여부 비교	181
[그림 4-14]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인식 비교	183

[그림 4-15]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비교	184
[그림 4-16]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비교(경하게)	186
[그림 4-17]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비교(중하게)	186
[그림 4-18]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187
[그림 4-19]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18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가형벌권이 형사제재를 운용할 때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작용하는 것은 형사제재와 관련한 법규정의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당해 범죄의 불법과 그의 인격에 적합한 형사제재의 옷을 입힘’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과거에 자신이 범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상쇄하게 하고, 장래의 재범의 방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전체 공판사건 중 자백사건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우리나라 형사사법의 현실에 주목해보면, 행위자에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당해 범죄사건에 대한 유·무죄 여부보다는 자신에게 선고될 형사제재의 종류와 구체적인 형량이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것이 타당한 추론이라면 우리나라의 형사정책에서 중요한 접근방식은 바로 행위자에게 적정한 형사제재를 선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분야에서 법원이 선고하는 형의 종류와 그 범위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범력이나 실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는 고의의 진정부작위범으로서 그 불법성이 중한 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전과가 있음에도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는 것이 일상적이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는 저지를 만한 것이 된다.”는 인상을 남겨 결과적으로 형법의 규범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낳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간(2008~2017) 정식의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판결 통계를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수는 매년 5명 이하에 불과했다. 바로 이러한 온정주의적 대응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2018년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 상향, 수감명령제도의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

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¹⁾하였으나 국회에서의 논의 결과는 부분적인 성과를 가져오는데 그쳤다.²⁾

문제는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데 충분하게 기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은 개정 전과 동일하고, 신설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는 행위자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누범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업재해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관대한 처벌경향에 주목해보면 누범규정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여전히 처단형의 하한에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은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보다 더 약하게 정해두고 있어 형사사법이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를 단순 과실범의 한 유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벌금형만 선고되는 현재의 재판실무에 주목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법원의 양형 관행이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입법을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의 법정형을 높이는 것은, 그 법정형이 근본적으로 상향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 제범을 방

1) 정부(고용노동부)는 2018년 11월 1일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6250호)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기존의 의원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다수 제출되어 있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제출법안과 의원발의 법안을 모두 논의하여 2018년 12월에 환경노동위원장을 제안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출하여, 그 법률안이 2018년 12월 27일 제365회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19년 1월 15일 법률 제16272호로 공포되어, 2020년 1월 16일자로 시행예정에 있다.

2) 2019년 1월 15일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실효적으로 예방하고 제재하기 위하여 근로자 사망시 사업주의 처벌강화(제167조),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시 처벌 강화(제169조), 양벌규정의 이원화를 통한 벌금규정의 실효성 제고(제173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74조) 등과 같은 제재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지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현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은 구체적 양형을 담당하는 법원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중요성과 사회적 의미에 관한 태도를 바꾸도록 하여 이를 양형기준의 틀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이 일반국민, 사업주, 근로자 등 사이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사법기관(법원과 검찰)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형량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인식도를 제고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책임에 적절한 형량을 확보하고, 재범을 방지한다는 목표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의 구조와 문제점 분석에서 출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일반국민, 사업주, 근로자 등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주요 연구내용과 범위

이 연구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규범적 관점에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실무에 대한 일반국민, 사업주, 근로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유사한 개별 법률상 법정형과 비교해봄으로써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제재실무에 대한 일반국민, 사업주, 근로자의 인식을 조사하는 배경은 법원의 선고형량과 수범자의 인식간의 괴리 내지 차이를 살펴보기 위함이다.

제3절 연구의 방법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 및 선고형의 적정성 평가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성 검토는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을 대상으로 한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조항은 제167조부터 제174조까지 총 8개 조문에 불과하지만, 각각의 조문에는 매우 많은 행위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형사처벌 조항은 매우 많다. 그러나 아무런 비교대상 없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형사처벌 조항들만 고립시켜서 그 법정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추상적인 판단에 거치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형사처벌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형을 의미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이 산업현장에서 사업주에 대한 규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도 실무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적용되는 비교대상 법률을 선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진은 수차례 논의 끝에 산업안전보건법과 비교할 수 있는 주요 법률로 환경 관련 법률을 선정하기로 하였다. 무엇보다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은 이른바 ‘행정형벌’로 인식되고 있는 환경관련 법률들과 입법형식, 법정형 등에서 그 구조가 유사하며, 실제 법 적용과 관련하여 각각의 법률에 대한 위반 시 그 선고형도 매우 유사한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아래의 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와 환경관련 법률 위반범죄간의 형사소추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와 환경관련 법률 위반범죄 소추 실무(2016년)

구분	산안법 위반범죄(2016년)	환경범죄(2016년)
총기소인원(비율)	10,514명(100%)	4,438명(100%)
구정식(비율)	497명(4.7%)	303명(6.8%)
구약식(비율)	10,017명(95.3%)	4,135명(93.2%)

※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범죄백서(법무연수원)

이 연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환경관련법률 간의 행위규정의 특징과 추상적 불법성 등에 대한 비교, 법정형 비교, 구체적 형사소추 결과의 비교 등을 분석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 방법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의 현실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형사사법기관이 부과하는 제재의 수위는 턱없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주나 현장소장 등이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을 부과하거나 기껏해야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형량의 적정성에 관한 일반국민, 경영자, 노동자 등의 인식도 조사·분석하여 이를 향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인식도 조사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국민적 공감대와 괴리되지 않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양형을 실현하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는 일반국민들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과악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규정과 관련된 사항과 양형기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국민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한 온라인 패널조사방식으로 2019년 8월 5일부터 15일까지 약 10여일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표본은 95% 신뢰수준($\pm 3.1\%$)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영자(사용주) 집단과 노동자(근로자) 집단을 구분하여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집단 조사는 경영자집단 100명과 노동자 집단 1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서울, 경기, 경남 지역의 경영자단체와 노동단체의 협조를 얻어 자기기입설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경영자단체 103부, 노동단체 120부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한 경영자단체 100부와 노동자단체 113부으로 최종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거나 금지하는 행위규정의 불법성을 제대로 담고 있는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 행위규정과 벌칙규정은 일정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출발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도 그 전제가 되는 행위규정의 불법성에 상응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제2장에서는 ① 산업안전보건법 벌칙규정과 그 적용실태에 대한 개관(제1절), ②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비교법으로서 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에 제시되어 있는 벌칙규정과 그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제2절), ③ 선진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과 그 적용실태에 대한 조사(제3절), ④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규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제4절) 등의 내용을 담고자 한다.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상 벌칙규정의 적용실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벌칙규정과 법정형

가. 개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부터 제172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각종 의무규정을 불이행한 경우, 이에 대한 형사적 제재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각 처벌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된다. 형벌규정의 위반유형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사람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결과발생에 대하여 죄책을 묻는 유형, 단순히 법률이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유형, 그리고 의무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형인 법률이 정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죄책을 묻는 유형에는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죄책을 묻는 유형³⁾과 부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죄책을 묻는 유형⁴⁾이 포함된다. 즉,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사업주에게 주로 작위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불이행할 때 제재를 가하는 형태의 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형법이 일반적으로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때 제재를 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을 하고 있으나, 규정 내용에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직접 규율하는 조항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규정한 벌칙규정과 이에 대한 법정형은 다음의 표와 같다.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치사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63조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3) 안전조치, 보건조치, 작업중지조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 등 방호조치, 허가취득, 안전인증 취득, 유해물질제조방법 등, 산업재해예방조치 등의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4) 암 유발물질 등 제조 금지, 부당해고금지, 초과근로금지, 비밀유지의무 등 부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안전조치 보건조치 사업주의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석면의 해체·제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9조제1항 제51조 제54조제1항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제157조제3항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작업 또는 건설공사를 중지 하거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변경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허가를 취소, 영업을 정지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 제55조제1항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제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기계·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안전인증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제140조제1항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공정안전보고서를 다시 제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기 유해·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석면조사 임시건강진단 명령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제13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안전인증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안전검사 권한 등의 위임·위탁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제41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56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인증의 표시 등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65조제1항 제80조제1항·제2항·제4항 제85조제2항·제3항 제92조제1항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역학조사 참석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비밀 유지	제141조제4항 제162조를 위반한 자	
안전인증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수거하거나 파괴	제85조제4항 제92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성능시험 등	제101조에 따른 조사, 수거 또는 성능시험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신규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69조제1항·제2항 제89조제1항 제90조제2항·제3항 제108조제2항 제109조제2항 제138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자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율안전확인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제거 신규화학물질제조자등에게 시설·설비를 설치·정비하고 보호구를 갖추어 두는 등의 조치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	제90조제4항 제108조제4항 제10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	제125조제6항을 위반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제1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작업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제6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 안전조치와 동법 제39조의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사업주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업주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이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이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있다(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

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38조에서 안전조치의무, 제39조에서 보건조치의무 등 근로자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유해작업 도급금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암을 유발하거나 근로자의 보건에 특히 해롭다고 인정되는 물질의 제조 금지, 제조 등의 허가, 석면해체·제거업자를 통한 석면의 해체·제거자의 관한 규정에 각각 사업주의 조치 규정을 두고 있으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규정을 두어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근로자는 그 사실을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를 이유로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기타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되어있으며 이에 대한 위반의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명령 위반에 대하여도 이와 같은 형벌이 적용될 수 있다.

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업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따로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기계·기구·설비 및 건축물과 관련한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

조와 관련한 안전인증,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제조·수입·사용에 관련된 금지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의 제조를 허가 받은 자의 적합한 작업방법,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을 위반한 자와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제조·수입·사용·양도·대여에 관한 의무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나 파기의 명령, 유해물질 제조·사용자의 제조·사용설비 또는 작업방법의 기준과 관련한 명령, 석면조사를 하지 않은 사업의 작업중지 명령,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변경 명령, 불량한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의 재제출 명령, 검사 등의 결과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에 적용된다.

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중대재해 발생현장을 훼손하여 원인조사를 방해한 자, 도급 작업 시의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인증표시와 유사한 표시, 안전인증표시의 임의변경이나 제거,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사용 등의 금지제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지도사, 비밀유지를 위반한자와 위반 안전인증표시의 제거명령, 위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수거나 파기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 벌금 규정

그 밖에 경직된 사업주의 실행 범위를 일부 완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벌금형으로만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두고 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처리에 관한 공식 통계

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발생 및 검거 현황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발생 현황을 보면, 2008년에 1,653건에 불과했던 발생건수가 2017년에는 6,439건으로 10년간 4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위반자 검거인원수도 2008년에는 1,976명이었으나 2017년에는 7,285명으로 증가하였다. 법인 위반자의 경우 공식통계에 잡힌 2014년에는 4,113개 법인이 위반사범이었고, 2015년에는 3,911개 법인으로 다소 줄었으나 2017년에는 6,345개 법인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특이한 점은 2011년까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발생 건수가 매년 약 1,600건에서 2,700건 수준이었으나 2012년을 기점으로 5,000건을 넘는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아마도 2012년 당시에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을 수정하여 그 당시까지 있는 근로감독관의 시정조치(즉, 일종의 입건유예 조치)를 폐지하고 그 대신 즉시 처벌할 수 있게 함에 따라 형사사건이 증가된 것으로 짐작된다.

<표 2-1>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발생 및 검거현황

년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인원	법인
2008	1,653	1,642	1,976	-
2009	1,688	1,708	2,103	-
2010	2,763	2,722	3,155	-
2011	2,747	2,447	2,937	-
2012	5,686	5,559	11,185	-
2013	5,342	5,323	10,882	-
2014	4,519	4,511	5,387	4,113
2015	4,239	4,259	4,671	3,911
2016	5,802	5,829	6,646	5,583
2017	6,439	6,479	7,285	6,345

출처 : 범죄분석(대검찰청)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에 대한 처분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위반자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17년에 처리된 총 13,187건 중 구속된 건수는 1건(0.007%)에 불과하다.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에도 2017년의 경우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가 613건(4.64%)에 불과하였음에 반해 약식명령을 청구한 건수는 10,934건(82.91%)이었다. 불구속 구약식 청구가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실무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벌칙규정이 위협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표 2-2>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
처분결과**

년도	계	기소		구약식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구공판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구속	불구속							
2008	4,251	2	172	3,074	359	578	-	58	8	-
2009	4,307	2	192	2,757	530	753	1	46	23	3
2010	2,563	-	67	1,619	445	396	1	23	6	6
2011	4,424	3	106	3,003	593	664	-	41	14	-
2012	11,158	2	215	8,872	1,294	693	-	61	20	1
2013	10,753	1	303	8,599	1,142	573	-	77	52	6
2014	9,048	3	405	7,100	695	640	-	71	126	8
2015	8,283	5	459	6,476	551	623	-	64	95	10
2016	11,789	4	493	10,017	544	492	-	72	164	3
2017	13,187	1	612	10,934	892	611	-	46	89	2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실태를 조사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실효성이 어느 정도로 확보되고 있는지를 일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위반사범이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08년과 2009년에는 위반사범의 80% 이상이 전과가 없었으나 2010년 이후부터는 전과없는 위반사범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전과의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들은 대부분 전과 1범부터 3범까지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의 경우 전과 4범이 153명, 전과 5범이 96명을 차지하고 있고 전과 9범 이상도 105명에 달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전과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해준다.

<표 2-3> 최근 10년간(2008~2017)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범의 전과 현황

년도	계	전과 없음	전과									미상
			1범	2범	3범	4범	5범	6범	7범	8범	9범이상	
2008	4,251	3,618	179	124	124	50	43	23	14	14	48	14
2009	4,307	3,618	208	142	107	54	34	30	26	15	33	40
2010	2,563	745	133	85	70	48	33	31	12	10	56	1,340
2011	4,424	299	217	137	100	59	39	37	16	15	36	3,469
2012	11,282	681	522	334	245	125	95	68	34	27	103	9,048
2013	11,012	785	566	343	208	123	83	77	53	33	92	8,649
2014	5,387	457	399	270	177	111	81	54	37	31	65	3,705
2015	4,999	343	247	196	125	92	55	34	35	22	73	3,777
2016	6,646	471	459	298	187	141	111	54	38	23	91	4,773
2017	7,285	482	471	300	246	153	96	78	52	24	105	5,278

출처: 범죄분석(대검찰청)

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약식명령의 청구 사건(즉, 구약식 사건)이다. 기소실무에서 검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단순 과실범과 같이 그 불법성을 경미하게 판단한 결과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이라고 해도 그 불법성이 중대한 대한 경우에는 공소장에 의한 공소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2008~2017) 공소장에 기한 공소제기에 의하여 제1심 법원이 처리한 현황을 보면, 법원실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경미한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추측을 가지게 한다. 최근 10년간 제1심 법원이 처리한 내용을 보면, 자유형(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수는 매년 5명 이하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형 등 재산형을 선고하였다. 특이한 점은 2015년, 2016년 및 2017년의 경우 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수가 그 이전 연도에 비하여 평균 100건을 넘어서는데, 이는 피고인들 중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다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해가 지날수록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자의 전과가 늘고 있는데, 이러한 전과가 누적된다는 것은 집행유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을 과실범 정도로 여기고 있는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전과 누적 이외에는 마땅히 그 배경을 설명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표 2-4> 최근 10년간(2008~2017) 제1심 법원의 처리

년도	접수	처리(선고)								
		합계	유기 자유형	집행 유예	재산형	선고 유예	무죄	면소	공소 기각	기타
2008	430	391	1	36	278	22	24	-	-	30
2009	407	432	3	56	281	30	32	-	-	30
2010	408	367	2	52	225	14	29	1	-	44
2011	392	467	5	40	305	21	34	-	2	60
2012	526	448	2	44	302	18	29	-	-	53
2013	685	639	3	50	425	30	38	1	-	92
2014	645	596	5	48	416	11	49	-	-	67
2015	751	740	3	119	513	12	42	4	-	47
2016	717	720	4	109	463	23	53	-	-	68
2017	764	710	4	137	478	12	21	-	-	58

출처: 사법연감(법원행정처)

3.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형량분포에 관한 실태조사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산업재해사건에서 법원은 각각의 피고인의 성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한 연구⁵⁾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하급심에서 처리된 사건 3,405건 중 1,714건의 판결문을 확보하여 기록조사의 방법으로 하급심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5)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흥학·김기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018, 130쪽 이하.

가. 피고인에 대한 처분결과

최근 5년(2013~2017)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즉, 구정식 청구)된 사범 중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신고형의 결과를 보면, 총 2,932명의 피고인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피고인이 57.26%(1,679명)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33.46%(981명), 징역 및 금고 2.93%(86명), 선고유예 1.71%(50명)로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죄 4.43%(130명), 면소와 공소기각은 0.21%(6명)로 나타났다.

<표 2-5>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처리(자연인)⁶⁾

단위: 명

구분	징역	금고	집행유예	벌금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계
2013	14	2	150	289	18	19	1	1	494
	2.83	0.40	30.36	58.50	3.64	3.85	0.20	0.20	100.00
2014	14	8	148	318	8	41	-	-	537
	2.61	1.49	27.56	59.22	1.49	7.64	0.00	0.00	100.00
2015	13	4	236	311	5	23	3	-	595
	2.18	0.67	39.66	52.27	0.84	3.87	0.50	0.00	100.00
2016	13	3	305	321	14	35	-	1	692
	1.88	0.43	44.08	46.39	2.02	5.06	0.00	0.14	100.00
2017	10	5	142	439	5	12	-	-	613
	1.63	0.81	23.13	71.66	0.81	1.95	0.00	0.00	100.00
계	64	22	981	1,679	50	130	4	2	2,932
	2.18	0.75	33.46	57.26	1.71	4.43	0.14	0.07	100.00

6)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55쪽.

위의 표를 보면, 2017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 동안 징역 및 금고 등 ‘유기 자유형’은 매년 3~4% 내외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벌금형이 선고되는 피고인의 수는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 64.81%(302명)에서 2017년 75.94%(426명) 11.1%p 높아졌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5년간 평균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합산한 비율이 전체 인원의 90.72%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법인이 피고인인 경우를 보면, 최근 5년간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으로 심판을 받은 총 1,339개의 법인 중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총 89.10%로 1,193개였고, 선고유예가 2.46%로 33개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무죄 약 8.22%(110개), 면소 0.07%(1개)로 나타났다.

<표 2-6>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처리(법인)⁷⁾

단위: 개

구분	벌금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전체	
2013	194	85.09	12	5.26	22	9.65	-	-	-	-	228	100.00
2014	241	90.94	3	1.13	21	7.92	-	-	-	-	265	100.00
2015	287	91.11	7	2.22	20	6.35	1	0.32	-	-	315	100.00
2016	272	88.03	4	1.29	31	10.03	-	-	2	0.65	309	100.00
2017	199	89.64	7	3.15	16	7.21	-	-	-	-	222	100.00
계	1,193	89.10	33	2.46	110	8.22	1	0.07	2	0.15	1,339	100.00

7)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57쪽.

나. 징역형과 금고형의 형량분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 선고 형벌의 유형과 형량을 보면, 평균 징역기간은 10.9개월로 나타났고, 평균 금고기간은 9.9개월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징역형의 형기 중 최대 장기형은 28개월, 금고형의 형기 중 최대 장기형은 18개월이 선고된 경우로 나타났다.

<표 2-7>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에 대한 징역 및 금고형의 분포⁸⁾

단위: 명/개월

구분	징역기간			금고기간		
	빈도 (명)	평균개월수 (표준편차)	최소/최대 (개월)	빈도 (명)	평균 (개월)	최소/최대 (개월)
최근 5년(전체)	64	10.89 (6.118)	3/28	22	9.91 (4.638)	4/18
2013년	14	13.86 (8.282)	4/24	2	12.00 (.000)	12/12
2014년	14	11.00 (5.588)	4/24	8	14.50 (3.817)	10/18
2015년	13	8.77 (3.961)	4/18	4	6.50 (2.517)	4/10
2016년	13	9.69 (6.473)	4/28	3	7.33 (2.309)	6/10
2017년	10	10.90 (4.332)	3/16	5	6.00 (.000)	6/6

* () 안은 평균, 최소값/최대값

8)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58쪽.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부과된 징역형과 금고형을 기간별로 나누어 형기와 빈도를 비교해 보면, 징역기간과 금고기간 모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이 각각 46.9%(30명)와 59.1%(1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 각각 20.3%(13명)와 18.2%(4명), ‘1년 6개월 이상 2년 미만’이 각각 10.9%(7명)와 18.2%(4명) 순으로 나타났다.

<표 2-8>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금고형의 기간⁹⁾

단위: 명/%

구분	징역기간(N=64)		금고기간(N=44)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6개월 미만	8	12.5	1	4.5
6개월 이상 1년 미만	30	46.9	13	59.1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	13	20.3	4	18.2
1년 6개월 이상 2년미만	7	10.9	4	18.2
2년 이상	6	9.4	-	-

다. 벌금형의 형량분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서 사실상 형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벌금의 지난 5년간 평균액은 자연인 피고인의 경우 약 421만 원(4,206,600원), 법인 피고인의 경우 약 448만 원(4,479,500원)으로 나타나 자연인과 법인의 벌금액의 평균치에서는 큰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58쪽.

<표 2-9>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분포¹⁰⁾

단위: 명/개/%/만원

구분	자연인			법인		
	빈도 (명)	평균금액 (표준편차)	최소/최대 (만원)	빈도 (개)	평균금액 (표준편차)	최소/최대 (만원)
최근 5년 (전체)	1,678	420.66 (305.640)	10/3000	1,193	447.95 (679.757)	30/20000
2013년	289	329.93 (318.145)	10/3000	194	346.39 (422.760)	30/3000
2014년	318	415.82 (304.877)	30/3000	241	410.12 (291.721)	30/1500
2015년	311	411.58 (289.843)	30/2000	287	444.32 (284.932)	30/2000
2016년	321	443.93 (309.922)	30/2000	272	501.54 (488.205)	30/5000
2017년	439	420.66 (305.640)	30/3000	199	524.77 (1427.990)	50/20000 ¹¹⁾

보다 구체적으로 벌금액의 분포를 보면, 자연인과 법인 모두 ‘1백만 원 이상 5백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각각 46.5%(780명)와 46.6%(556개)로 구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10)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흥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60쪽.

11) 최대벌금액 2억 원인 사건은 2017년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으로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는 형광램프를 생산하는 법인의 생산설비 등 철거작업에 투입된 근로자 12명으로 하여금 업무상 과실로 인한 수은중독 상태에 이르게 한 사건(광주지방법원 2017.01.11 선고 2016고단4942 판결)이었다.

<표 2-10>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벌금 액수¹²⁾

단위: 명/개/%/만원

구분	자연인 (N=1,678)	법인 (N=1,194)
1백만원 미만	121	87
	7.2%	7.3%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780	556
	46.5%	46.6%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651	457
	38.8%	38.3%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123	87
	7.3%	7.3%
3천만원 이상	3	7
	0.2%	0.5%

라. 부수처분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부수처분 선고현황을 보면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과 같은 사회내 처우가 선고되었다. 개별적으로 보면 보호관찰의 경우 통상 1년의 기간 동안 부과되었으며, 사회봉사명령은 40시간, 80시간, 120시간, 160시간, 240시간 단위로 다양하게 부과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에게 산업안전사고 예방강의와 준법운전강의 등의 수강명령이 부과된 경우도 있었다.

12)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60쪽.

**<표 2-11> 산업재해 상해·사망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부수처분
신고현황¹³⁾**

구분빈도	
보호관찰	3
보호관찰+사회봉사	2
보호관찰+수강명령	1
사회봉사(40, 80, 120, 160, 240시간)	84
수강명령(산업안전사고예방강의, 준법운전강의)	27

제2절 환경 관련 법률상 벌칙규정의 적용실태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장 대표적인 처벌규정은 안전조치나 보건조치 미이행죄이다.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예방조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는 환경관련 법률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환경관련 법률에서 이러한 조치의무에 대한 법정형이 어떻게 규율되고 있으며, 그 제재부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1. 환경 관련 법률상 주요 벌칙규정과 법정형

가. 개관

우리나라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법적 규제는 1963년 공해방지법의 제정이 시초였다.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적 대응이 활발해졌다. 1990년대 이르러 산업화와 도시화의 가속으로 환경오염 상황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환경오염의

13)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앞의 보고서, 161쪽.

발생종류와 원인에 따른 대응이 모색되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대응에도 불구하고 환경범죄는 더욱 악화되었다. 특히 기업형 환경범죄에 대한 심각성은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이어졌다. 이 법률은 1999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개정되었다. 그 후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11년 4월 28일자 법률 제10616호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2011년 10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별 환경법은 보호법익을 명시하지 않고 또한 환경범죄를 주로 추상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하여 법익에 대한 침해나 구체적 위험 없이 일정한 환경위반행위만 있으면 처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은 구체적 위험범의 형태로 규정되어 공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여야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환경분야에서 법적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법률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연환경보전		자연환경보전법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환경보전	대기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소음/진동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물환경보전법 하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토양	토양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먹는물		수도법 먹는물관리법
기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영향평가법 환경분쟁 조정법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한국환경공단법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환경법은 아니지만 대기·수질·토양오염 등의 규제를 위해 다른 관련 법률들도 작동하고 있는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

대기오염	도로교통법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	지하수법 하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골재채취법 소하천정비법
소음	도로교통법 학교보건법
국토·토양 관련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택지개발촉진법 연안관리법
농업	농지법 농약관리법
축산	축산법 낙농진흥법 초지법
수산·항만	수산업법 어촌·어항법 항만법
산림	산지관리법 사방사업법
기타	광업법 광산안전법 문화재보호법 관광진흥법

나. 주요 환경 관련 법률의 벌칙규정

환경관련 법률에서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을 살펴보기 위해서 특히 환경오염 행위 중 빈도와 심각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폐기물에 의한 오염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환경법률과 또한 형사특별법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세부내용과 벌칙에 대해 자세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물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은 1990년 제정 당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으로 제정되었다. 환경보전법 중에서 수질보전관련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오염이 심화된 호소의 특별관리 등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것이었다. 이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다가 현행 물환경보전법으로 법명이 변경되었다. 물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가장 큰 대상은 폐수이다. 폐수는 물에 액체성이나 고체성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이외에도 환경부령으로 규정한 수질오염물질,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이 있다.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 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려는 주된 ‘위반행위’는 허가받지 않거나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배출시설이나 방지 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행위, 그밖에 배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요구되는 준수사항의 불이행 행위, 행정처분의 미이행 등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500만 원 이하의 벌금,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형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하거나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 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工程) 중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위반행위	형벌
측정기기의 부착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고의로 측정기기를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측정 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조업정지 또는 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 제51조제2항에 따른 폐수관로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5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특정수질 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한 자	
분뇨·가축분뇨 등을 버린 자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특별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가동시작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위반행위	형벌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조업정지·폐쇄 명령을 위반한 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적산전력계 또는 적산유량계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00만 원 이하의 벌금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은 1990년 환경보전법 중에서 대기보전 관련 조항을 분리하여 개별법으로 정비하고, 연료사용량 및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대기오염의 심화를 예방하는 등 규정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주된 ‘위반행위’는 무허가 혹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적 운영을 통해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기타 행정처분의 미이행, 대기오염 방지시설 운영을 위한 의무 사항의 불이행 등이다.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형벌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하거나 공급·판매한 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조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위반행위	형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시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44조 제7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환불·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판매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 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제43조제3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위반행위	형벌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74조제4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제74조제5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제74조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위반행위	형벌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 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제44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불응한 자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 환경보전법과 오물청소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폐기물(분뇨, 쓰레기, 산업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에 규정하여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에 따른 관리를 강화하고, 환경청장 및 시·도지사도 하여금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폐기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폐기물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산, 폐알카리, 동물들의 사체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하고,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그리고 지정폐기물로 구분된다.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수탁폐기물 처리업체가 무허가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행위, 법률이 정한 폐기물의 처리 및 보관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미이행 등의 위반행위를 규제한다. 폐기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행위	형벌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버린 자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자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계속 재활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한 자	

위반행위	형벌
제14조제7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종량제 봉투등을 제작·유통한 자	
제2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용용기를 제조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용기 제조업 등록을 한 자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자	
제13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자	
제13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게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자	
다른 자의 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를 하거나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지정서를 빌린 자	
제1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한 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자	
제17조의2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업무를 한 자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기간 중 폐기물 시험·분석 업무를 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고의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처리한 자	

위반행위	형벌
제25조제1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사항을 변경한 자	
제25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7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자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한 자	
제31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39조의2, 제39조의3 또는 제40조제2항·제3항·제4항제1호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의 사용을 끝내거나 시설을 폐쇄한 자	
제50조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50조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3조 또는 제13조의2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13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 조건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한 자	
제13조의5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를 한 자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 또는 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상호의 변경은 제외한다)에 따른 변경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변경확인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한 자	
제1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의 시험·분석 업무를 하게 하거나 지정서를 다른 자에게 빌려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위반행위	형벌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폐기물분석결과서를 발급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제25조제5항에 따른 업종 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을 한 자	
제25조제7항의 조건을 위반한 자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제25조제9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한 자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제25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전용용기를 제조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자	
제2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제25조의2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용용기를 유통시킨 자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31조제7항에 따른 측정이나 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991년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환경범죄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행위를 근절시킬 필요가 있으나, 종래 환경관계법의 규정만으로는 이에 대처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으므로, 유해물질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발생시키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나아가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다. 2011년에 이르러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통합 출입·검사 및 환경 관련 법령 위반사실에 대한 공표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고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은 폐지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위한 기본적 시책과 환경개선사업의 재원확보·관리에 관한 사항을 단일의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율하려는 이유로 개정을 하며 법명을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였다.

이 법률의 주요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오염물질 배출의 가중처벌이다. 둘째는 과실범의 처벌이다. 셋째는 누범의 가중이다. 넷째는 인과관계의 추정이다.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물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제4호를 위반한 자 1. 농업, 축산업, 임업 또는 원예업에 이용되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해당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한 자 2. 바다, 하천, 호소(湖沼) 또는 지하수를 별표 1에서 정하는 규모 및 기준 이상으로 오염시킨 자 3. 어패류를 별표 2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집단폐사(集團斃死)에 이르게 한 자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	해당 형의 2분의 1 까지 가중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과실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폐기물 불법처리의 가중처벌	단체 또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3조의 죄를 범한 자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

위반유형	위반행위	형벌
		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누범의 가중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또는 제7조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면제받은 지 3년 내에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또는 제7조의 죄를 범한 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7조의 죄를 범한 자는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함으로 인하여 취득한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처벌	제13조제1항에 따른 명령(철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제13조제1항에 따른 철거명령을 위반한 자 또는 제1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표지판을 제거·훼손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처리

가. 환경범죄 발생 및 검거 현황

그간 우리의 환경정책은 경제성장 최우선의 논리로 인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으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나날이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문제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 모두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하여 각종 환경 관련 법규와 제도의 정비, 개선작업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 더욱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경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환경범죄의 발생 및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8,397건의 발생을 시작으로 2017년 7,636건에 이르기까지 등락을 반복하였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한 상태이며, 2017년 발생건수는 10년 전에 비해 9.1% 감소하였다.

<표 2-12> 환경범죄 발생·검거 현황(2008년~2017년)

[단위: 건, 명, %]

구분 연도	발생건수	범죄율	기준년도 대비 증감률	검거건수	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	검거인원
2008	8,397	16.9	-	8,425	100.3	5,047
2009	6,536	13.1	-22.2	6,478	99.1	4,580
2010	5,123	10.1	-39.0	4,997	97.5	3,089
2011	5,096	10.0	-39.3	4,832	94.8	4,725
2012	5,950	11.7	-29.1	5,854	98.4	6,732
2013	6,591	12.9	-21.5	6,435	97.6	6,829
2014	5,027	9.8	-40.1	4,977	99.0	5,569
2015	5,422	10.5	-35.4	5,311	98.0	5,587
2016	6,932	13.4	-17.4	6,810	98.2	6,252
2017	7,636	14.7	-9.1	7,481	98.0	7,291

* 출처: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117쪽.

** 범죄율은 인구 10만명당 범죄 발생건수

나. 최근 5년간 환경사범의 죄명별 발생현황

최근 5년간 환경사범의 죄명별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이, 2013년에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은 5년 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 대비 19.7% 증가하였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은 5년 전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에도 전년 대비 95.1% 증가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5년 전과 비교하면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25.7% 증가하였다.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은 5년 전과 비교하면 다소 증가하였으나, 2017년에는 전년 대비 52.2% 감소하였다.

<표 2-13> 최근 5년간 주요 환경사범의 죄명별 발생현황

[단위: 건(%)]

죄명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6,591 (100)	5,027 (100)	5,422 (100)	6,932 (100)	7,636 (100)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1,971 (29.9)	1,831 (36.4)	1,995 (36.8)	2,277 (32.8)	2,725 (35.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1,079 (16.4)	1,005 (20.0)	937 (17.3)	944 (13.6)	1,842 (24.1)
소음·진동 관리법 위반	202 (3.1)	145 (2.9)	155 (2.9)	159 (2.3)	189 (2.5)
폐기물관리법 위반	2,430 (36.9)	1,221 (24.3)	1,139 (21.0)	1,303 (18.8)	1,638 (21.5)
하수도법 위반	143 (2.2)	163 (3.2)	124 (2.3)	282 (4.1)	132 (1.7)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504 (7.6)	264 (5.3)	623 (11.5)	1,581 (22.8)	755 (9.9)
하천법 위반	158 (2.4)	286 (5.7)	292 (5.4)	266 (3.8)	213 (2.8)
자연공원법 위반	104 (1.6)	112 (2.2)	157 (2.9)	120 (1.7)	142 (1.9)

출처: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년도 재구성

다. 최근 5년간 환경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

검찰에서 처리한 환경범죄자는 2013년에 7,716명에서 감소하여 2014년에는 7,308명을 기록하였고, 2015년에는 5,411명으로 다시 크게 감소하여 지난 5년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이후 2016년에는 6,097명, 2017년에는 7,485명을 각각 기록하여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경범죄의 기소율은 2013년 70.6%, 2014년 71.1%, 2015년 74.8%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2016년에는 72.8%, 2017년에는 71.2%를 기록하여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기소된 범죄자의 대부분은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식명령의 청구 비율도 기소율과 마찬가지로 2015년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이후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환경범죄의 불기소율은 2015년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 2016년 이후 증가 경향을 보인다. 환경범죄의 불기소처분 중 기소유예 처분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지난 5년간 기소유예율은 2013년 14.6%, 2014년 14.3%, 2015년 11.7%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6년, 2017년 모두 12.9%를 기록하여 약간 증가하였다.

<표 2-14> 최근 5년간 환경범죄자에 대한 검찰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계		7,716 (100)	7,308 (100)	5,411 (100)	6,097 (100)	7,485 (100)
기소	소계	5,446 (70.6)	5,199 (71.1)	4,046 (74.8)	4,438 (72.8)	5,327 (71.2)
	구속구공판	10 (0.1)	15 (0.2)	7 (0.1)	36 (0.6)	42 (0.6)
	불구속구공판	217 (2.8)	226 (3.1)	189 (3.5)	267 (4.4)	402 (5.4)
	구약식	5,219 (67.6)	4,958 (67.8)	3,850 (71.2)	4,135 (67.8)	4,883 (65.2)
불기소	소계	2,227 (28.9)	2,061 (28.2)	1,319 (24.4)	1,627 (26.7)	2,122 (28.4)
	기소유예	1,123 (14.6)	1,045 (14.3)	634 (11.7)	789 (12.9)	962 (12.9)
	혐의없음	1,023 (13.3)	947 (13.0)	624 (11.5)	774 (12.7)	1,067 (14.3)
	죄가안됨	2 (0.0)	3 (0.0)	-	1 (0.0)	2 (0.0)
	공소권없음	79 (1.0)	66 (0.9)	61 (1.1)	63 (1.0)	91 (1.2)
기소중지		37 (0.5)	38 (0.5)	38 (0.7)	28 (0.5)	32 (0.4)
참고인중지		6 (0.1)	10 (0.1)	8 (0.1)	4 (0.1)	4 (0.1)

* 출처: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84쪽.

2017년 환경범죄의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하천법 위반, 자연공원법 위반 모두 기소율이 불기소율보다 훨씬 높았다. 5가지 환경범죄 중 기소율이 가장 높은 범죄는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76.1%였고, 그 다음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75.7%), 자연공원법 위반(68.9%), 하천법 위반(65.6%), 폐기물관리법 위반(65.5%)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이 5가지 환경범죄 모두 불기소율보다 기소율이 더 높았으나, 기소 처리된 대부분의 범죄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기소율은 하수도법 위반이 5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하천법 위반(34.1%), 폐기물관리법 위반(33.2%), 자연공원법 위반(31.1%) 등의 순이었고, 기소유예 비율은 자연공원법 위반(19.5%), 하수도법 위반(16.8%), 소음진동관리법 위반(16.4%), 대기환경보전법 위반(12.8%) 등의 순이었고, 혐의없음 비율은 하수도법 위반(32.7%), 폐기물관리법 위반(19.4%), 하천법 위반(15.8%), 대기환경보전법 위반(11.1%) 등의 순이었다.

<표 2-15> 2017년 환경범죄의 주요 죄명별 검찰처리 현황

[단위: 명(%)]

구분 \ 범명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계		4,188 (100)	226 (100)	2,438 (100)	196 (100)	273 (100)	164 (100)
	소계	3,170 (75.7)	172 (76.1)	1,597 (65.5)	96 (49.0)	179 (65.6)	113 (68.9)
기 소	구속구공판	8 (0.2)	1 (0.4)	32 (1.3)	-	1 (0.4)	-
	불구속구공판	91 (2.2)	11 (4.9)	257 (10.5)	5 (2.6)	21 (7.7)	17 (10.4)
	구약식	3,071 (73.3)	160 (70.8)	1,308 (53.7)	91 (46.4)	157 (57.5)	96 (58.5)

구분 \ 법명		대기환경 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	폐기물 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자연공원법
불 기 소	소계	1,061 (24.3)	54 (23.9)	809 (33.2)	99 (50.5)	93 (34.1)	51 (31.1)
	기소유예	534 (12.8)	37 (16.4)	305 (12.5)	33 (16.8)	21 (7.7)	32 (19.5)
	혐의없음	464 (11.1)	15 (6.6)	472 (19.4)	64 (32.7)	43 (15.8)	9 (5.5)
	죄가안됨	-	-	2 (0.1)	-	-	-
	공소권없음	18 (0.4)	2 (0.9)	30 (1.2)	2 (1.0)	29 (10.6)	10 (6.1)
기소중지		2 (0.0)	-	28 (1.1)	1 (0.5)	1 (0.4)	-
참고인중지		-	-	4 (0.2)	-	-	-

* 출처: 법무연수원, 2018 범죄백서, 285쪽.

라.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제1심 법원의 처리

(1)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제1심 공판처리 현황

2017년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범 중 자연인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의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통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의 경우 212건의 재판 중에서 56.7%에 해당하는 120건이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경우에는 325건 중에서 58.1%에 해당하는 189건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환경 관련 법률의 법정형은 자유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선택적으로 부과되는데, 벌금형이 선택되는 경우가 매우 높은 많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의 경우 특성상 자유형 선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6> 환경관련 법률 위반사범에 대한 제1심 공판처리 현황

법명	2017년 접수	합계	판결								
			자 유 형			재산형	선고유예	무죄	면소	공소기각	기타
			무기	유기	집행유예						
대기환경보전법	230	212		4	26	120	15	9		1	37
소음진동관리법	7	6				4					2
폐기물관리법	415	325		31	66	189	1	15			23
하수도법	33	37		3	2	26	1	3			2
하천법	42	51		1	12	34		1			3
자연공원법	31	25			5	16	1				3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12	10			4			2			4
먹는물관리법	2	26		11	8	5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	16				10	1	1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6	17		1	4	9					3
토양환경보전법	16	7				7					
화학물질관리법	242	239		87	40	88	2	2			11
수도법	42	47		5	19	17	2	1			3
환경보건법	2	2				2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2	10				10					
계	1,103	1,030	0	143	186	537	23	36	0	1	95

* 출처: 2018년도 사법연감, 법원행정처, 재구성

(2)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 사례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선고사례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는 경우 벌금형의 선택이 높다는 점이다. 아래에서는 실제 선고사례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4. 선고 2006고정100 판결

▶ 사실관계
자동차수입업자는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2005. 12. 무렵 서울 용산구 서계동 45-1 소재 피고인 운영의 (상호 생략)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중국으로부터 오토바이 35대를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무렵까지 모두 1321대의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제5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 선고형
벌금 5,000,000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동차수입업자로서 자동차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당해 자동차의 배출가스의 배출이 배출가스 보증기간동안 수입차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으로부터 오토바이 35대를 1321대의 오토바이를 수입하였다. 이에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기소되었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규정 위반에 대하여 법정형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나) 대구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노4564 판결

▶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2015. 7. 4. 19:00경 경주시에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5. 1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수를 기존 7개에서 10개로 증가시키고, 제방구성 매립량을 기존 364,000㎥에서 416,000㎥로 증가시키고, 최대 매립고를 기존 94.5m에서 91.5m로 감소시키는 등의 제방 개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벌금형 선택),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피고인 2 주식회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39조 제3호, 제25조의7 제2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 등) ② 제1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5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사용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한 자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39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제6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 3: 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31조(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킨 자

▶ 선고형

피고인 1, 피고인 2 주식회사 : 각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3 : 벌금 10,000,000원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중요사항인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시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2 주식회사 사업장에서 매립물이 무너지면서 폐기물 및 침출수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후인 2015. 11.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매립시설의 제방 수를 기존 7개에서 10개로 증가시키고, 제방구성 매립량을 기존 364,000m³에서 416,000m³로 증가시키고, 최대 매립고를 기존 94.5m에서 91.5m로 감소시키는 등의 제방 개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관할관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는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자와 종업원이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7 제2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폐기물관리법 제31조 제1항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피고인 1과 피고인2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각 15,000,000원을, 피고인3에 대하여는 벌금형 10,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다) 청주지법 2014. 7. 18. 선고 2014노46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이하 생략) PCB회로기판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공소의 1 주식회사 ○○공장의 팀장으로 ○○공장에 상주하면서 환경, 인사, 총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수질보전법 위반]

위 공장에서 방지시설의 처리절차와 관련하여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내용에 의하면, 폐수를 유량조정시설에 저장한 후, 각 반응시설, 응집시설, 침전시설, 농축

시설, pH조정시설을 각각 거치게 한 후, 최종적으로는 오폐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8.부터 같은 달 14일 10:30경까지 위 공장 내의 유량조정시설에서, 위와 같은 처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 수질오염물질인 망간, 니켈, 부유물질, ABS(음이온계면활성제), TN(총질소), TP(총인) 등이 함유된 수질오염물질인 묽은 슬러지(폐수처리오니) 약 120톤을 이동식 자바라 호스 및 탱크로리 차량을 이용하여 탱크로리 차량에 채운 후 용량 1㎥의 자루에 담았다.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묽은 슬러지를 무단 배출하여 슬러지를 자루에 담은 결과 슬러지의 침출수가 공장 건물 주변에 흩어지자, 이를 씻어내기 위하여 수돗물을 0.6㎥를 분사하여 침출수와 수돗물이 혼합된 액체를 인근 하천으로 연결된 우수구 맨홀에 모은 다음, 이동식 호스와 모터를 이용하여 이를 다시 위 유량조정시설에 넣어 기존에 있던 폐수와 섞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폐기물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무단으로 배출한 묽은 슬러지를 담은 용량 1㎥의 자루 7개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공간인 우수구 맨홀 주변에 방치하고 위 자루 20개를 암물박스(철제 적재함) 내에 방치하여, 각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공장 주변 콘크리트 바닥 50㎥ 및 우수구 맨홀에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 구 폐기물관리법(2014. 1. 21. 법률 제12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 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제76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 제13조의2 또는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자(제65조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 선고형

벌금 16,000,000원

피고인은 공장의 팀장으로 공장에 상주하면서 환경, 인사, 총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공장의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 수질보전법(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무단으로 배출한 땀은 슬러지를 담은 용량 1m³의 자루 7개를 지붕이나 벽면이 없는 공간인 우수구 맨홀 주변에 방치하고 위 자루 20개를 암롤박스(철제 적재함) 내에 방치하여, 각 침출수가 유출되어 위 공장 주변 콘크리트 바닥 50m² 및 우수구 맨홀에 흘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였다.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6,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라) 수원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11노879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1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면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11. 16.경부터 2009. 12. 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주소 3 생략) 일원 농경지에 무기성오니 912톤을 불법 매립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2010. 4. 16.까지 무기성오니 적정 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통보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서 통보된 불법 매립한 폐기물 912톤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주소 6 생략)에 있는 '○○산업개발'의 대표자로서, 환경관리업무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시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1. 9.경부터 2010. 1. 17.경까지 ○○산업개발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5,160톤(별지 범죄일람표 ①, ② 기재의 24톤 덤프트럭 209대

분량의 무기성 오니 합계 5,016톤(3,344m³)과 2010. 1. 16. 용인시 처인구 (주소 5 생략) 일대에 매립한 24톤 덤프트럭 6대 분량인 무기성 오니 144톤(96m³)을 합한 것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항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 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10. 제4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피고인 2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5호, 제18조 제3항

제18조(사업장폐기물의 처리) ③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선 주파수인식방법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18조제3항이나 제24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입력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입력한 자

▶ **신고형**

피고인 1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2 : 벌금 3,000,000원

피고인1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 기준과 방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하면 처리방법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 관청에서 통보된 불법 매립한 폐기물에 대한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2는 환경관리업무 등 위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사업장폐기물 배출시마다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였다. 각각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위반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법원은 피고인1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을, 피고인2에 대하여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였다.

(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 11. 22. 선고 2012노906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9. 20. 위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인 Nonyl Phenol Ethoxylate(노닐페놀에톡시레이트 CAS

No.9016-45-9)가 7% 함유된 세척액 651PC(12,675.2kg)를 수입하여 2010. 10. 15.부터 2011. 7. 5.까지 한일 오토밋션 외 25개 업체에 판매하였다.

피고인 2 주식회사

피고인은 수출입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1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1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57조 제3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4조(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취급제한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물질을 보관·저장 또는 운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취급제한물질 제조업 또는 수입업(판매 목적으로 취급제한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급제한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받고 영업을 한 자

피고인 2 주식회사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62조, 제57조 제3호, 제34조 제1항 제1호

제6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부터 제6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신고형

각 벌금 1,000,000원

취급제한 또는 금지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취급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1은 사업장에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취급제한물질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였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4조 제1항 위반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였다.

3.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형량분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환경 관련 법률 위반사건의 형량분포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도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과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06년부터 2008년 사이에 서울, 부산, 인천 등 3개 지역에서 발생한 총 400건 이상의 주요 환경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기록의 조사와 분석을 통해 환경범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방식을 분석한 자료가 있다.¹⁴⁾ 여기서는 환경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을 중심으로 개관할 것이다.

가. 자유형

환경범죄의 경우 대부분의 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되고, 그 절차유형도 공소장에 의한 정식절차가 아니라 약식절차에서 선고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환경범죄의 피고인이 자유형을 선고받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환경범죄의 경우 사건유형이나 발생맥락, 오염원, 그리고 위반행위 등에 따라 형량이 다르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즉,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자유형의 평균 구금기간(개월)은 특별환경사건이 17.0개월, 일반환경사건이 8.8개월로 특별

14) 김성은·김성언,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참조.

환경사건이 더 높았으며, 기업활동(9.5개월)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보다는 일상활동(16.0개월) 맥락에서 발생한 경우에 평균 구금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오염원별로도 차이가 있었는데, 특별환경범죄사건이 16.0개월로 가장 길었고, 그 다음이 폐기물사건(14.9개월)이 그 다음이었으며, 대기사건이 7.4개월로 가장 짧았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배출시설 등의 비정상 운영이 12.6개월로 가장 길고, 무허가 배출시설 등의 운영이 6.8개월로 가장 짧다. 그밖에 기타행위는 평균 13.0개월, 행정명령 불이행은 평균 11.6개월의 구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7> 환경사건 유형, 발생맥락, 오염원, 위반행위별 1심 평균 징역형량¹⁵⁾

구분		사례수	평균(월)	표준편차	F값/t값
사건유형	일반사건 ¹⁶⁾	45	8.8	5.03	-4.87***
	특별사건 ¹⁷⁾	14	17.0	6.74	
발생맥락	기업활동 ¹⁸⁾	47	9.5	5.52	-3.42**
	일상활동 ¹⁹⁾	12	16.0	7.39	
오염원	대기	9	7.4	6.95	6.30***
	수질	20	7.7	2.66	
	폐기물	7	14.9	9.37	
	복합	10	10.4	4.60	
	환경범죄	13	16.0	5.83	
위반행위	무허가	17	6.8	3.11	3.57*
	비정상운영	28	12.6	7.70	
	명령불이행	10	11.6	5.06	
	기타	4	13.0	3.46	
합		59	10.8	6.45	

*: $p < .05$, **: $p < .01$, ***: $p < .001$

15) 김성은·김성언,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8쪽.

16) 일반환경사건이란 오염원이 대기, 수질, 폐기물인 경우로서 환경범죄특별조치법 위반 사건이 적용되지 않은 사례들을 지칭한다.

17) 특별환경사건은 환경범죄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은 사건들을 말한다.

18) 기업활동과 일상활동의 구별기준은 환경범죄사건의 발생맥락과 관련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기업활동이란 환경사건이 기업의 영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

19) 일상활동이란 개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범하게 되는 환경사건을 말한다.

나. 벌금형

약식명령을 제외하고 1심에서 정식재판을 통해 선고된 벌금형의 액수를 사건 유형, 발생맥락, 오염원, 위반유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아래의 표를 보면, 특별환경사건의 평균 벌금액수는 853.1만원으로 일반환경사건의 평균 벌금액수인 586.1만원보다 훨씬 더 많다. 오염원별로 보면, 대기사건이 평균 1,352.4만원으로 가장 높고, 폐기물사건이 평균 877.8만원, 복합사건 722.2만원, 수질사건이 612.5만원, 그리고 특별환경범죄사건이 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2-18> 환경사건 유형, 발생맥락, 오염원, 위반행위별 1심 평균 벌금액수²⁰⁾

구분		사례수	평균(만원)	표준편차	F값/t값
사건유형	일반사건	36	586.1	315.5	-2.67*
	특별사건	13	853.8	293.3	
발생맥락	기업활동	48	668.8	322.3	1.75
	일상활동	1	100.0	.	
오염원	대기	21	1,352.4	1186.4	1.71
	수질	8	612.5	274.8	
	폐기물	9	877.8	677.8	
	복합	9	722.2	299.1	
	환경범죄	2	500.0	.0	
위반유형	무허가	13	546.2	278.7	4.39**
	비정상운영	30	770.0	317.5	
	명령불이행	3	300.0	173.2	
	기타	3	366.7	230.9	
합		49	657.1	329.1	

*: $p < .05$, **: $< .01$

20) 김성은·김성언,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129쪽.

제3절 외국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처벌의 실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과 그 처벌실태를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비교법적 관점에서 주요 선진국의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정형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으며, 처벌의 실태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양을 띠는지 고찰해보는 것도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과 선고형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1. 영국

가. 처벌법규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The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제33조는 산업안전보건 관련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별표 3A는 이러한 위반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관련법 위반 시 부과할 수 있는 처벌의 유형으로는 벌금형, 금고형, 보상명령, 사회봉사명령,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이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도록 하는 보도명령 등이 있다.²¹⁾ 또한 치안법원과 형사법원 모두 유죄가 입증된 피고인에게 처벌과는 별도로 또는 처벌의 한 형태로 보상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²²⁾ 법원은 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으며 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보상명령의 주요 목적은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제공에 있다. 2013년 12월 11일을 기점으로 법원이 명령할 수 있는 보상명령의 상한액도 크게 바뀌었다. 과거 치안법원의 보상명령 상한액은 5천 파운드²³⁾였지만 보상상한이 없어졌고 형사법원도 상한제한 없이 보상명령을 내릴 수 있다.

21) HSE 웹사이트 <http://www.hse.gov.uk/enforce/enforcementguide/court/sentencing-penalties.htm> (최종접속일: 2019년 7월 1일)

22) Powers of Criminal Courts (Sentencing) Act 2000, Section 130 (1), 2A

23) Magistrates' Courts Act 1980, Section 40(1)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3A에 명시되어 있는 위반사항과 형사처벌의 종류를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표 2-19> 영국 산업안전보건법 별표 3A²⁴⁾

위반사항	기소 방식	약식판결 형벌	정식판결 형벌
33조제1항(a)에 의한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33조제1항(a)에 의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법정최고액(5,000파운드) 이하 ²⁵⁾ 의 벌금형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제33조제1항(b)에 의한 제8조를 위반한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제33조제1항(b)에 의한 제9조를 위반한자	약식 또는 정식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무제한의 벌금형
제33조제1항(c)에 의한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제33조제1항(d)에 의한 위반자	약식만	벌금기준표 레벨5(5,000파운드)이하의 벌금형	.
제33조제1항(e),(f) 혹은 (g)에 의한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제33조제1항(h)에 의한 위반자	약식만	51주이하(잉글랜드와 웨일즈) 혹은 12개월 이하(스코틀랜드)의 금고형 혹은 벌금기준표 레벨5(5,000파운드)이하의 벌금형	.

24) 조흠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80쪽에서 재인용.

25) 14살 이하는 250파운드, 17살 이하는 1,000파운드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위반사항	기소 방식	약식판결 형벌	정식판결 형벌
제33조제1항(i)에 의한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법정최고액(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무제한의 벌금
제33조제1항(j)에 의한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법정최고액(5,0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제33조제1항(k),(l) 혹은 (m)에 의한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제33조제1항(n)에 의한 위반자	약식만	벌금기준표 레벨5이하의 벌금형(5,000파운드)	.
제33조제1항(o)에 의한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현행 법령규정에 형벌이 구체적으로 없는 위반자	약식 또는 정식	12개월 이하의 금고형 혹은 20,000파운드 이하의 벌금 혹은 병과	2년 이하의 금고형 혹은 상한이 없는 벌금형 혹은 병과

한편, 영국에서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2007)이 제정되어 2008년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²⁶⁾ 이 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 기업이 행한 행위나 기업경영상 조직 및 활동에 관한 위법 행위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행위가 각각 사람을 사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하여 기업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벌금의 상한선은 없다. 의회 지침(Guidelines Council)에 의하면 벌금액을 기업의 1년 총 매출액의 2.5%~10%내에서 부과 하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²⁷⁾

26) <http://www.hse.gov.uk/corpmanslaughter/index/htm> 참조.

27) 조흥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86쪽.

나. 처벌실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처벌에 관한 산업안전보건청(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2018 통계자료²⁸⁾를 보면 2017-2018년 산업안전보건청과 스코틀랜드 지방검찰(Crown Office and Procurator Fiscal Service, COPFS)이 기소한 건수는 517건이었으며, 이 중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된 건수는 493건(95%)이었다. 전년도인 2016-2017년(612건 기소)과 비교해 기소건수가 16% 정도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관련해 거두어들인 벌금 총액은 7억 2천6백만 파운드이다. 이를 사건당 평균으로 나누어 보면, 1건당 부과된 벌금액은 14만 7천 파운드이다. 2016년 2월부터 새로운 양형지침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과거 2013-2014년 벌금총액 16,967,596파운드, 건별 평균 29,873파운드였던 벌금액은 2015-2016년 38,798,163파운드(건별 평균 57,735파운드)로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후 새로운 지침이 완전하게 적용된 이후부터는 벌금총액 및 건별 평균은 약 5배가량 급격히 증가했다.²⁹⁾

산업안전보건청이 교부한 통지건수는 지난 2013-2014년 10,121건, 2015년 9,446건, 2016년 8,776건, 2017년 9,507건, 2018년 8,942건이며 지방정부의 통지건수는 3,532(2014년), 2,854건(2015년), 2,604건(2016년), 2,418건(2017년), 2,580건(2018년)으로 전반적으로 감소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과 지방정부의 위반에 대한 통지건수를 보면 산업안전보건청이 지방정부보다 약 3배 정도 많은 수의 통지를 교부하고 있다. 산업보건 및 안전과 관련해 살펴본 결과 기소건수와 통지건수는 2015-2016년 잠시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고 있고 그에 따라 부과된 벌금 총액과 건별 벌금 평균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28) 이하 통계는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nforcement statistics in Great Britain, 2018, 2018년 10월 31일 발표를 참조했다.

29)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2016. 양형위원회 웹사이트 <https://www.sentencingcouncil.org.uk/publications/item/health-and-safety-offences-assessment-of-guideline/> 참조.

<표 2-20> 영국 HSE 사건 수 별 법집행 조치 내역 및 추이

년 도	HSE				
	기소	유죄 판결	유죄율 (%)	총 벌금 (£)	평균 벌금 (£)
2013-14	604	568	94%	16,967,596	29,873
2014-15	659	619	94%	18,072,811	29,197
2015-16	711	672	95%	38,798,163	57,735
2016-17	612	570	93%	71,764,327	125,902
2017-18	517	493	95%	72,614,869	147,292

<표 2-21> HSE/지방정부 통지건수

년도	통지건수	
	HSE	지방정부
2013-14	10,121	3,532
2014-15	9,446	2,854
2015-16	8,776	2,604
2016-17	9,507	2,418
2017-18	8,942	2,580

통지건수는 2016-17년에 소폭 증가했다 다시 감소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청은 앞으로도 통지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7/18년에 발부된 통지 내용을 살펴보면 개선통지가 7,623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지통지(prohibition notice)가 3,883건으로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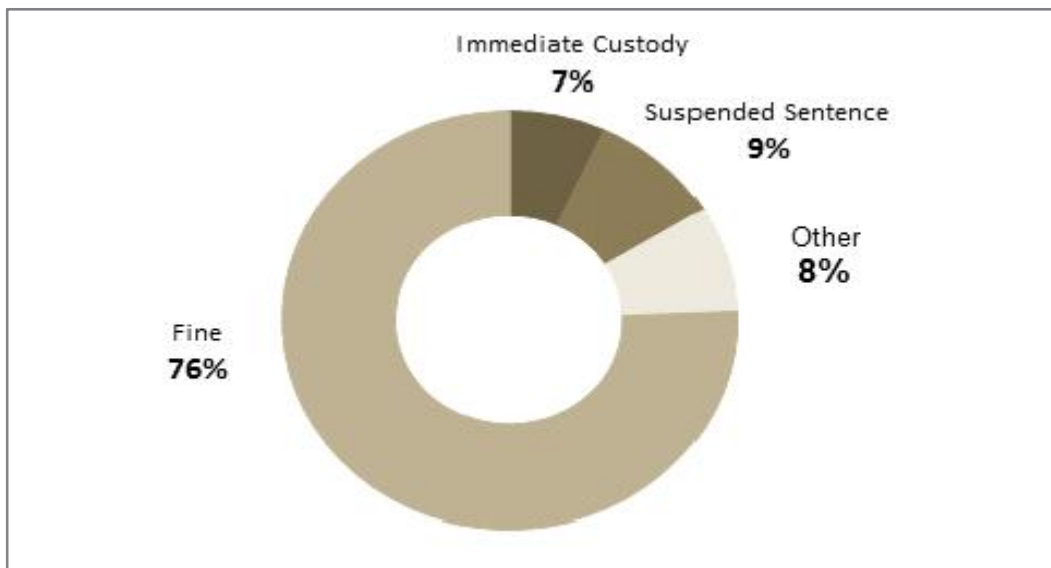
<표 2-22> 영국의 산업별 기소된 위반건수 및 유죄건수

구분	연도	농업, 사냥, 임업, 어업	채취 및 전기 공급 산업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모든 산업
기소된 위반	2015/16	42	9	315	474	30	1,125
	2016/17	25	3	259	380	25	945
	2017/18	22	2	189	345	15	800
유죄	2015/16	42	9	282	399	30	982
	2016/17	24	3	239	337	17	826
	2017/18	18	2	184	304	13	728
총 벌금액	2015/16	612720	4164120	12,465,301	7,912,055	465,760	38,798,163
	2016/17	712735	1386600	25,344,571	17,144,225	6,056,475	71,764,327
	2017/18	300171	530000	27,008,264	18,983,937	1,363,800	72,614,869
유죄 당 평균 벌금	2015/16	14589	462,680	44,203	19,830	15,525	39,509
	2016/17	29697	462,200	106,044	50,873	356,263	86,882
	2017/18	16676	265,000	146,784	62,447	104,908	99,746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규정을 강화함에 따라 같은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위반이 이루어진 시기 및 양형이 이루어진 시기에 따라 처벌의 내용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08년 산업보건안전(위반)법(Health and Safety (Offences) Act 2008)에 따라 2009년 1월 16일 이후 행해진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되었다. 또한 2012 법률구조, 양형 및 범죄자 처벌에 관한 법(Legal Aid Sentencing and Punishment of Offenders Act 2012) 제85조는 약식판결에서 부과할 수 있는 벌금 상한을 과거 2만 달러에서 상한이 없는 벌금으로 상향했다.

다만 그 위반이 2015년 3월 12일 이후 이루어진 경우에만 이를 적용한다.³⁰⁾ 일반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제2조 내지 제6조³¹⁾를 관련법 개정 전에 위반할 경우 약식재판에서는 최고 2만 달러, 정식재판에서는 상한이 없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처벌 강화에 따라 동일한 위반을 했다하더라도 2015년 3월 12일 이후 약식재판에서는 상한이 없는 벌금형 또는 6개월 미만의 금고형 또는 병과, 정식재판에서는 상한이 없는 벌금형 또는 2년 미만의 금고형 또는 병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처벌 유형>



30) HSE, Model Examples, Summary of maximum penalties for offences, <http://www.hse.gov.uk/enforce/enforcementguide/court/sentencing-examples.htm#summary-maximum> (최종접속일: 2019년 6월 27일)

31) 제2조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제3조 근로자 이외의 사용자 및 자영인의 일반적 의무, 제4조 근로자이외의 사람들에 대한 건물과 관련된 사람들의 일반적 의무, 제6조 작업 중 사용하는 물품이나 물질에 관한 제조업자의 일반적 의무

처벌유형을 살펴보면 벌금형이 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벌금 총액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양형지침 변경 이후 크게 증가했다. 새롭게 변경된 양형지침에 따르면 벌금은 위반자 또는 기업의 매출액과 수익성에 근거해 산출한다. 또한 부과되는 벌금액은 반드시 산업안전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할 필요성을 경영진뿐만 아니라 주주들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충분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2017년 6월 Tesco Stores Ltd는 산업안전위반으로 5백만 파운드 벌금형³²⁾, 같은 해 9월 Merlin Attractions Operations가 안전조치 위반으로 5백만 파운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³³⁾.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판결로는 대형마트 체인인 Iceland Foods ConocoPhillips 3백만 파운드³⁴⁾, London and Southeastern Railways와 Wetton Cleaning Services Ltd 각각 250만 파운드 및 110만 파운드,³⁵⁾ KFC 95만 파운드의 벌금형³⁶⁾ 등이 있다. 영국은 이렇듯 산업안전 관련법을 위반한 기업 및 개인에게 부과하는 벌금액을 대폭 상한 조정해 시설물 및 안전정책, 절차에 대한 정기점검, 위험평가와 그에 따른 문제 시정 등을 통해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2) The Guardian, “Tesco fined 8m for fuel leak at petrol station in Lancashire”, 2017년 6월 16일 보도자료. <https://www.theguardian.com/business/2017/jun/16/tesco-fined-8m-fuel-leak-petrol-station-lancashire-supermarket-haslingden>

33) Financial Times, “Merlin fined £5m for Alton Towers rollercoaster crash”, 2016년 9월 27일 보도자료, <https://www.ft.com/content/967773ce-84a2-11e6-a29c-6e7d9515ad15>

34) Health and Safety at Work 2016년 2월 11일 보도자료 <https://www.healthandsafetyatwork.com/news-and-prosecution/conocophillips-fined-3-million-offshore-gas-leaks>

35) the Guardian, “Southeastern rail and contractor fined £3.6m over cleaner’s death”, 2017년 11월 보도자료 <https://www.theguardian.com/uk-news/2017/nov/17/southeastern-railway-contractor-wettons-fined-36m-cleaners-death-roger-lower>

36) SHP, “KFC to pay almost £1m after two employees suffer burns” 2017년 1월 24일 보도자료, <https://www.shponline.co.uk/in-court/kfc-to-pay-almost-1million-after-two-employees-suffer-burns/>

다. 주요사례

(1) 사업주의 의무위반 사례³⁷⁾

2010년 4월 23일 Tata Steel의 직원으로 기기 점검 업무를 담당하던 Standerline가 크레인을 점검하는 중 자신이 타고 있던 케이지 위로 천장 크레인이 떨어졌다. 그 사고로 인해 Standerline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HSE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Tata Steel은 이번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2번이나 발생했었지만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사건의 원인인 된 천장 크레인의 사용을 중단해 사전에 사건을 방지할 수도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방지조치조차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에 대해 Tata Steel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와 제3조 위반을 인정했다. 사건 발생 후 8년이 지난 2018년 2월, 법원은 Tata Steel의 안전조치 위반을 인정해 140만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후 이 사건의 조사를 담당했던 산업안전보건청 조사담당관 Kirsty Storer는 Tata Steel이 안전조치만 제대로 준수하고 이행했다면 안타까운 생명을 잃은 그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기업의 과실치사죄에 관한 사례³⁸⁾

2014년 12월 10일 Benjamin Edge (당시 25세)가 천장 해체작업을 하다 천장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 그는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사고 발생 후 즉시 병원으로 옮겼지만 몇 시간 후 사망했다. 맨체스터 경찰서와 산업안전보건청이 공동으로 사건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MA Excavations Ltd는 천장해체 작업을 Christopher와 Robert 'James' Brown 형제가 운영하는 SR and RJ Brown Limited에 하청을 주었다. MA Excavations Ltd의 대표 Mark Aspin은 SR and RJ Brown Limited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

37) <https://www.express.co.uk/finance/city/693464/Tata-Steel-must-pay-more-than-2m-health-safety-breaches>

38) <https://www.shponline.co.uk/in-court/full-story-bosses-tried-to-cover-up-details-of-25-year-olds-fatal-fall/>

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해 하청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그가 하청을 준 회사의 자격에 어떤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Robert ‘James’ Brown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엉터리(grossly inadequate)’ 위험평가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Edge가 사고로 천장에서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나서야 Brown 위험평가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사실 위험평가서는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작성했어야 했다. 또한 SR and RJ Brown Limited는 자신들의 잘못을 은폐하고 사고 원인이 Edge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려고 사고 발생 직후, Edge의 동료에게 그의 집에 가서 작업용 벨트를 가져오도록 지시했다. 즉, 작업 시 안전벨트를 착용해야하지만 피해자가 착용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도록 해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 SR and RJ Brown Limited의 책임자 브라운 형제는 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작업용 벨트는 원래부터 현장에 있었다고 계속해서 주장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SR and RJ Brown Limited에는 기업의 과실치사 혐의로 30만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 회사의 책임자인 브라운 형제에게는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20개월을 선고했다. 산업안전법 위반으로 하청을 준 MA Excavations Ltd에 대해서는 75,000 파운드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책임자인 Mark Aspin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사고 발생 후 작업용 벨트를 현장에 갖다 놓은 Peter Heap는 공무집행 방해로 징역 4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3)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례³⁹⁾

2016년 7월 27일 Camgrain Stores Ltd 직원이 공사현장에서 대형화물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감독인 Mr Edward Orlopp는 통제실에서 나와 현장을 가로 질러 걸어가던 중 이동 중이던 대형화물트럭에 치였다. 당시 15미터 길이의 대형트럭을 운전했던 운전자는 사이드미러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했지만 피해자는 보지 못했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차를 이동하다가

39) <https://www.cambridgeindependent.co.uk/news/employee-died-after-being-struck-by-a-lorry-at-camgrain-stores-9074688/>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HSE는 회사는 현장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았고 현장근로자들이 대형 차량이 이동하는 경로를 다니지 않도록 예방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산업안전보건청의 조사관에 따르면 현장에서 차량에 치이는 사고는 가장 흔한 산업재해 중 하나이지만 몇 가지 간단한 안전조치만 취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Camgrain Stores Ltd는 산업안전법 제2조 제1항 위반을 인정했고 2019년 6월 법원은 18만 파운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Camgrain Stores Ltd의 대표 Simon Willis는 앞으로 HSE와 협력해 근로자의 안전 개선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년 7월 6일 영국 브리튼에서 유모차에 타고 있던 3살 여아와 엄마 위로 목재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아이 엄마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운 상태에서 비계공사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고 갑자기 아이의 머리 위로 길이 10미터의 대형 목재가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해 아이는 평생 장애를 갖고 살게 되었다. 산업안전보건청 조사에 따르면 공사를 담당했던 자영업자 Glowachki는 비계 설치를 위해 목재를 위로 끌어 올려 로프로 묶고 있었는데 목재가 미끄러져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당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아래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하는 출입금지 표시가 되어있지 않았다. 2019년 6월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인 Glowachki에게 징역 6월·집행유예 18개월, 사회봉사 220시간을 선고했다.

2. 미국

가. 처벌법규

미국에서는 연방차원에서 1970년에 제정된 산업안전보건법(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1970; OHSAct)과 미국연방규칙 제29장(29 CFR)에서 산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내용들을 규율하고 있다.⁴⁰⁾ 연방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과 보건분야에서의 기본법으로서 안전위생 분야에서 개별 주나 기업, 조합

등을 지도·지원하는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집행하는 것은 대부분 각 주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는 고유한 산업안전 관련법과 시행령을 갖추고 있다. 미국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처벌 규정은 위반의 종류에 따라 민사벌칙과 형사벌칙으로 나뉘어진다.

(1) 민사벌칙

민사벌칙에 의한 벌금은 ① 고의 또는 반복적인 위반, ② 중대한 또는 경미한 위반, ③ 위반행위의 미시정, ④ 게시의무 위반 등 4가지 사안에서 부과된다.

①의 사례인 고의 또는 반복적인 위반이란, 사업주가 의도적 또는 알면서도 법한 위반으로서 사업주가 자신이 행하고 있는 행위가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사업장에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합당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재점검 결과 이전에 위반으로 통고된 기준, 규정, 규칙, 명령 등을 다시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⁴¹⁾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70,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 고의로 위반한 경우 각 위반사항에 대하여 5,000불 이상을 부과 할 수 있다.⁴²⁾

②의 사례에서 중대한 위반이란 사망 혹은 심각한 신체적 장애가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 위험성을 사업주가 알고 있거나 알았어야 하는 경우의 위반을 말하고, 경미한 위반이란 안전보건과 직접적인 관련은 있으나 사망이나 심각한 신체 장애를 일으킬 우려가 없는 위반을 말한다.⁴³⁾ 중대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경미한 위반행위도 모두 그 사업주에게 7,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40) 미국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사에 관해서는 조흠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 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87-89쪽 참조.

41) 조흠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93쪽.

42) OSHA Act §7 (a)

43) 조흠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94쪽.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⁴⁾

③의 사안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 제(a)항에 따라 위반장이 발부된 사항을 시정기한내에 시정하지 못한 때 당해 위반이 지속되는 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1일당 7,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④사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게시의무(Violation of posting requirements)를 위반한 사업주에게 7,000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⁴⁵⁾

(2) 형사벌칙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은 ① 고의적인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② 점검 누설 및 서류 작성 미비의 경우를 형사벌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에 따라 제정된 기준, 규칙, 명령 또는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함으로써, 당해 근로자가 사망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1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1회 이상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20,000불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⁴⁶⁾

또한 장관이나 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사전 승인 없이 법에 따른 점검을 누설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1,000불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하여야 한다.⁴⁷⁾ 나아가 법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할 신청, 기록, 보고, 계획 또는 기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미비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10,000불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할 수 있다.⁴⁸⁾

44) OSHAAct §17 (b)(c)

45) OSHAAct §17 (i)

46) OSHAAct §17 (e)

47) OSHAAct §17 (f)

48) OSHAAct §17 (g)

(3) 민사벌금의 인상⁴⁹⁾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민사벌칙 및 형사벌칙은 1990년 개정되었고 그 이후 약 25년 가까이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2015년 11월 2일 오바마 대통령이 연방 민사처벌 인플레이션조정법(FCPIA, Federal Civil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Improvements Act)에 서명하면서 관련법이 개정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과거 물가상승률 적용이 배제되었던 산업안전보건법(OHSA)도 적용대상에 포함⁵⁰⁾됨에 따라 2016년 8월 1일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청(OSHA)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민사벌금을 인상했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청이 마지막으로 민사벌금을 조정했던 1990년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80% 상승했으며 이에 따라 각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을 78%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2015년 11월 2일 이후 발생한 위반사건에는 인상된 벌금이 적용된다.

<표 2-23> 2015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민사벌금

구분	적용 전(\$)	적용 후(\$)
고의 또는 반복적 위반	70,000	124,709
	최저벌금: 5,000	8,908
중대 또는 경미한 위반	7,000	12,741
위반 시정 미이행	7,000	12,741

49) 산업안전청 언론보도 자료, 2016년 6월 30일,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national/06302016> 참조

50) Pub.L. 114-74, Sec 701. [중략] (a) In General.--Not later than July 1, 2016, and not later than January 15 of every year thereafter, and subject to subsections (c) and (d), the head of each agency shall--'';

(B) in paragraph (1)--

(i) by striking ``by regulation adjust'' and inserting ``in accordance with subsection (b), adjust''; and

(ii) by striking ``the Tariff Act of 1930,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of 1970, or the Social Security Act'' and inserting ``or the Tariff Act of 1930'. 전문 및 관련 조항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14publ74/html/PLAW-114publ74.htm> 참조.

<표 2-24> 2019년 민사벌금 기준⁵¹⁾

위반유형	이전 최저벌금액(\$)	현재 최저벌금액	이전 최대벌금액	현재 최대벌금액
중대한 위반	-	-	12,934	13,260
경미한 위반	-	-	12,934	13,260
반복적 위반	-	-	129,336	132,598
고의적 위반	9,239	9,472	129,336	132,598
시정조치 위반	-	-	12,934	13,260
게시의무	-	-	12,934	13,260

민사벌금에 물가상승률 적용 외에도 2015년 12월 법무부와 노동부는 처벌의 효과 증대와 사고예방을 위해 형사처벌 강화, 사업주 책임강화 및 사업주의 피해자 보상 제공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MOU를 체결했다.⁵²⁾

나. 처벌실태

미국 산업안전청은 매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수, 피해자수, 부과된 벌금총액, 사고원인 등 관련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다. 최근 자료를 보면 2010년 이후 총 위반건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부과된 벌금총액도 감소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6년 민사처벌 인플레이션 조정법이 통과되면서 벌금총액은 크게 증가했다.

51) 연방 등록소(Federal Register) 발표자료 재구성. 원문은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9/01/23/2019-00089/department-of-labor-federal-civil-penalties-inflation-adjustment-act-annual-adjustments-for-2019> 참조.

52) 미법무부,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Departments of Labor and Justice on Criminal Prosecutions of Worker Safety Law”, 2015년 12월 17일, 전문은 <https://www.justice.gov/enrd/file/800431/download> 참조.

<표 2-25> 연방산업안전청(OSHA) 점검/집행 활동⁵³⁾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총 위반 건수	78,037	67,556	65,044	59,856	51,273	50,910
고의적 위반	316	433	527	524	319	341
반복적 위반	3,119	2,954	3,088	3,146	2,771	2,539
중대한 위반	58,234	49,416	47,934	42,984	36,802	36,645
분류되지 않은	-	1	1	1	-	1
기타	16,260	14,597	13,016	11,895	11,300	11,265
FTA	77	155	107	152	81	65
벌금총액(\$)	149,994,488	143,535,247	156,525,585	162,872,470	196,837,526	196,598,571
고의적 위반	12,484,996	17,474,793	21,581,025	21,794,276	20,808,006	21,108,034
반복적 위반	19,563,867	20,407,958	24,042,251	27,277,061	31,447,412	29,823,210
중대한 위반	110,326,980	97,427,404	102,971,432	103,234,454	130,767,703	131,173,038
분류되지 않은	-	0	4,200	-	-	5,432
기타	6,855,744	6,500,117	7,222,074	8,537,920	12,183,280	12,926,576
FTA	762,901	174,976	704,143	2,028,758	1,631,125	1,561,970
평균벌금(\$)	1,922	2,125	2,406	2,721	3,839	3,862
고의적 위반	39,509	40,357	40,951	41,592	65,229	61,900
반복적 위반	6,272	6,909	7,786	8,670	11,349	11,501
중대한 위반	1,895	1,972	2,148	2,402	3,553	3,580
분류되지 않은	-	0	4,200	-	-	5,432
기타	422	445	555	718	1,078	1,148
FTA	9,908	11,129	6,581	13,347	20,137	24,030
다툼이 있는 사건비율(%)	6.0%	6.6%	7.4%	8.3%	8.5%	8.3%

53) 미국 노동 총연맹 산업별 조합 회의(AFL-CIO), "Death on the Job: The Toll of Neglect, 2019", 2019년 4월 25일.

미국은 산재사고의 절반이상은 안전조치 등을 통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벌금을 산업안전법 집행을 위한 주요 방법으로 보고 있다.⁵⁴⁾ 이러한 이유로 산업안전 위반에 대해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2018년 발표된 통계에 따르면 Didion Milling Inc에 1,837,861달러의 최대벌금이 부과되었다. 벌금액수에 있어 상위 15개 기업 중 5개 기업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산업안전청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표 2-26> 연방산업안전청(OSHA) 주요 사건(벌금액 기준)⁵⁵⁾

기업명	벌금부과일	최초 벌금액(\$)	납부 벌금액(\$)
Didion Milling INC.	2017년 11월 17일	1,837,861	1,837,861
Flrst Marine LLc HUTCO Inc.	2018년 7월 17일	1,431,049	693,491
Dudley Lumber Company Inc.	2017년 11월 17일	973,399	415,475
Marshall Pottery Inc.	2017년 11월 10일	944,366	545,160
City Redevelopment LLC	2018년 6월 20일	630,000	630,000
H.B./Fuller Company dba Adhesive System Inc.	2018년 7월 25일	590,335	587,564

또한 산업안전청은 벌금액 기준, 현재까지 가장 많은 벌금이 부과된 기업의 순위도 발표하고 있다. 1995년 118건의 고의적 위반이 발견된 삼성중공업 광 지부격인 Samsung Guam Inc에 826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이후 회사는 문

54) 이러한 인식은 의회논의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안전법에 따른 벌금이 과연 적합한가에 대한 논의는 2015년 물가상승률에 따른 벌금액 조정 관련법이 채택되기 이전부터 의회에서 논의되어 왔다. House Hearing, 111 Congress, “Are OSHA’s Penalties Adequate to Deter Health and Safety Violations?”, 2009년 4월 28일. 전문은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111hhrg48731/html/CHRG-111hhrg48731.htm> 참조.

55) AFL-CIO, 『Death on the Job - The Toll of Neglect』, 2019.

제를 시정해 중대한 위반으로 변경되었고 그에 따라 벌금총액도 1,829,000달러로 줄었다.⁵⁶⁾

<표 2-27> 역대 최대벌금액 부과 기업⁵⁷⁾

기업명	벌금부과일	최초 벌금액(\$)	최종 벌금액(\$)
BP Products North America	2009년 10월 29일	81,340,000	50,610,000 14,567,000 205,000 (최종합의 벌금액)
BP Products North America	2005년 9월 22일	21,361,500	
IMC Pertilizer/Angus Chemical	1991년 10월 31일	11,550,000	10,000,000
Imperial Suger	2008년 7월 25일	8,777,500	6,050,000 (최종합의 벌금액)
O&G Industrial INC.	2010년 8월 3일	8,347,000	1,000,000 (최종합의 벌금액)
Samsung Guam INC.	1995년 9월 21일	8,260,000	1,829,000 (최종합의 벌금액)
CITGO Petroleum	1991년 8월 29일	8,155,000	5,800,000
Dayton Tire	1994년 4월 18일	7,490,000	7,490,000
USX(U.S. Steel Corp.)	1989년 10월 26일 1989년 11월 2일	7,275,300	3,268,845 (최종합의 벌금액)
Keystone Construction Maintenance	2010년 8월 3일	6,623,000	250,000 (최종합의 벌금액)

56) 미노동부 점검 결과. https://www.osha.gov/pls/imis/establishment.inspection_detail?id=106196801 참조.(최종접속일: 7월 22일)

57) AFL-CIO, 「Death on the Job - The Toll of Neglect」, 2019.

다. 주요 사례

(1) 고의적 위반사례

2017년 5월 31일, 위스콘신 주 캄브리아에 소재한 Didion Milling 시설에서 가연성 분진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사고로 인해 당시 현장에서 일하던 19명의 직원 중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살의 근로자는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모두 절단해야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조사기관은 시설 내에 가연성 분진이 누설되고 쌓이면서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았다. 또한 점화물질을 관리하는 장비 부족 및 업주의 시설물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Didion Milling는 8개의 중대한 고의적 위반을 포함해 14개 고의적 위반과 5개의 중대한 위반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14개의 고의적 위반에는 가연성 물질 관리 실패, 정전기로 인한 화재방지 장치 미작동, 개인안전장비 미지급, 외에도 위험상황을 즉시 알려줄 긴급경보 장치를 고장 난 채로 방치 등등이 포함된다. 사건조사 책임자는 사측이 이미 관련업체에 잘 알려진 위험물질을 관리했다면 이런 안타까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고에 따라 Didion에 \$1,837,861의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고 사측이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벌금이 확정되었다.⁵⁸⁾

(2) 고의적 위반 및 중대한 위반 사례

오하이오 주에 소재한 비닐 타일제조사 Nox US LLC에서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근로자 한명이 타일 기계에 끼이는 사고와 재활용 기계를 작동하던 중 두 개의 손가락이 절단 되는 등 2건의 사고가 발생하자 산업안전청은 해당 시설을 점검했다.

2017년 여름에 있었던 두 번의 점검에서 고의적 위반 2건, 중대위반 2건이 적발되었고 총 514,236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6월과 7월 있었던 점검에서는 중대한 위반으로 25,350달러와 7월과 8월에 있었던 점검에서 고의적 위반으로 488,886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산업안전청은 의도치 않은 장비의 이동을 막

58) 화학약품관련 산업재해 조사 전담기관 Chemical Safety Board 사건설명([https://www.csb.gov/didion-milling-company-explosion-and-fire-/](https://www.csb.gov/didion-milling-company-explosion-and-fire/) 참조),

는 Lockout/tagout 시스템 미비로 인해 근로자 두 명이 위험에 노출되었었다며 사고의 원인을 설명했다. 조사당국은 근로자들의 작업장 내 안전을 위해 업주는 반드시 시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⁵⁹⁾

3. 일본

가. 노동안전위생법령

(1) 노동안전위생법령 내용

법률은 국회, 총리령은 내각, 부령은 그 행정을 담당하는 각 성 청이 정한다. 노동안전위생법의 법령 구조는 노동안전위생법, 정령(우리나라 시행령), 노동안전위생규칙(후생노동성령),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위해방지기준의 확립, 책임체제의 명확화 및 자주적 활동의 촉진조치를 강구하는 등, 그 방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직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함과 동시에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노동안전위생법 제1조).

현행 노동안전위생법은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2장 노동재해방지계획(제6조~제9조), 제3장 안전위생관리체제(제10조~제19조의3), 제4장 노동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제20조~제36조), 제5장 기계 등 및 위험물에 관한 규제(제37조~제58조)⁶⁰⁾, 제6장 노동자의 취업에 있어서의 조치(제59조~제63조), 제7장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조치(제64조~제71조), 제7장의2 쾌적한 직장 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제71조의2~제71조의 4), 제 8장 면허 등(제72조~제77조), 제9장 안전위생개선계획 등(제78조~제87조)⁶¹⁾, 제10장 감

59) 산업안전청 보도자료, 2017년 12월 21일, <https://www.osha.gov/news/newsreleases/region5/12212017> 참조.

60) 제1절 기계등에 관한 규제(제37조~54조의6), 제2절 위험물 및 유해물에 관한 규제(제55조~제58조)

61) 제1절 안전위생 개선계획(제78조~제80조), 제2절 노동안전 컨설턴트 및 노동위생 컨설턴트(제81조~제87조)

독 등(제88조~제100조), 제11장 잡칙(제101조~제115조), 제12장 벌칙(제115조의2~제123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본의 법령 및 제도를 모방한 우리나라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체계가 매우 유사하다.

그 외 노동안전위생법은 노동안전위생법시행령, 후생노동성에 의한 수많은 시행규칙 및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⁶²⁾

(2) 노동안전위생법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법률

노동안전위생법은 단독법이지만 노동기준법 등 많은 다수의 법률과 상호 밀접하게 관련지으며, 근로자 안전, 건강, 쾌적한 직장 환경 조성에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그 예를 들면,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의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노동안전위생의 책임분담, 진폐법은 진폐와 관련한 건강관리 등의 조치, 노동기준법은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의 근로조건의 적정화, 작업환경측정법은 작업환경관리를, 가내노동법은 제4장의 안전 및 위생에 대하여 노동안전위생법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노동재해방지단체법은 사업주단체에 의한 자주적인 노동재해예방활동을 촉진하는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3) 노동안전위생법 구조와 실효성 확보

노동재해는 기계설비 등의 불안정한 상태(고속회전체 등과 같은 높은 리스크 상태)와 불안정한 행동(고속회전체에 근로자가 손을 놓은 등 높은 리스크 행동)이 중첩되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직업성질병은 비위생적인 상태(작업환경이 유해물질에 오염되어 있는 등의 리스크가 높은 상태)와 불건강한 행동(분진작업장에서 근로자가 분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의 리스크가 높은 행동)이 중첩되어 리스크가 크게 증폭되어 노동재해나 건강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노동안전위생법은 기계설비나 작업환경 등이 불안정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태가 되는 리스크를 저감하고, 안전위생교육의 실시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불안전

62)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대하여, 中央労働災害防止協會, 労働衛生のしおり, 2018년도, 2018.8, 171-362면 참조.

하거나 불건강한 행동을 할 위험성을 낮게 하여, 동법 제1조의 목적규정의 내용과 같이 근로자의 안전확보와 쾌적한 작업환경의 형성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위생법은 안전관리체제의 정비, 기계설비 등의 하드웨어적인 대책, 안전위생교육이나 건강관리 등의 소프트웨어 대책, 국가의 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노동안전위생법의 내용 및 실효성 제고와의 관계에서 노동안전위생법을 보면, 위에서 본 노동안전위생법 제5장(기계, 위험물, 유해물에 관한 규제), 제6장(안전위생 교육, 취업제한, 근로자 취업에서의 조치), 제7장(건강진단, 사후조치, 건강유지 조치), 제7장의2(쾌적한 직장환경 형성 조치), 제8장(면허), 제4장(위험 또는 건강장애 방지조치)은 불안정하거나 비위생적인 상태의 위험 저감 조치와 불안정하거나 비위생적인 행동의 위험 저감조치에 도움을 주고, 이들은 결국 안전과 건강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고, 이에 제1장 총칙과 제3장 안전위생관리체제가 이들 상호간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나아가 이들 관계들의 배후에는 제2장(산업재해방지계획), 제9장(사업장 안전 또는 위생에 관한 개선조치), 제10장(감독 등), 제11장(잡칙), 제12장(벌칙)이 자리 잡고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⁶³⁾

나. 노동안전위생법과 산업재해

일본의 중대재해 사상자수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경향이지만 사망자수는 점점 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1년도의 사망자수가 월등히 많은 것은 지진과 관련한 재해에 의한 것이다. 그 밖에 2017년도에는 업무상부상에 의한 질병자수가 5,963명인데, 업무상질병자수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재해성 요통이 5,051명으로, 업무상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가운데 80%를 점하고 있다. 물리적 인자에 의한 질병은 773명으로 업무상 질병의 9.9%를 차지한다.⁶⁴⁾

63) 木村嘉勝, よくわかる労働安全衛生法, 労働調査會, 2019, 154-155쪽.

64) 中央労働災害防止協會, 労働衛生のしおり, 2018년도, 2018.8, 19쪽.

**<표 2-28> 일본의 사망자·사상자 수 및 업무상 질병 발생현황
(휴업4일 이상)⁶⁵⁾**

구 분	사상자수(명)	사망자수(명)	업무상질병자수 (휴업4일 이상)
2010년	107,759	1,195	8,111
2011년	114,176	2,338	7,779
2012년	119,576	1,093	7,743
2013년	118,157	1,030	7,310
2014년	119,535	1,057	7,415
2015년	116,311	972	7,368
2016년	117,910	928	7,340
2017년	120,460	978	7,844

일본의 산업재해 예방 등과 관련하여 지진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표에서의 2011년 사망자수가 급증한 것은 2011년 3월 11일 발생한 동북지방태평양반 지진에 따른 재해 유형의 하나로서 지진이 산업재해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와 같은 대지진에 의한 산업재해 등의 급증에 대처하고 있는 행정관청의 근로자들에게도 과로에 의한 우울증, 불면증의 2차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 노동안전위생법위반과 처벌 상황

(1) 감독체제

일본은 노동안전위생법의 시행사무를 노동기준감독서장 및 노동기준감독관이 담당한다. 노동기준감독관은 정기적 또는 임의적으로 근로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이에 따라 공장과 사업장 등에 들어가 기계, 설비 등을 검사하고 관계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법률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사업주 등에 감독할 권한을 갖는다. 그리고 노동기준감독관은 사업장에 입회하여 질

65) 中央労働災害防止協會, 労働衛生のしおり, 2018년도, 2018.8, 18쪽.

문하고 장부·서류를 검사하며 작업환경을 측정하고 검사를 위한 원자재 등을 수거할 권한을 가진다(후생노동성, 도도부현 노동국 및 노동기준감독서에는 산업안전전문관 및 노동위생전문관을 두게 되는데, 이들도 동일한 권한을 가짐). 도도부현 노동국장 또는 노동기준감독서장은 법위반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주문자, 기계 등의 대여자 또는 건축물 대여자에 대해, 또는 산업재해 발생이 급박한 위험이 있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해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건설물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정지 그 밖에 산업재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내지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위의 노동기준감독관의 권한은 노동기준법에는 법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사법경찰직원의 직무를 노동기준감독관이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다. 여기서 근로감독관은 사업주 등이 법률을 위반하고 이 사안이 중대하고 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원으로서 범죄조사를 수행할 수 있고 검찰청에 사업주를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송치할 수 있다.

(2) 감독결과 및 사법처리 현황

2015년도 근로감독실시건수는 169,236건이며, 이 가운데 정기감독은 133,116건, 심고감독 22,312건, 재감독 13,808건임을 알 수 있다.⁶⁶⁾ 2015년도 정기감독 실시 사업장수가 133,116건 가운데 위반은 92,034(69.1%)이고, 이 가운데 근로시간 30%, 안전기준 27.7%, 건강진단 21.9%, 가산임금 21.1%, 취업규칙 11.6%에 이른다. 이 가운데 노동기준감독관이 사법처분으로서 검찰청에 송치한 건수는 966건이며, 이 가운데 노동기준법 위반이 402건(41.6%), 노동안전위생위반이 550건(56.9%),⁶⁷⁾ 최저임금법위반이 14건(1.5%)임을 알 수 있다. 노동기준감독관이 검

66)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平成27年労働基準監督年報(第68回) 참조. <https://www.mesoscopic.com/entry/2017/04/12/131153>

67) <https://www.roukitaisaku.com/zesei/jirei08.html>.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의 경우에 후술하는 사례외에는 대부분의 경우, 위생관리자, 안전관리자, 총괄안전위생관리자, 산업의 위촉 등의 선임과 근로자 건강검진과 관련한 위반으로 알려지고 있다.

찰청으로 송치한 966건 가운데 검찰관이 기소한 건수는 404건으로 기소율은 42.5%이고, 기소한 404건 모두 유죄로 판단되었으며,⁶⁸⁾ 그 가운데 징역 1년 1건, 정식재판에 의한 벌금 3건,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 400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노동관련 위반에 대한 노동기준감독관의 검찰청 송치에 의한 기소율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는 노동기준감독서에 의한 수사의 정밀도가 높아진 것에 더하여 범위반기업에 대하여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 검찰관의 강한 의지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컴프라이언스 캠페인이 노동관련 범위반에 대한 검찰관의 기소율을 높이는 작용을 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2015년도에 검찰관이 기소한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노동기준감독관이 검찰관에 송치한 건 404건 가운데 400건이 약식절차에 의하여 끝난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절차란 간이재판소가 관할하는 사건으로 피의자가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경우로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과하는 사건에서 취하여지는 절차이다. 즉 공판을 행하지 않고 재판소에서 약식명령을 내리는 형태인 것이다. 노동기준법의 벌칙규정은 벌금이 100만엔 이하인 경우가 많아 대부분의 범위반에서 이러한 절차에 의하여 책임이 묻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판소가 이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규정에 따라 심판을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463조).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하거나 기업의 법 준수 위반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하는 재판소의 의지도 작용하여, 통상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명령이 아니라 통상의 재판에 의한 벌금형 선고도 나타나고 있다.⁶⁹⁾ 이는 해당 기업이 정식재판을 받으면서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평판을 받게 되는

68) 일본 검찰관은 기소를 한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지 못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소율은 낮지만 기소한 경우의 유죄선고 비율은 90%를 초과하며, 이 경우에는 100% 유죄가 성립된 것임을 알 수 있다.

69) 덴츠광고회사의 과로자살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회부에 대하여, 송강직, 일본에서의 과로자살 범리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권 2집,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2., 245-276면 참조.

결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라. 노동안전위생법 위반과 검찰청 송치 사례⁷⁰⁾

(1) 기계 끼임 사망 사건

兵庫·姫路労働基準監督는 기계에 위험방지조치를 게을리 하여 근로자가 자동 가공기계를 사용하는 목재가공작업에서 일하다가 목재를 자동으로 삽입시키는 부분과 프렛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2018.12.7. 주식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労働安全衛生法第20條(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위반으로 神戸지방검찰청에 송치한 사건이다.

(2) 지붕추락 사망 사건

北大阪労働基準監督署는 근로자가 지상 2미터 이상의 높이의 지붕에서 작업하는 시의 안전조치 미흡으로(본 사건은 2018.9.29. 지상 3미터 지붕에서 태풍근접 상황에서 지붕을 고정시키는 철제 연결 작업 중에 추락한 사건) 주식회사 법인과 대표이사를 2018.12.25. 労働安全衛生法第20條(사업주가 강구할 조치) 위반으로 관할 검찰청으로 송치한 사건이다.

(3) 전도사건 - 산업재해 은폐

京都·福知山労働基準監督署는 2차 하청 구조 하에서 2차 하청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맨션신축공사 현장에서 전도하여 60일간 휴업한 사건에서 2차 하청업체와 1차 하청업체가 원청에 상담하자 산업재해처리는 곤란하다는 말을 듣고 1차 하청업체 가공장에서 일하다가 귀가하던 중에 전도한 것으로 허위보고를 한 것에 대하여, 2019.1.29. 1차 하청업체 대표이사, 원청 현장대리인, 2차 하청업체 및 대표이사를 京都地検福知山支部에 송치한 사건이다.

70) 이하의 사례는 <https://www.rodco.co.jp/column/61794/>에서 몇 개만을 소개한 것임, 이 사이트는 임금채불 등의 노동기준법위반 및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의 사례에 대한 노동기준감독관의 검찰청 송치 사건의 기사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4) 조선소 도크 추락 사망 사건

福岡中央労働基準監督署는 조선소 도크 내에서 2018.2.2. 근로자가 추락사 한 것에 대하여 2019.2.1. 해당 근로자 소속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 현장책임자, 조선소 회사와 현장 책임자를 労働安全衛生法第20條 위반으로 福岡地檢에 송치한 사건이다.

(5) 낙하물에 의한 사망 사건

茨城・鹿嶋労働基準監督署는 2018년 7월 부두에서 배로부터 철강묶음(7개씩 한 묶음) 3개씩을 이동식 크레인으로 들어 올리는 작업 중에 이들 철강 묶음이 낙하하여 그 아래 있던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임, 이에 茨城・鹿嶋労働基準監督署는 2019.2.1. 항만운수회사와 동사의 책임자를 労働安全衛生法第20條 위반으로 水戸地檢土浦支部에 송치한 사건이다.

(6) 가스폭발 사건

兵庫・神戸東労働基準監督署는 2018.11.5. 하청업체 간부가 도로의 깊이(125cm), 길이(259cm), 폭(87cm)을 굴착하여 노후화된 관을 교체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있었고, 그 때에 한 근로자가 가스관에 가스가 통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스벨브를 약간 풀어 놓고 있는 가운데 다른 근로자가 땅속에 이미 사용되지 않고 있던 불필요한 그 관을 전동킥으로 절단하던 중 인화물질이 가스관에 인화하여 폭발하여, 그 주변에 있던 회사 관계자들을 포함하여 중증 화상 등을 입었던 사건이다. 이에 兵庫・神戸東労働基準監督署는 2019.2.25. 労働安全衛生法第20條 위반으로 神戸地檢에 송치한 사건이다.

(7) 추락 사망 사건

長野・中野労働基準監督署는 2018.7. 지상으로부터 10.9 미터 높이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냉각기 수리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 사망한 것에 대하여, 회사가 동 회사 부과장을 労働安全衛生法第21條 위반으로 2019.3.4. 長野地檢에 송치한 사건이다.

(8) 일산화탄소 중독 사망 사건

岐阜労働基準監督署は、일산화탄소중독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서 작업순서를 정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개인사업주를 労働安全衛生法第22條 위반으로 2019.3.15. 岐阜地檢에 송치한 사건이다.

(9) 헬멧 미착용 사망 사건

香川・観音寺労働基準監督署는 2018.11. 거래처 회사부지 내에서 화물차 위에서 종이를 쌓던 중 2단계에서 2.4 미터 밑의 지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하여, 労働安全衛生法第20條 위반으로 2019.4.19. 高松地檢에 송치한 사건이다.

마. 법 준수 캠페인(compliance)과 검찰관의 형사책임추궁 강화

컴플라이언스라고 함은 법령 준수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기업이 법률이나 기업윤리 준수를 한다고 하는 의미로 널리 이해되고 있어, 다른 말로 비즈니스 컴플라이언스라고도 불린다. 기업의 만성적인 장시간연장근로, 연장근로 수당 미지급 등의 법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일부 구성원에 의한 개인정보누출 등에 의한 기업 이미지 추락 등이 사회문제화 되기도 한다.

법 준수 내지 룰 준수라고 하는 컴플라이언스라는 용어는 TV 프로그램 등에서 각종 패널에서도 매우 자주 사용되는 것으로 일종의 일본 사회의 캠페인 대명사이자 법규 준수를 제고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축소 내지 은폐하는 행위를 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의미로, 즉 컴플라이언스 위반이라는 비난을 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기도 한 것이다.

컴플라이언스는 특히 기업의 법령준수라는 의미로 널리 사용되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부정한 경리처리(분식회계, 탈세), 제품에 관한 위장(출하를 위하여 검사 데이터 위조 내지 식품의 원산지 위조 등), 정보관리의 불철저(고객의 개인정보 유실), 부적절한 노무관리(사원의 근로시간 관리를 적절하게 행하지 않는 것) 등으로 설명되고 있다.⁷¹⁾

71) <https://bizhint.jp/keyword/134469>

노동안전위생법 위반에 대한 노동기준감독관의 검찰청 송치사건에 대한 통계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노동기준법 위반과 함께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에 대한 통계 등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실제로 검찰청으로 송치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 등에서 컴플라이언스 캠페인 등의 역할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이전에는 안전책임자 등의 선임 여부 위반에 대한 사건이 많았는데, 오늘날에는 사업주가 강구하여야 할 안전 등의 조치위반 사건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제4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 검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적정성은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문제된다.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범죄의 법정형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선고형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다. 전자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오염물질등배출치사죄를 비교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선고형의 적정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을 검토함으로써 그 답을 구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형의 적정성 검토

가. 환경범죄단속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위반치사죄’의 비교검토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개별 법정형은 입법자가 불법의 정도를 추상적으로 고찰하여 명시해 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범위로 설정되어 있는 법정형의 적정성 여부는 당해 법정형이 헌법상의 기준인 과잉금지원칙 등에 명백하게 위반되는 것이 아닌 한 쉽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유사한 법률간의 법정형 비교

를 통하여 추상적인 형벌범위에 대한 일응의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관련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간의 법정형을 비교해 보아야 한다.

환경관련법률과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조항에서 당해 행위규정의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명시해두고 있다. 각각의 법률은 그 규율형식과 내용에 맞게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조문간의 비교를 통한 법정형의 타당성 분석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러나 규율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각각의 조문상의 법정형 비교가 가능할 수 있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의무위반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이른바 ‘의무위반치사죄’)이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함) 제3조는 오염물질 불법배출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1항에서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 제2항에서는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5조에서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동법 제167조 제2항).

환경범죄단속법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것은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다. 환경범죄

단속법 제3조 제2항에서는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사업주 등이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구성요건간에는 그 성질상 차이가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의 구성요건은 그 기본범죄가 작위범의 형식(....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을 취하고 있는 반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은 (진정)부작위범의 형식(....안전보건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범죄가 작위범의 형식을 띠는 진정부작위범으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의 불법성은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정한 구성요건이 작위에 의한 것이든 진정부작위범의 형식을 취하는 것이든, 입법자가 가벌적 행위로 명시하고 있는 한 모두 형법적 당벌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서 공통적인 점은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모두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로 이루어진 결과적 가중범이라는 점이다. 즉, 기본범죄인 오염물질의 불법배출(환경범죄의 경우)이나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산업안전보건법)은 모두 고의범이다. 이미 대법원도 판시한 바와 같이,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⁷²⁾ 다시 말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미이행죄(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제23조)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72)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⁷³⁾

나. 환경관련법률상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

현행 행정형벌의 가장 일반적인 규정방식은 자유형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다소 경미한 범죄나 행위 상황에 따라 정상참작의 여지가 많은 범죄유형에 대하여는 자유형 외에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특히 벌금형을 단기자유형의 적절한 대체수단으로서의 기능에 적합한 부과형태로서 대부분의 입법례가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형과 벌금을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형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유형과 벌금형 간에 균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환경관련법률에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형벌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경우 그 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⁷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타난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의 유형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외 벌금형만을 규정한 경우 10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구분하고 있다.

73)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74) 대기환경보전법의 경우 17개 사항에 대하여 의무위반, 명령위반, 인증받지 아니한 경우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법정형 유형은 최근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징역형과 벌금형의 조합 방식을 원용하고 있다. 즉, 징역형이 1년 이하이면 그에 비례하는 벌금형은 1천만 원 이하, 징역형이 3년 이하이면 벌금형도 3천만 원 이하 등과 같이 규정하는 방식이다. 이 점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관계는 비교적 잘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에 관한 문제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모두 결과적가중범이라는 점에 주목해보면, 그 법정형이 상이한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물론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은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을 죽게 한 행위뿐만 아니라 다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범죄의 결과인 사망과 상해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점에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사망사건에 국한시켜보면,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 위반사건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위반사건 간에는 법정형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정형 정책으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이 고의의 기본범죄(즉,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즉, 근로자의 사망)로 연결되어 있는 결과적 가중범이고, 이러한 결과적 가중범의 특징이 일반적으로 중한 법정형의 설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의 법정형만으로는 생명이 침해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2항은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치사죄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불이행치사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그 형의 2분의 1까

지 가중하도록 하여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형사처벌의 수위를 강화한다고 하여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검찰의 기소나 법원의 재판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2분의1 가중’ 조항에 따르면이라도 법원이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고자 할 경우 ‘징역 1월 ~ 10년 6월’의 처단형 범위 속에서 구체적 선고형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와 동일한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고, 결국 5년 이내 재범자가 중처벌 조항의 실효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재판실무에서 법원은 기존의 형선고 관례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 및 제재부과 실무에 대한 기존의 태도를 규범적으로 수정하지 않는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양형실무는 현재와 같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형의 적정성 검토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에 대한 형선고의 일반적 경향

그렇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실제 선고형은 위협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을까? 법정형의 중대성이나 중한 선고형 그 자체는 잠재적 행위자로 하여금 범죄로 나오지 않게 하는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다. 그러나 합리성에 반하는 낮은 선고형은 특히 그 수범자가 기업인 경우 중요한 범죄유인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비용과 편익을 합리적으로 구분하는 기업의 일상생활에서 낮은 선고형에 비하여 편익이 크다면 그 편익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선고형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식통계에 나타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태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대부분은 약식명령의 청구(이른바 구약식) 사건이고, 구약식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벌의 대부분은 벌금형이다. 이 점은 환경관련법률 위반사건의 경우도 거의 유사하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으로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들의 경우에도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이나 금고 등 유기자유형을 선고한 예는 매년 5건 이하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의 적정성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

그렇다면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관하여 설정하고 있는 양형기준은 실효적인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⁷⁵⁾부터 개관해보자.

75) 개별 범죄군별 양형기준은 양형위원회 사이트(<http://sc.scourt.go.kr/sc/krsc/main/Main.work>)에서 확인할 수 있다(최종방문: 2019.8.4. 16:46).

<표 2-29>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과실치사	- 8월	6월 - 1년	8월 - 2년
2	업무상과실·중과실치상	6월	4월 - 10월	8월 - 2년
3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4월 - 10월	8월 - 2년	1년 - 3년
4	산업안전보건법위반	4월 - 10월	6월 - 1년6월	10월 - 3년6월

구분		감경요소	가중요소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 유형)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상당금액공탁 ○ 보험가입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 범행 중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양형기준의 적용과정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을 도출하는데 참고 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에 관한 기준을 말한다(법원조직법 제81조의6 제1항). 우리나라에서는 2009. 5. 7. 최초의 양형기준이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양형기준을 신설·수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양형기준에 의하면 구체적 선고형의 산출과정은 ① 범죄유형의 결정, ② 감경, 기본, 가중으로 3분된 권고형량범위의 결정, ③ 선고형의 결정, ④ 형의 집행유예의 여부에 대한 결정 등 크게 4가지 단계를 거치게 된다.⁷⁶⁾ 이를 다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있는 경우에 해당 범죄가 속하는 범죄유형을 결정한다. 당해 범죄사건이 어떠한 범죄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미 양형기준에 유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범죄유형을 결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범죄유형은 ‘과실치사상범죄’의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게 된다.

둘째, 개별 범죄에 상응하는 범죄유형이 결정된 이후에는 각 범죄유형마다 설정되어 있는 감경·기본·가중으로 되어 있는 권고형량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실치사상범죄’의 범죄유형 중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구간은 4월-10월, 기본구간은 6월-1년6월, 가중구간은 10월-3년6월로 설정되어 있다. 이 중에서 어떠한 권고구간을 결정할 것인가가 문제로 되는데 이러한 권고영역을 찾는 방법은 생각보다 어렵다. 양형기준에 의한 최종형량범위의 결정은 각각의 범죄유형마다 설정되어 있는 3가지 권고영역 내지 권고형량범위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이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① 양형인자의 존부 확정 → ② 복수의 특별양형인자의 평가 → ③ 권고형량범위의 특별조정 및 서술식 기준 적용 → ④ 다수범죄의 처리기

76) 양형기준의 적용방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양형위원회, 2018 양형기준, 2018, 613쪽 이하 참조.

준 적용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셋째, 권고형량범위가 정해지면 다시금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한다. 이 경우 일반양형인자는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개별 사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양형요소 중 당해 사건의 양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요소는 양형기준에 제시되지 않은 것이더라도 일반양형인자로 함께 고려할 수 있다.

(3)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의 적정성 검토

현행 양형기준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과실치사상범죄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죄가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전조치의무 또는 제24조 제1항의 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 대하여만 적용된다.⁷⁷⁾ 즉,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 국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양형기준이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에만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현행 양형기준제가 산업재해 사망사건의 예방에 기여하는 정도는 거의 미미할 것이다.

우선 현행 양형기준제는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들 중 법관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선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구약식 사건에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이라도 법관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심한 이상 양형기준상의 지침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공소장에 의하여 공소제기된 사건들 중 매년 5건 이하에 대해서만 징역형이 선고되는 현실에 비추어보면, 양형기준은 무용지물임에 틀림이 없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양형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권고형량구간이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죄보다 낮다는 점이다. 업무상과실치사

77) 양형위원회, 2018 양형기준, 555쪽.

죄의 경우 기본형량구간은 8월 - 2년, 감경할 경우에는 4월 - 10월, 가중할 경우에는 1년 - 3년이다. 이에 반해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기본형량구간은 6월 - 1년 6월, 감경할 경우에는 4월 - 10월, 가중할 경우에는 10월 - 3년 6월에 불과하여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형량구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양형위원회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형량구간을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그것보다 낮게 설정하고 있는 배경은 양형위원회가 양형기준을 설정할 당시 오로지 규범적인 관점에서 형량범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양형실무에 대한 통계분석을 기초로 종전 양형실무의 70% ~ 80%를 반영하여 형량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이다.⁷⁸⁾ 그렇다면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형량범위가 낮다는 것은 기존의 법원의 양형실무에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해온 형량이 그 만큼 낮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는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의 현실에서 매우 경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법원의 양형실무는 양형기준에 의해서도 지지되고 있다. 최근 일련의 산재사고들로 사람의 생명의 존중에 대한 경각심이 더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통하여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양형기준의 차원에서는 기존의 재판실무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규범적 조정의 예는 과거 성범죄의 경우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사와 우려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형위원회가 기존의 재판실무에서 선고되던 선고형을 벗어나 그 권고형량범위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을 들 수 있다.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경우도 그것이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와 직결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의 권고형량범위와 유사하게 유지할 것이 아니라 산재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보다 전향적인 관점에서 권고형량범위의 대폭적인 상향조정이 요구된다.

78) 이진국, 양형의 이론과 실제, 2018, 138쪽.

3. 결론

원래 정부(고용노동부)가 2018년 11월 1일자로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형사처벌 규정에 관해서는 여당과 야당 간에 적지 않은 대립이 있었다. 그러던 중 이른바 ‘김용균 사건’⁷⁹⁾을 계기로 가까스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제재강화 조치를 담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6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특히 그 의미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만 보아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벌규범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위험원이 도사리고 있고, 재판의 실제에서도 안전·보건조치위반 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처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있다. 판례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죄의 구성요건에서 피해자로 되는 ‘근로자’를 사업주와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의 이러한 극도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하여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 보다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길이 매우 넓게 열려있다.

구성요건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서 더 나아가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법정형을 손질함이 없이 누범가중 규정만 신설한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 구조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누범가중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양형실무에서는 여전히 하한으로 선고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현재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하여 선고하는 대부분의 형벌이 벌금형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적용되는 안전·보건조치미이행치사죄의 양형기준이 설자리가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79)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운송설비 점검을 하다가 사고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을 통하여 법위반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왔지만, 실제 법원에서 선고되는 형량은 큰 변화가 없는 현실에 주목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대한 법정형을 계속 높이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서 법원의 양형에 대한 인식 개선이 없으면 결과적인 처벌수준은 변화가 없을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현 시점에서 가장 실효적인 대응방안은 법원의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여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시의 사업주의 형사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식조사의 결과를 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배경 및 목적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이 현재 국민들의 법감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하여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고,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데 본 조사의 1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2. 조사설계

본 조사는 일반국민들의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인식을 조사하고자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설계를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목적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파악 및 의견수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규정과 관련된 사항과 양형기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한 인식조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국민을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업체에 의뢰하여 성별, 지역별, 연령별 비례할당 표본을 추출한 온라인 패널조사방식으로 2019년 8월 16일부터 23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표본은 95% 신뢰수준($\pm 3.1\%$) 표본오차를 가지고 있다.

<표 3-1>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목적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전반적인 인식 파악 및 의견수렴
조사대상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일반국민 1,000명
조사방법	온라인 조사
표본추출	지역/성/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른 비례할당 표본추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p$
조사기간	2019년 8월

아울러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된 이해관계가 대립된 집단을 대상으로 인식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영자(사용주)집단과 노동자(근로자) 집단을 구분하여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집단 조사는 경영자집단 100명과 노동자집단 100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조사결과 총 200부의 조사표본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해집단 대상 조사의 조사설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2> 이해집단 대상 조사설계

구분	경영자(사용주)	노동자(근로자)
조사대상	전국 지역별 경영자단체 임원 (경총, 전경련, 상의, 중기협 등)	전국 지역별 노동단체 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를 원칙, 필요시 FGI 병행	
표본추출	임의표본추출 방식으로 각 단체별 100명	
조사기간	2019년 7월~8월(추후 협의)	

본 조사의 주요 조사항목은 아래의 표와 같다. 주로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에 대한 인식 및 평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도 및 평가’, ‘양형기준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 태도’,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항목으로 하고 있다.

<표 3-3> 주요 조사항목

조사항목	세 부 문 항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	• 근로자의 법령의 준수인식 수준 • 사업주(사용자)의 법령의 준수인식 수준 • 안전보건에 관한 정기적 정보제공 • 산업재해예방방법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에 대한 인식 및 평가	• 처벌규정의 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규제의 인정도 •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평가 • 처벌강화의 필요성 평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식도 및 평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 가중처벌 및 수감명령 병과 적정성 평가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의 성과에 대한 인식
양형기준제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 태도	•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의 인지여부 • 양형기준의 신뢰성 •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 산안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및 적정성 평가 • 산안법 양형기준 설정의 적정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 상황별 양형태도 • 집행유예 조건에 대한 인식 • 가중·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적 특성	• 성별, 연령, 거주지 • 업종 (제조업/건설업/기타) • 상시근로자수, 공사금액 • 최종학력/직책/노동조합 설치여부 • 안전보건관리업무 책임자

제2절 조사대상자의 특성

1. 일반국민

일반국민들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층화표집을 통하여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자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체적으로 성별은 남성 50.6%, 여성 49.4%였고, 연령별로는 50대가 23.1%로 가장 많았고, 40대(22.2%), 20대(19.5%), 30대(19.0%), 60대 이상(16.2%)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은 경기·인천이 전체의 31.3%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재학이 49.1%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23.4%), 전문대학 졸업 또는 재학(17.9%),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9.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전체의 31.3% 가장 많았고, 부산·대구·울산·경상(25.1%), 서울(19.5%), 대전·충청(10.5%), 광주·전라(9.5%), 제주·강원(4.1%)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4>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506	50.6%
	여자	494	49.4%
연령	20대*	195	19.5%
	30대	190	19.0%
	40대	222	22.2%
	50대	231	23.1%
	60대 이상	162	16.2%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최종학력	고졸 이하	234	23.4%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17.9%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49.1%
	대학원 졸업/재학	96	9.6%
권역	서울	195	19.5%
	경기/인천	313	31.3%
	대전/충청	105	10.5%
	광주/전라	95	9.5%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25.1%
	제주/강원	41	4.1%

조사대상자의 업무상 특성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에 해당하는 군인(4), 주부(153), 학생(70), 기타(47)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을 분석대상으로 고려하였다. 우선, 직업별로는 사무종사자가 전체의 2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서비스 종사자(12.2%)로 높게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는 임금근로자(피고용자)가 53.6%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 나타났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는 사업주는 6.7%로 나타났다.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되는 직업에 종사하는 조사대상자 중에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4%에 불과하였고, 56.1%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5> 조사대상자의 업무상 특성(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직업*	관리자	78	7.8%
	전문가	88	8.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3.9%
	사무 종사자	258	25.8%
	서비스 종사자	122	12.2%
	판매 종사자	39	3.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1.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2.5%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6%
	단순노무 종사자	60	6.0%

※ 산업안전보건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업에 해당하는 군인(4), 주부(153), 학생(70), 기타(47) 제외

업종별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조업(15.8%), 건설업(6.9%), 서비스업(24.6%)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52.7%)을 구분하여 조사하였으며,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업종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매출액의 경우 120억 미만이 전체의 64.5%로 가장 많았고, 120억에서 500억 미만(17.5%), 1,000억 이상(11.6%), 500억에서 1,000억 미만(6.3%) 순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을 제외하고 조사하였으며, 50인 미만이 54.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인에서 99인(13.1%), 100인에서 299인(11.9%)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6> 조사대상자의 업종별 특성(일반국민)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비율(%)
업종* (n=465)	제조업	158	15.8%
	건설업	69	6.9%
	서비스업	246	24.6%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305	64.5%
	120~500억 미만	83	17.5%
	500~1,000억 미만	30	6.3%
	1,000억 이상	55	11.6%
상시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8	54.0%
	50~99인	53	13.1%
	100~299인	48	11.9%
	300~499인	24	5.9%
	500~999인	26	6.4%
	1,000인 이상	35	8.7%

※ 업종에서 해당 없음(527)이 우선 제외,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49)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해 산출

2. 경영자(사업주) 및 근로자

경영자 및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자 집단의 성별은 남성 78.0%, 여성 22.0%였고, 연령별로는 30대가 34.0%로 가장 많았고, 40대(26.0%), 50대(20.0%), 20대(15.0%), 60대 이상(5.0%)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재학이 50.0%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학 졸업 또는 재학(31.0%), 고졸 이하(13.0%),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6.0%) 순이었다. 다음으로 노동자 집단의 경우에는 성별이 남성 86.7%, 여성 13.3%였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3.6%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26.5%) 동일하였으며, 20대(9.7%), 60대 이상(3.5%)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졸 이하가 39.80%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 졸업 또는 재학(34.5%), 전문대학 졸업 또는 재학(19.5%), 대학원 졸업 또는 재학(5.3%)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7>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경영자&노동자)

단위: 명/%

구분		경영자 (N=100)		노동자 (N=113)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성별	남자	78	78.0%	98	86.7%
	여자	22	22.0%	15	13.3%
연령	20대*	15	15.0%	11	9.7%
	30대	34	34.0%	30	26.5%
	40대	26	26.0%	38	33.6%
	50대	20	20.0%	30	26.5%
	60대 이상	5	5.0%	4	3.5%
최종학력	고졸 이하	13	13.0%	45	39.8%
	전문대학 졸업/재학	31	31.0%	22	19.5%
	4년제 대학 졸업/재학	50	50.0%	39	34.5%
	대학원 졸업/재학	6	6.0%	6	5.3%

이해대립 집단의 업무상 특성으로 직책, 노동조합 조직여부, 업종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경영자 집단의 직책은 총무 또는 인사노무담당자가 22.0%로 가장 많았고, 사업주와 임원이 19.0%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작업부장(18.0%), 안전보건관리책임자(11.0%)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경우 노조임원이 30.1%로 많았고, 작업부장(12.4%), 산안부장(5.3%) 순으로 조사되었다. 그 외 임금근로자의 경우 직원, 사원 등의 기타 52.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영자집단의 경우 21.0%, 노동자집단은 60.2%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영자 55.0%, 노동자 25.7%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경영자(50.0%), 노동자(54.9%)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경영자 단체의 경우 건설업(29.0%), 서비스업(18.0%) 순이었고, 노동자집단은 서비스업(33.6%), 건설업(4.4%) 순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은 업종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매출액의 경우 경영자(54.4%), 노동자(43.8%)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경영자 단체의 경우 120억에서 500억 미만(21.1%), 1,000억 이상(18.9%), 500억에서 1,000억 미만(5.6%) 순으로, 노동자집단은 1,000억 이상(40.2%), 500억에서 1,000억 미만(10.3%), 120억에서 500억 미만(6.2%)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상시근로자수는 50인 미만이 경영자(52.7%), 노동자(38.4%) 모두에서 가장 많았고, 경영자 단체의 경우 100인에서 299인(27.5%), 50인에서 99인(11.0%)로 많았고, 노동자집단은 100인에서 299인(27.7%), 300인에서 499인(10.7%)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3-8> 조사대상자의 업무상 특성(경영자&근로자)

단위: 명/%

구분		경영자 (N=100)		노동자 (N=113)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직책	사업주	19	19.0%	0	0.0%
	임원	19	19.0%	0	0.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1	11.0%	0	0.0%
	총무 또는 인사노무담당자	22	22.0%	0	0.0%
	총괄책임자	8	8.0%	0	0.0%
	노조임원	0	0.0%	34	30.1%
	산안부장	3	3.0%	6	5.3%
	작업부장	18	18.0%	14	12.4%
	기타	0	0.0%	59	52.2%
(사업장)노동조합 조직 여부	그렇다	21	21.0%	68	60.2%
	그렇지 않다	55	55.0%	29	25.7%
	해당 없음	24	24.0%	16	14.2%
업종*	제조업	50	50.0%	62	54.9%
	건설업	29	29.0%	5	4.4%
	서비스업	18	18.0%	38	33.6%
매출액	120억 미만	49	54.4%	42	43.3%
	120~500억 미만	19	21.1%	6	6.2%
	500~1,000억 미만	5	5.6%	10	10.3%
	1,000억 이상	17	18.9%	39	40.2%
상시근로자수** (경영자 N=91, 노동자 N=112)	50인 미만	48	52.7%	43	38.4%
	50~99인	10	11.0%	6	5.4%
	100~299인	25	27.5%	31	27.7%
	300~499인	4	4.4%	12	10.7%
	500~999인	0	0.0%	7	6.3%
	1,000인 이상	4	4.4%	13	11.6%

* 업종에서 해당 없음(경영자 3, 노동자 8)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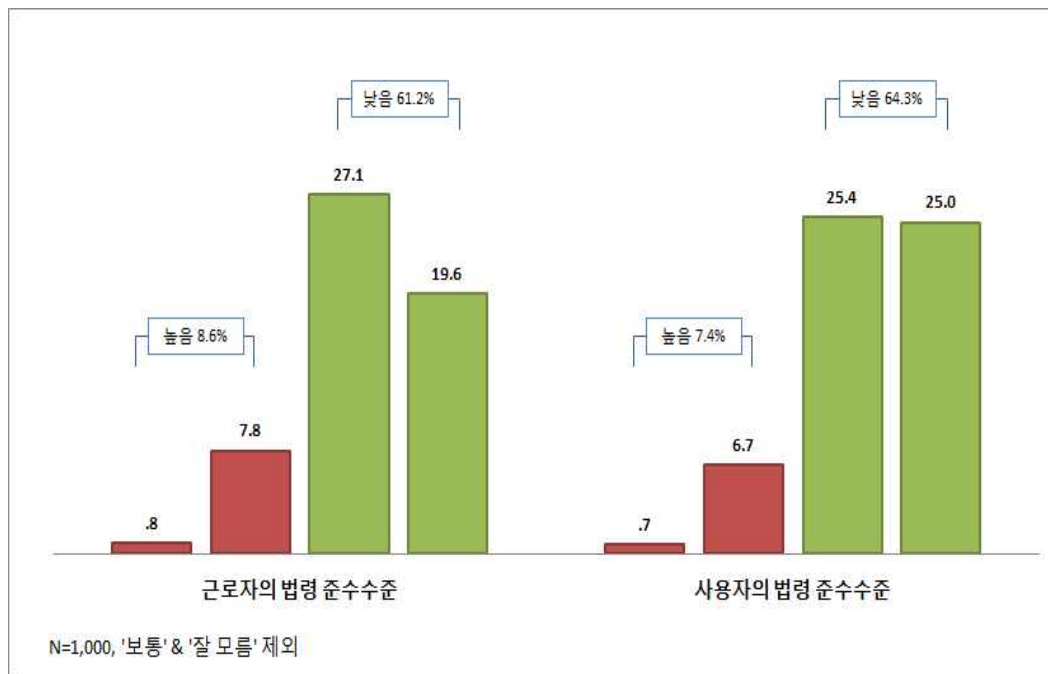
** 무응답 제외

제3절 일반국민들에의 인식도 조사결과

1.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가.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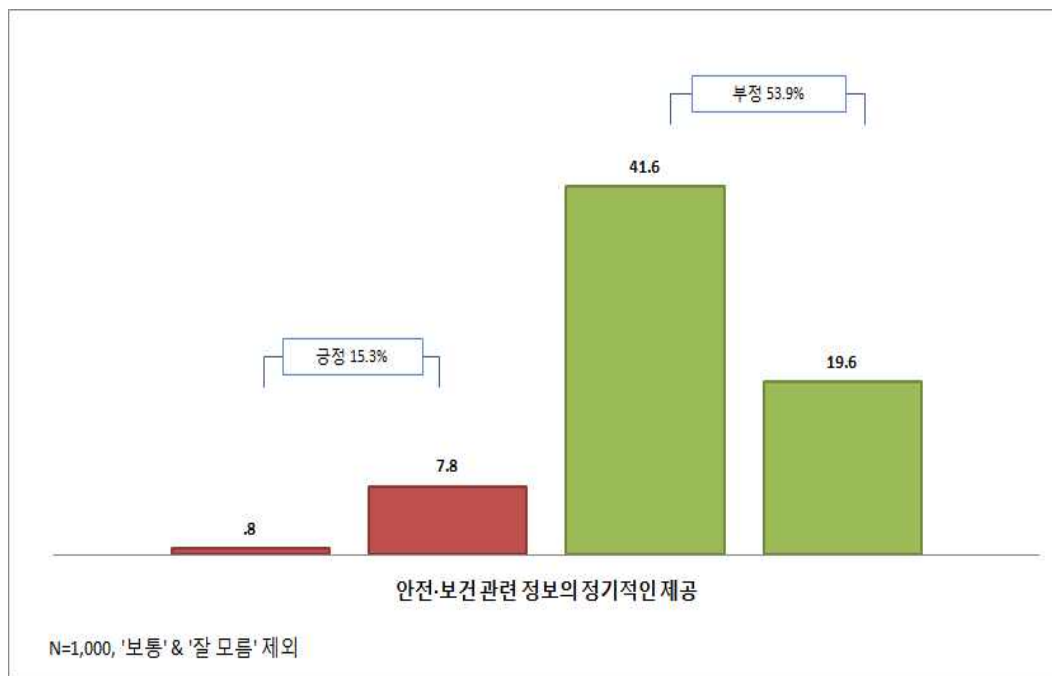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의 60% 이상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였으며, 근로자의 법령준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8.6%로 사업주의 법령준수 수준에 비하여 1.2%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업주의 법령준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응답이 25.0%로 나타나 사실상 일반국민들은 근로자에 비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준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림 3-1] 근로자 및 사업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

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제공 수준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들의 53.9%가 “그렇지 않다”고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에 대해 부정적으로 응답한 반면, 15.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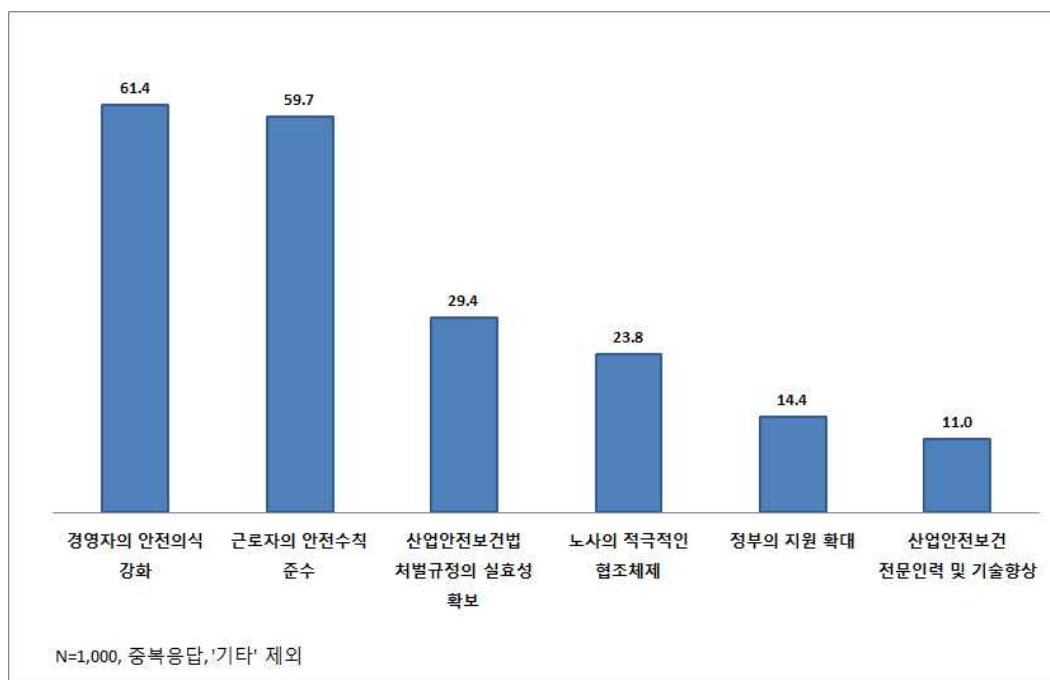


[그림 3-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일반국민)

다.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일반국민들은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61.4%)’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59.7%)’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29.4%)’와 ‘산업안전 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11.0%)’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종사상 지위에 있어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또

는 사업주들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62.7%)’를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임금근로자(피고용자)들은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63.1%)’라고 대조적인 응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관련하여 임금근로자(피고용자)들의 응답(31.2%)이 다른 종사상 지위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부록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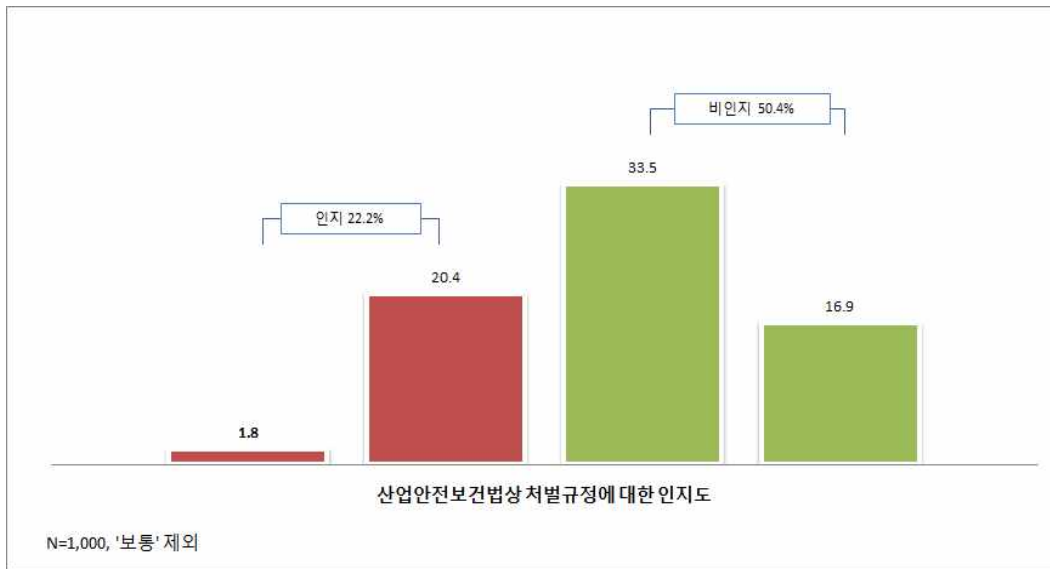


[그림 3-3]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복응답)

2.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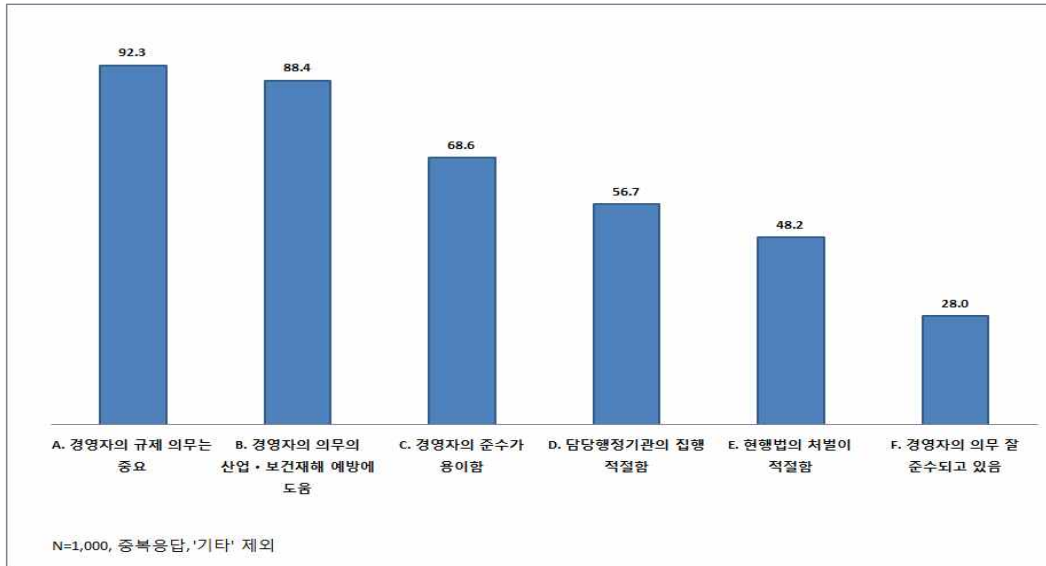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을 ‘모르고 있다’는 응답(50.4%)이 ‘알고 있다’는 응답(22.2%)에 비하여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나. 산업안전·보건 규제 인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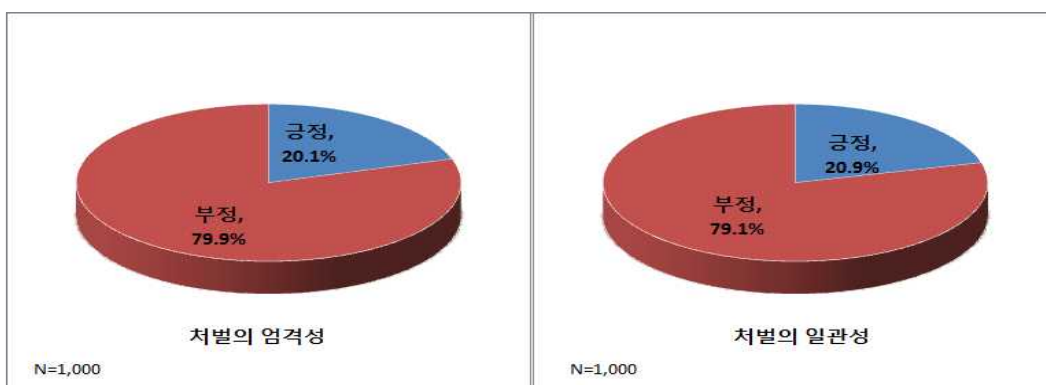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인정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거나 취지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각각 92.3%와 88.4%로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벌칙부와 내용이 적절하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각각 28.0%와 48.2%로 동의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5]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일반국민)

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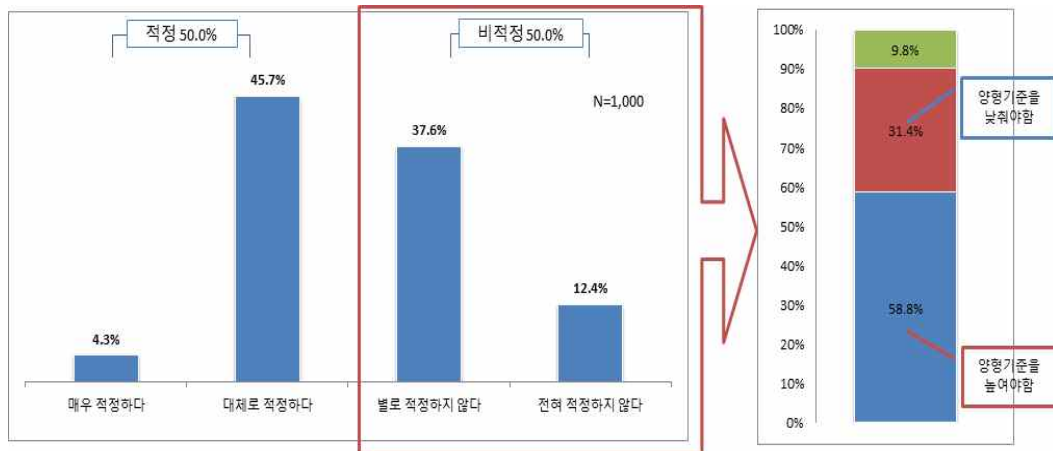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처벌의 공정성도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형집행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형벌이 엄격하게 적용되는가’에 동의하는 비율은 20.1%였고, ‘형벌의 일관성 있게 적용되는가’의 경우 20.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의 엄격성 및 일관성 인식(일반국민)

라.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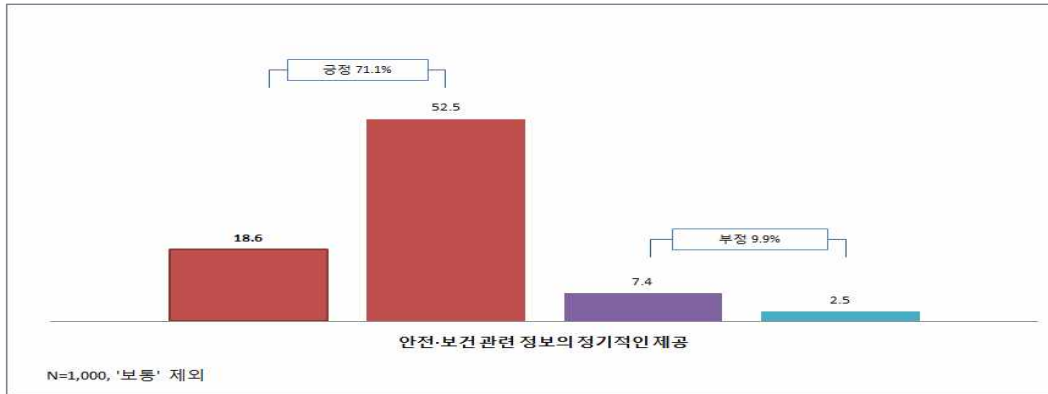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처벌규정이 적정하다는 응답과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0.0%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또한 현행 양형기준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일반국민들 중에서 58.8%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는 한편 31.4%(전체의 2.4%)는 양형기준을 낮추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7] 현행 산업안전기본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마. 처벌강화의 필요성

일반국민의 71.1%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체의 산업재해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정적인 인식은 9.9%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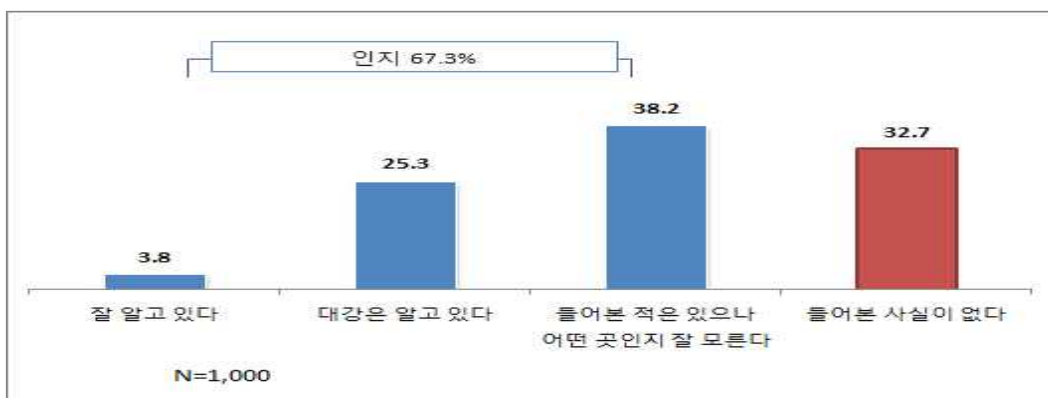


[그림 3-8]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 및 양형태도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일반국민들의 65% 이상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8%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강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비율은 각각 25.3%와 38.2%로 조사되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대다수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9]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일반국민)

나. 가중처벌의 적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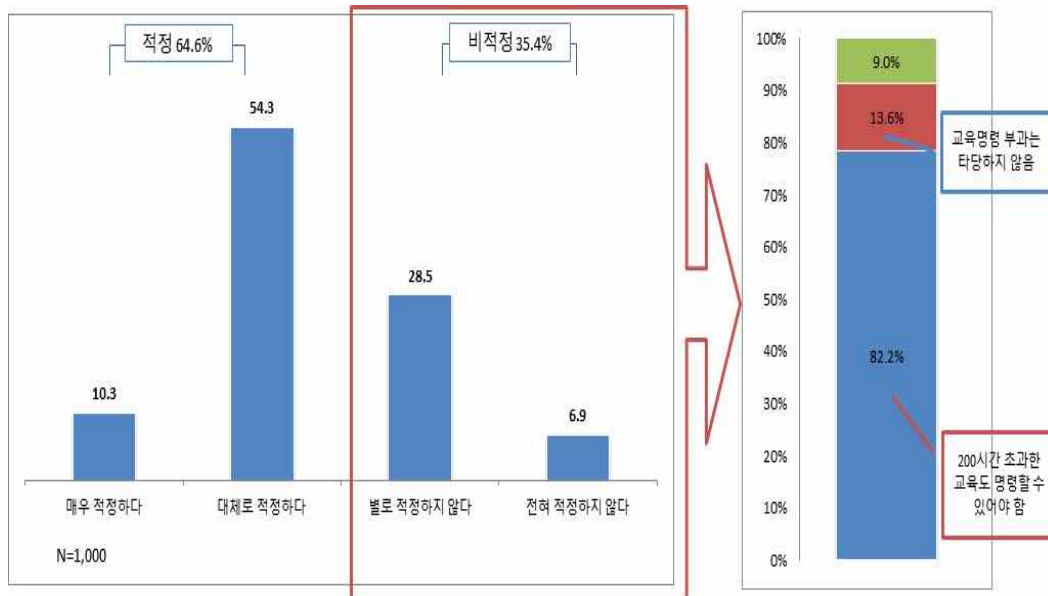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62.9%가 가중처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가중처벌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371명을 기준으로 87.9%는 기준(형의 2분의1)보다 더 가중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9.7%가 2분의 1보다 낮추는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0]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다.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선고는 경우에 그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교육명령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의 62.9%가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명령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354명을 기준으로 82.2%는 200시간을 초과하는 교육명령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13.6%(전체의 4.8%)가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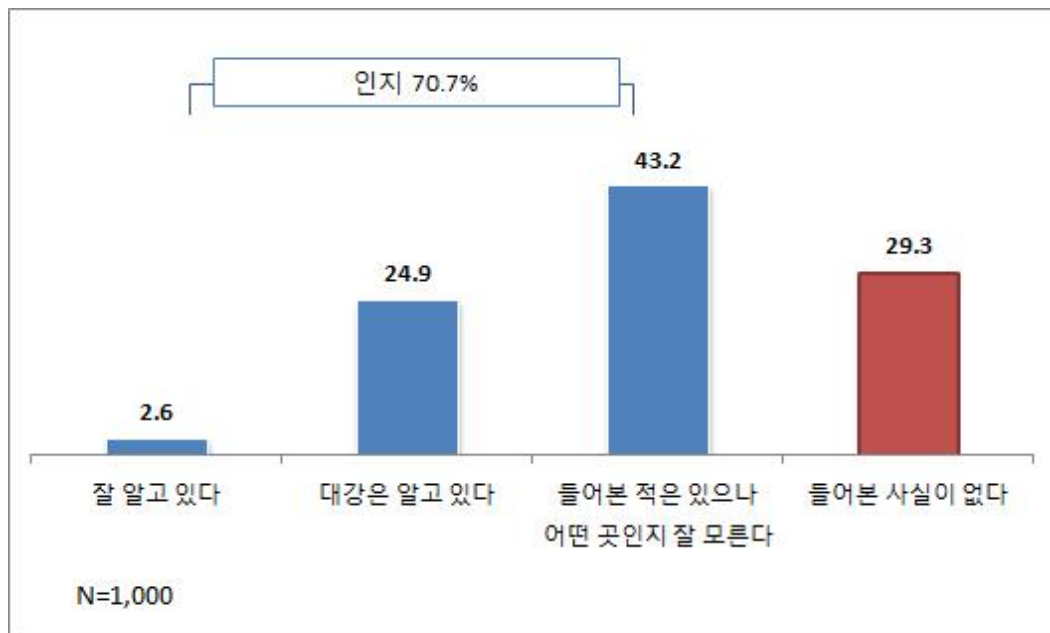


[그림 3-11]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4.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가.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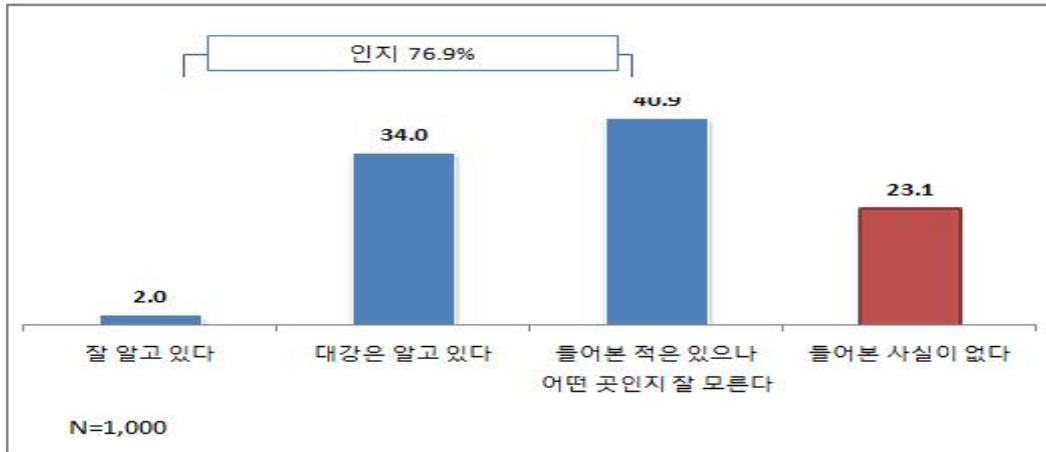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의 70% 이상이 양형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6%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강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는 비율은 각각 24.9%와 43.2%로 조사되어 양형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대다수가 양형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나.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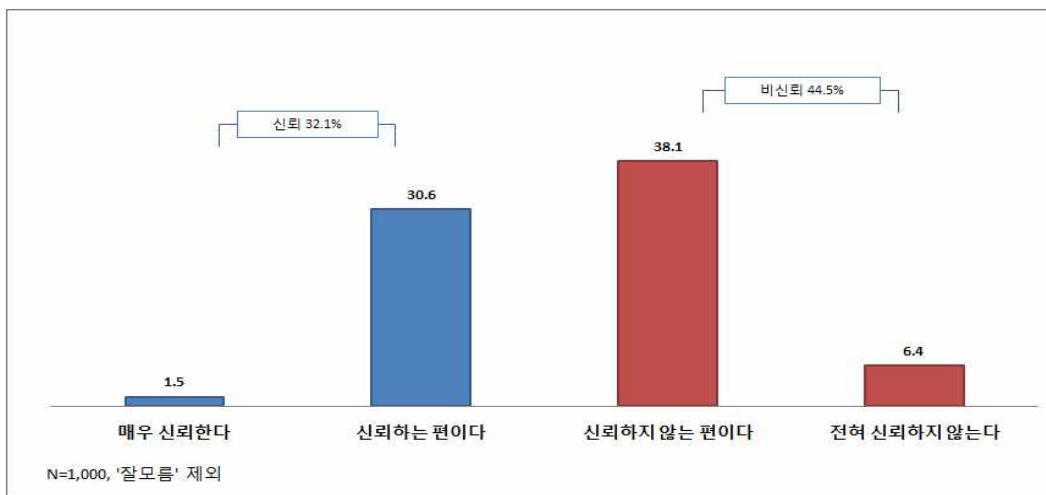
일반국민들의 양형기준제 인지도는 76.9%로 나타났으며, 23.1%는 양형기준제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3]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다. 양형기준의 신뢰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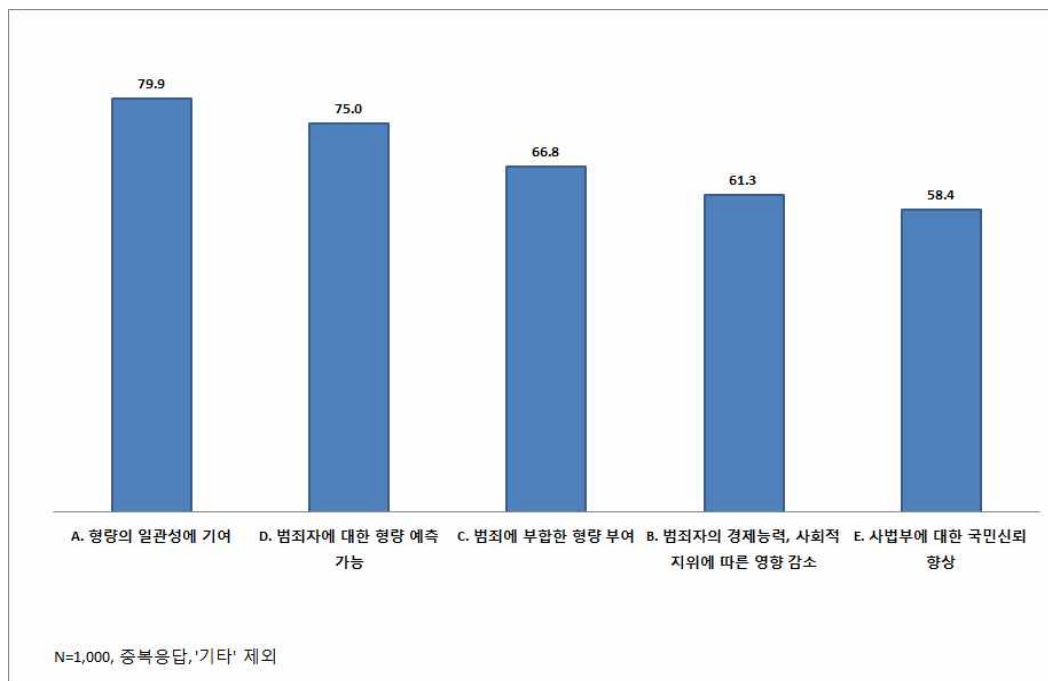
양형기준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의 32.1%가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신뢰할 수 있다고 응답하였고, 44.5%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형기준제에 대한 신뢰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38.0%)이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33.4%)에 비하여 신뢰도가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4]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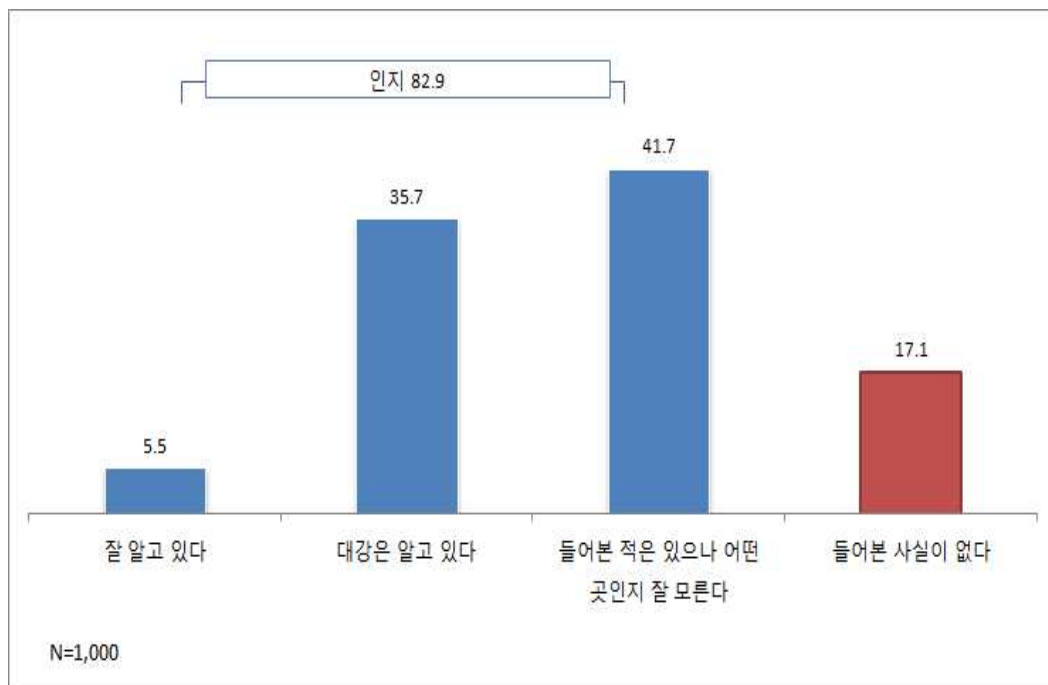
라.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식

양형기준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일반 국민들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와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예측 가능하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은 각각 79.9%와 75.0%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범죄자의 경제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부당한 영향이 감소’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도 각각 61.3%와 58.4%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한편 ‘범죄행위에 부합하는 형량 부과’에 동의하는 비율은 66.8%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일반국민들은 양형기준제를 통하여 범죄자에게 일관성 있고, 죄에 부합하면서 예측 가능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15]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인식(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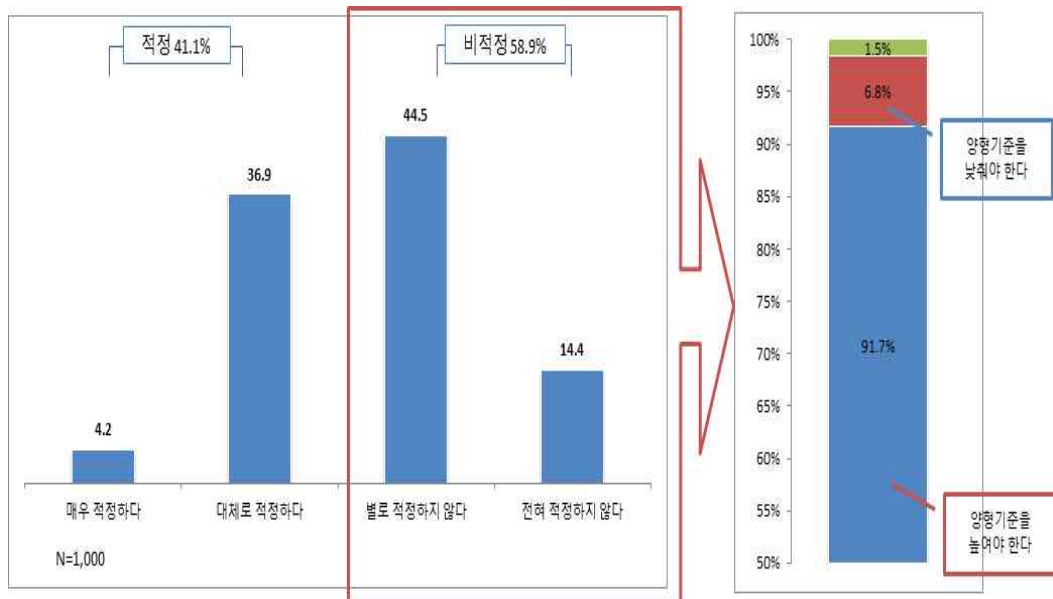
마.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의 인지여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고할 양형기준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들의 82.9%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강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비율은 각각 36.5%와 41.0%로 조사되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는 참고할 양형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일반국민들의 대다수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징역형의 양형기준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바.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다른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양형기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41.1%로 나타났고,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8.9%로 조사되었다.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일반국민 589명을 기준으로 34.0%는 양형기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3.2%만 양형기준을 낮추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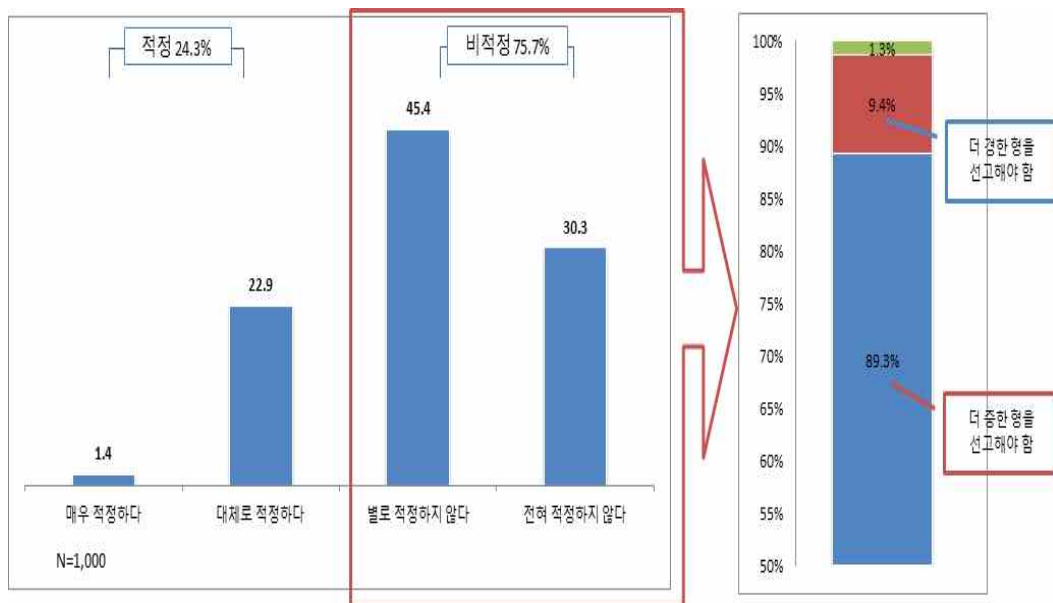
[그림 3-17]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양형 인식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의 처벌결과를 아래와 같은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양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일반국민들의 24.3%가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양형이 적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벌금

700만원을 부과한 양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757명을 기준으로 33.4%는 더 중한 형을 부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 반면, 3.3%가 더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A는 W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 A는 2017년 5월 9일 09:00경 W개발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W개발 소속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실려 있는 폐합성수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던 B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B를 중증 뇌손상 및 경추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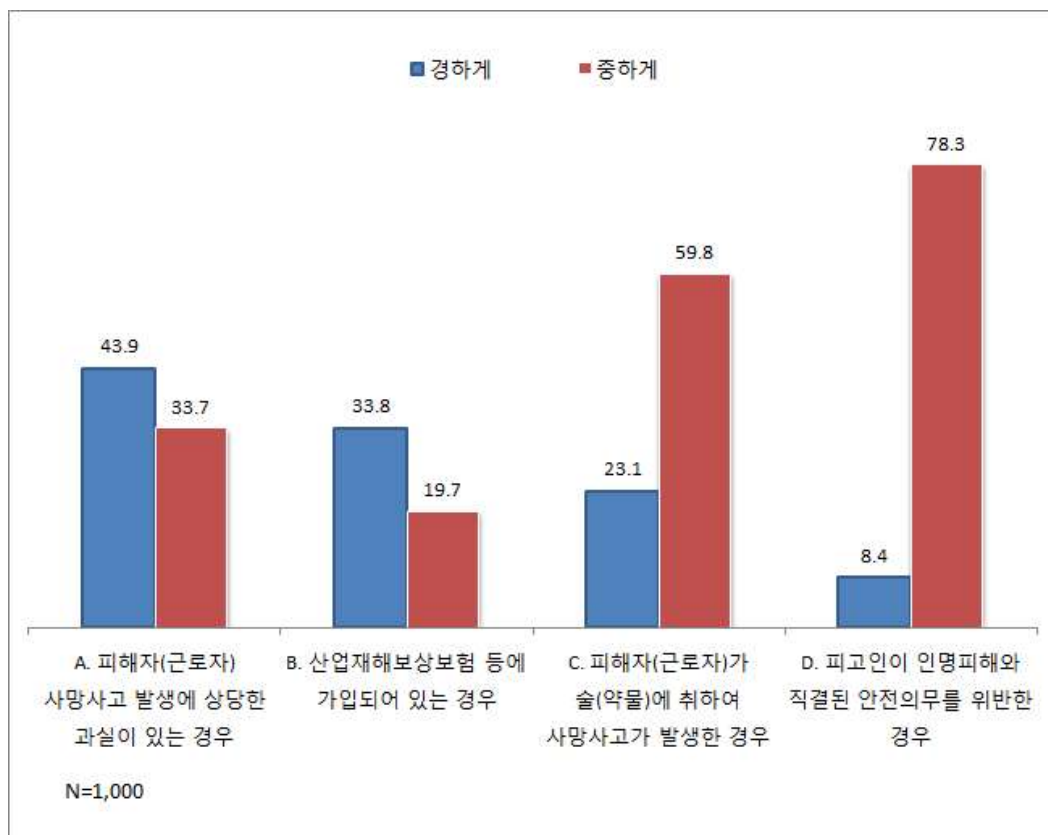


[그림 3-18] 사망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5.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일반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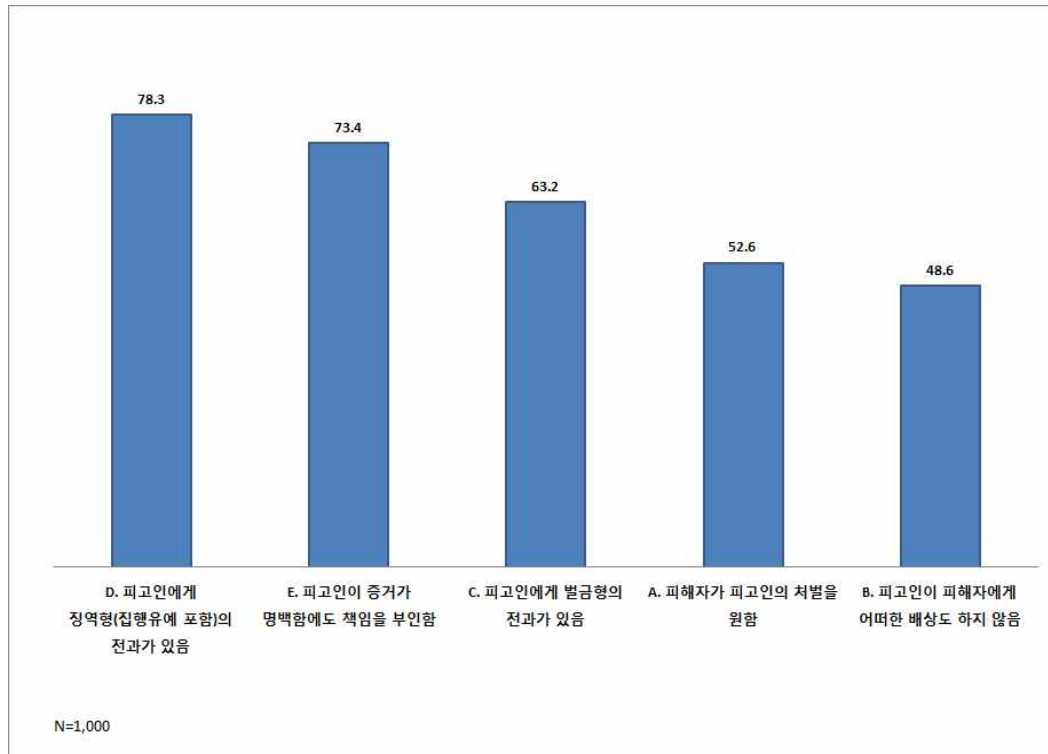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가중감경 요인과 관련하여 일반국민들은 피해자에게도 사망 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경하게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근로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양형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19]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나.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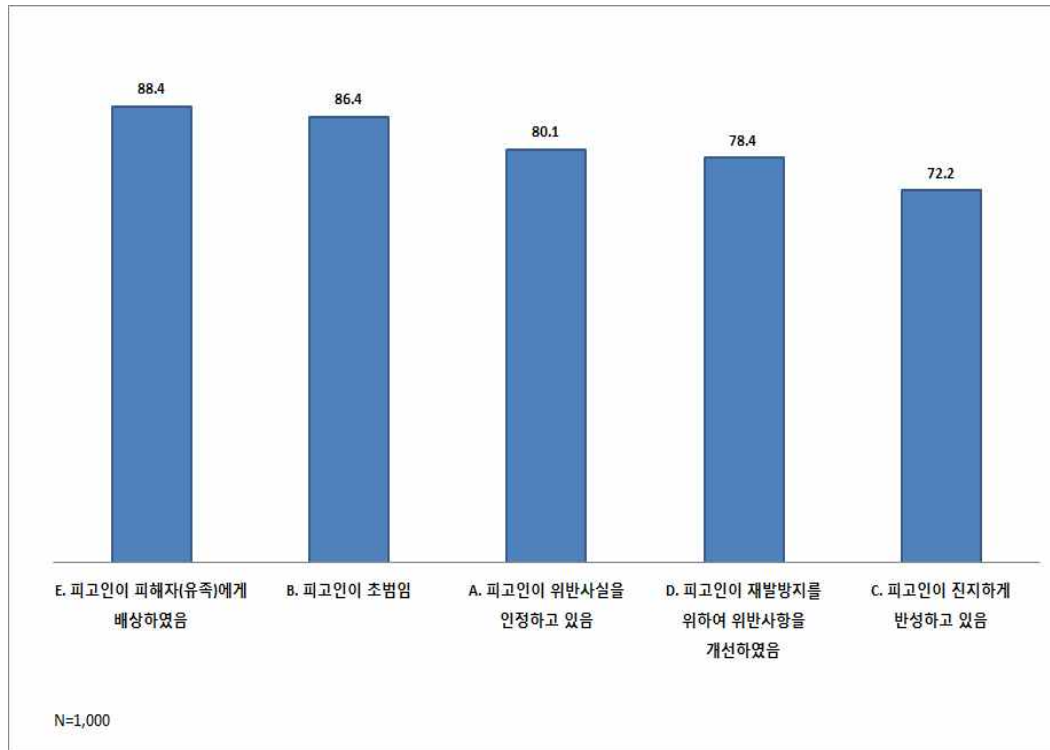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모든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의 전과가 있음(78.3%)’과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인함(73.4%)’,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63.2%)’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48.6%)’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52.6%)’은 다른 가중 양형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0]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다. 산업안전보건법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모든 감경 양형인자에 대하여 70~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하였음(88.4%)’과 ‘피고인이 초범임(86.4%)’, 그리고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80.1%)’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72.2%)’과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78.4%)’은 다른 감경 양형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1]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라.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유예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유예 인자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선 ‘⑥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 51.3%, 부정: 17.6%), ‘⑧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긍정: 50.4%, 부정: 18.8%), ‘⑤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긍정: 47.5%, 부정: 27.6%), ‘⑱진지한 반성’(긍정: 46.1%, 부정: 21.1%)의 경우 46.1%에서 51.3%의 응답자가 집행유예 인자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⑩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 37.9%, 부정: 25.3%), ‘⑫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긍정: 35.4%, 부정: 25.6%), ‘⑦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 33.1%, 부정: 20.4%), ‘⑲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긍정: 32.3%, 부정: 21.1%), ‘⑫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긍정: 30.9%, 부정: 25.6%), ‘⑬보험 가입’(긍정: 24.6%, 부정: 23.1%)의 경우에는 긍정이 부정적인 인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④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긍정: 37.8%, 부정: 39.8%), ‘⑰사회적 유대관계 분명’(긍정: 19.8%, 부정: 34.8%), ‘⑳피고인이 고령’(긍정: 23.5%, 부정: 28.8%), ‘㉔상당 금액 공탁’(긍정: 26.6%, 부정: 30.1%)의 경우에는 부정이 긍정적인 인식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한편, ‘⑯진지한 반성 없음’(긍정: 10.4%, 부정: 79.7%), ‘⑫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긍정: 11.2%, 부정: 78.9%), ‘⑮피해 회복 노력 없음’(긍정: 10.5%, 부정: 78.9%), ‘⑪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긍정: 11.3%, 부정: 76.1%), ‘③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긍정: 10.7%, 부정: 75.6%), ‘⑨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긍정: 10.7%, 부정: 71.6%), ‘①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긍정: 10.5%, 부정: 71.4%), ‘⑭약물중독, 알코올중독’(긍정: 12.2%, 부정: 71.2%), ‘②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긍정: 13.2%, 부정: 66.5%), ‘⑬사회적 유대관계 결여’(긍정: 9.2%, 부정: 58.4%)의 경우 66.5%에서 79.7%의 응답자가 집행유예 인자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3-9> 집행유예 인자에 대한 인식

N=1,000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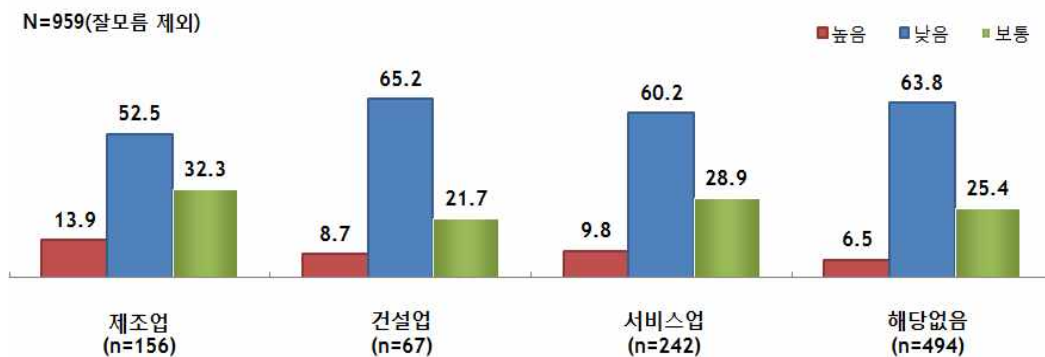
구 분	매우 부정	약간 부정	상관 없음	약간 긍정	매우 긍정	부정	긍정	상관 없음
1)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9.6	31.8	18.1	7.6	2.9	71.4	10.5	18.1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7.6	38.9	20.3	11.0	2.2	66.5	13.2	20.3
3)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47.6	28.0	13.7	7.3	3.4	75.6	10.7	13.7
4)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7.4	22.3	22.5	32.4	5.4	39.7	37.8	22.5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8.8	18.8	24.9	42.2	5.3	27.6	47.5	24.9
6)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	12.6	31.1	37.5	13.8	17.6	51.3	31.1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6.9	13.5	46.5	28.1	5.0	20.4	33.1	46.5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5.6	13.2	30.8	40.8	9.6	18.8	50.4	30.8
9)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5.8	35.8	17.7	7.7	3.0	71.6	10.7	17.7
10)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8.1	17.2	36.8	31.1	6.8	25.3	37.9	36.8
1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8.7	27.4	12.6	7.5	3.8	76.1	11.3	12.6
1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64.7	14.2	9.9	6.6	4.6	78.9	11.2	9.9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7.4	31.0	32.4	6.9	2.3	58.4	9.2	32.4
1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50.5	20.7	16.6	8.0	4.2	71.2	12.2	16.6
15) 피해 회복 노력 없음	58.5	20.4	10.6	6.5	4.0	78.9	10.5	10.6
16) 진지한 반성 없음	61.9	17.8	9.9	6.4	4.0	79.7	10.4	9.9
17)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5.7	19.1	45.4	17.0	2.8	34.8	19.8	45.4
18) 진지한 반성	6.3	14.8	32.8	37.8	8.3	21.1	46.1	32.8
19)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8.1	13.0	46.6	27.1	5.2	21.1	32.3	46.6
20) 피고인이 고령	11.2	17.6	47.7	19.4	4.1	28.8	23.5	47.7
2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0.1	15.5	43.5	24.4	6.5	25.6	30.9	43.5
2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9.1	16.5	39.0	29.7	5.7	25.6	35.4	39.0
23) 보험 가입	8.1	15.0	52.3	20.9	3.7	23.1	24.6	52.3
24) 상당 금액 공탁	12.1	18.0	43.3	22.6	4.0	30.1	26.6	43.3

제4절 업종별 인식비교

1.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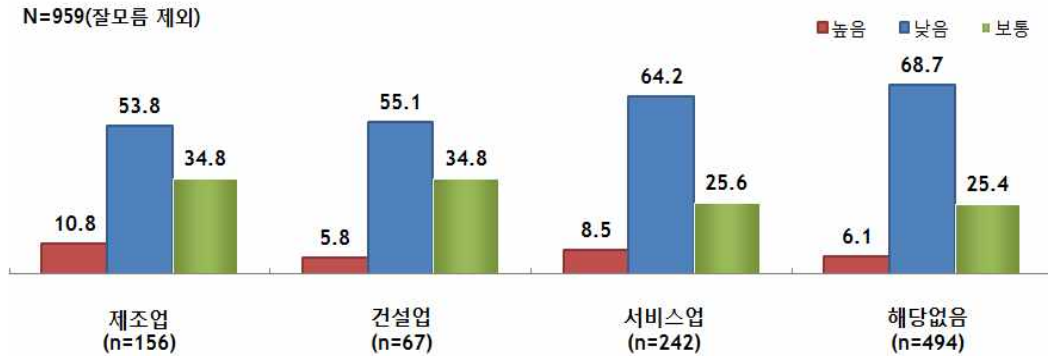
가.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 법령 준수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3.9%로 서비스업(9.8%)과 건설업(8.7%), 해당없음(6.5%)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업종에 비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2] 업종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 (일반국민)

마찬가지로 업종별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련 법령 준수수준도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10.8%로 서비스업(8.5%)과 건설업(5.8%), 해당없음(6.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업종에 비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이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3] 업종별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
(일반국민)

한편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업종에서 근로자의 법령준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이 사업주의 법령준수 수준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제조업 1.2%p, 건설업 3.1%p, 서비스업 1.3%p).

<표 3-10> 업종별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959명(잘 모름 제외),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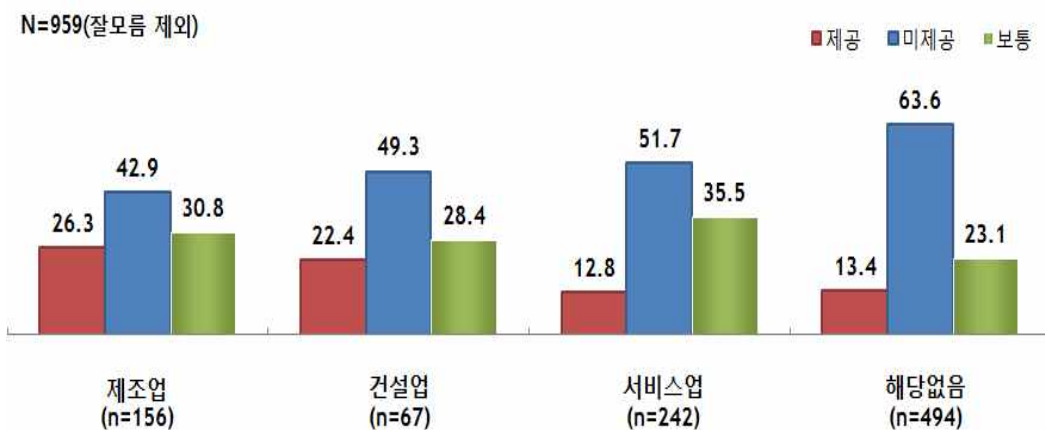
구분		근로자 준수수준			통계값	경영자 준수수준			통계값
		높음	낮음	보통		높음	낮음	보통	
전체		8.6	61.2	27.1		7.4	64.3	25.4	
업종	제조업	13.9	52.5	32.3	13.916* (df=6)	10.8	53.8	34.8	20.688** (df=6)
	건설업	8.7	65.2	21.7		5.8	55.1	34.8	
	서비스업	9.8	60.2	28.9		8.5	64.2	25.6	
	해당없음	6.5	63.8	25.4		6.1	68.7	21.3	

* p<.05, ** p<.01/ (기타 및 잘 모름 제외)

한편 제조업은 근로자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준수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가량 이상으로 응답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밖에 업종은 60% 이상이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준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건설업과 서비스업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준수를 강조하고 있는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업종들과 차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제공 수준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26.3%로 서비스업(12.8%)과 건설업(22.4%)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업종에 비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4] 업종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일반국민)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8%로 제조·건설업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었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13.4%)과 유사한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3-11> 업종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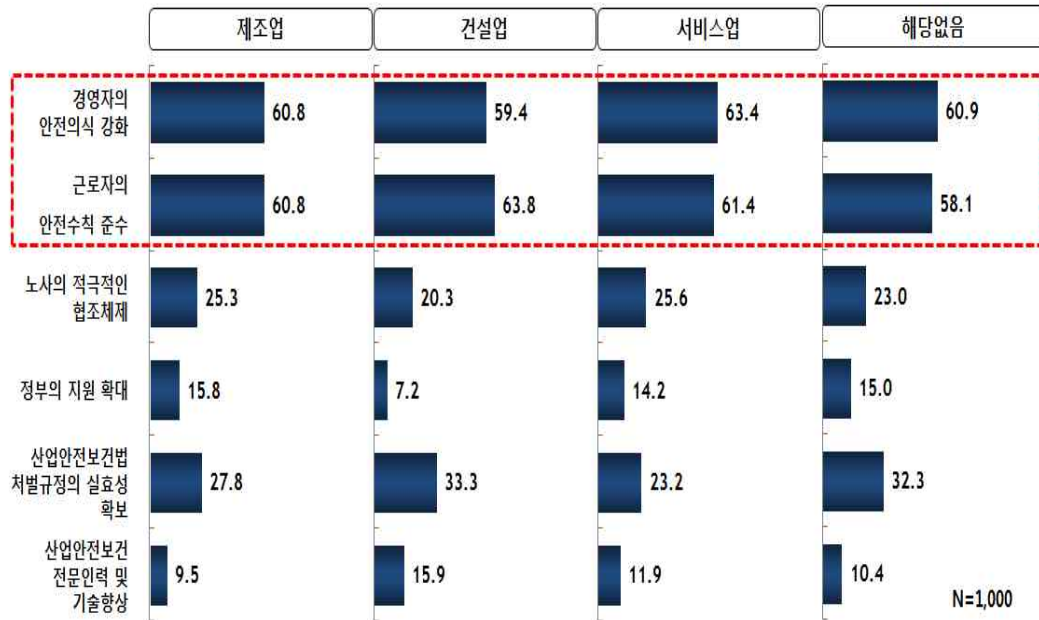
N=959명(잘 모름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제공	미제공	보통	통계값
전체		959	16.0	56.2	27.8	
업종	제조업	156	26.3	42.9	30.8	36.517*** (df=6)
	건설업	67	22.4	49.3	28.4	
	서비스업	242	12.8	51.7	35.5	
	해당 없음	494	13.4	63.6	23.1	

*** p<.001 (기타 및 잘 모름 제외)

다.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업종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제조업 60.8%, 건설업 59.4%, 서비스업 63.4%)와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제조업 60.8%, 건설업 63.8%, 서비스업 61.4%)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산업안전 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제조업 9.5%, 건설업 15.9%, 서비스업 11.9%)과 ‘정부의 지원확대’(제조업 15.8%, 건설업 33.3%, 서비스업 23.2%)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제조업 27.8%, 건설업 33.3%, 서비스업 23.2%)도 20% 이상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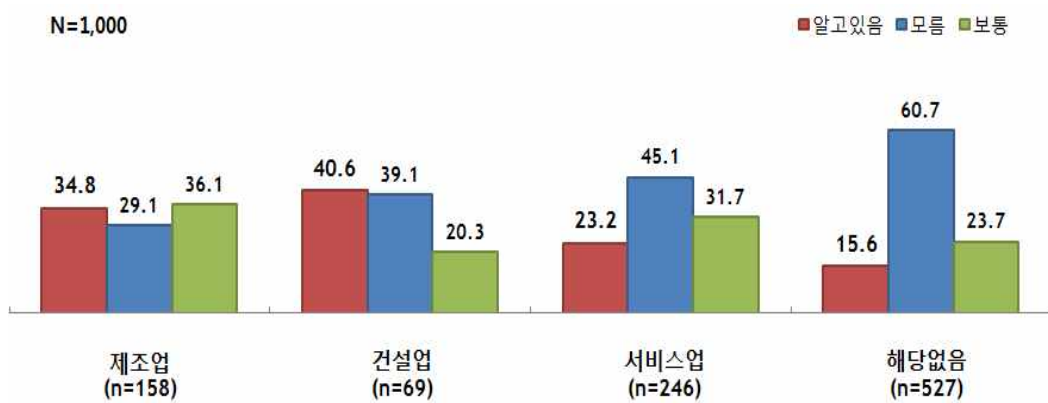
[그림 3-25] 업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복응답)

2.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23.2%)이 제조업(34.8%)과 건설업(40.6%)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 < .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을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45.1%로 제조·건설업에 비하여 비인지 수준 높았으며,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처벌규정을 모른다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60.7%)과 15.6%p 차이로 분석되었다. 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해 제조·건설업을 제외한 업무에 종사하는 국민들에 비하여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제조·건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의 인지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6]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표 3-1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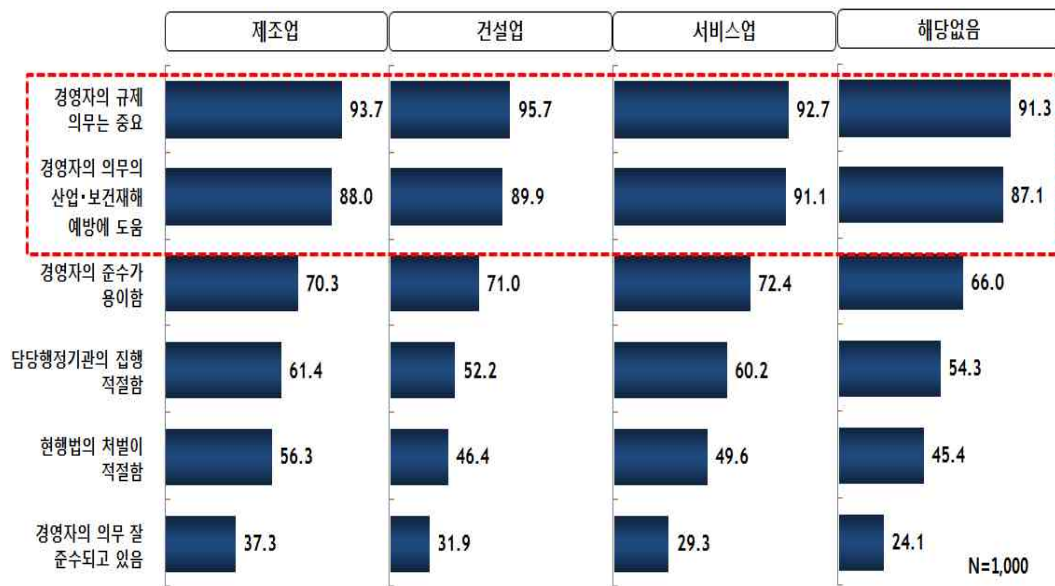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알고있음	모름	보통	통계값
전체		1,000	22.2	50.4	27.4	
업종	제조업	158	34.8	29.1	36.1	70.715*** (df=6)
	건설업	69	40.6	39.1	20.3	
	서비스업	246	23.2	45.1	31.7	
	해당없음	527	15.6	60.7	23.7	

*** p<.001

나. 산업안전·보건 규제 인정도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인정과 관련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제조업 93.7%, 건설업 95.7%, 서비스업 92.7%, 해당없음 91.3%)하다는 의견은 90% 이상의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산업·보건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나 취지에 도움이 된다’(제조업 88.0%, 건설업 89.9%, 서비스업 91.1%, 해당없음 87.1%)는 의견도 90% 가까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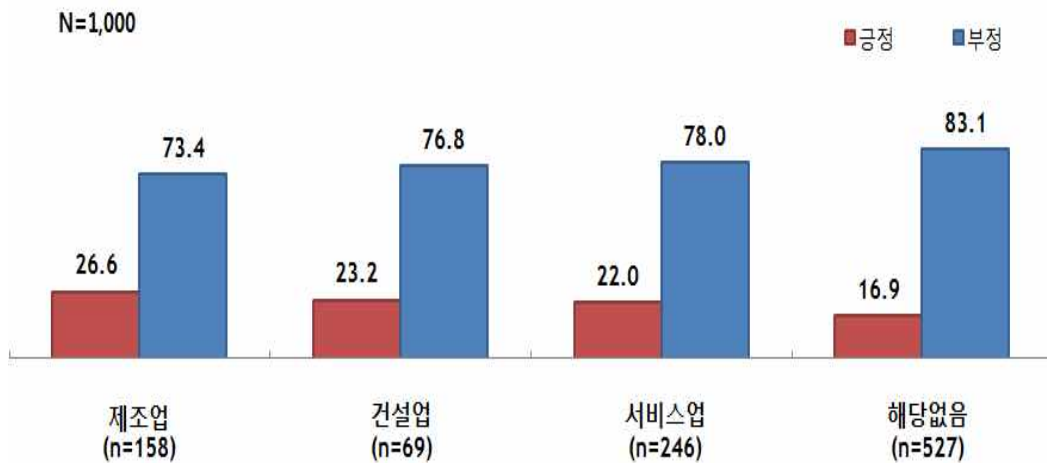


[그림 3-27] 일반국민의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중복응답)

반면에 ‘산업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제조업 28.0%, 건설업 37.3%, 서비스업 31.9%, 해당없음 24.1%)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벌칙부과 내용이 적절하다’(제조업 56.3%, 건설업 46.4%, 서비스업 49.6%, 해당없음 45.4%)는 의견은 다른 문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자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에 적절하다’(제조업 70.3%, 건설업 71.0%, 서비스업 72.4%, 해당없음 66.6%)는 의견은 70% 가량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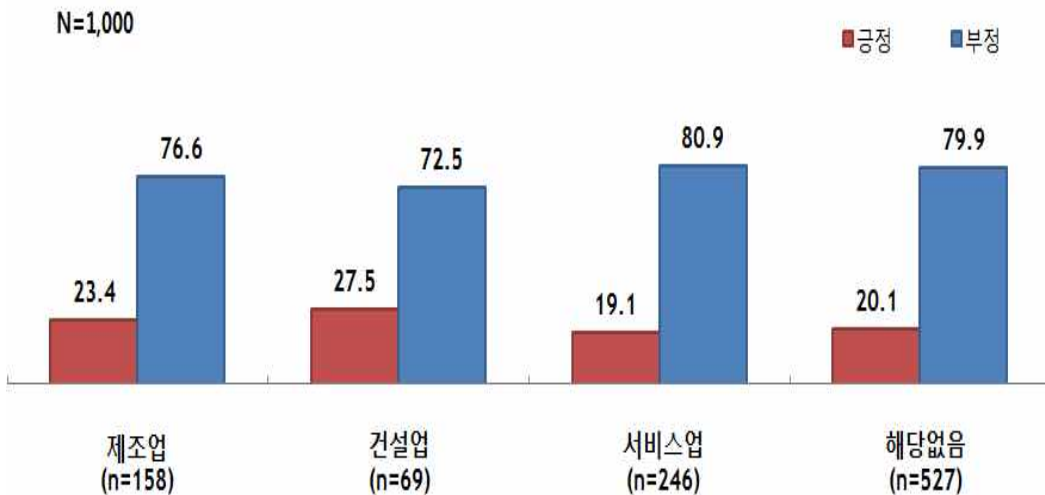
처벌의 엄격성과 관련하여 업종별로는 서비스업(22.0%), 건설업(23.2%), 제조업(26.6%) 모두 20% 이상의 처벌이 엄격하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곳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의 동의 수준(16.9%)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28]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인지(일반국민)

즉,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조·건설·서비스업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비하여 처벌이 엄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이 적용되는 업종 중에서도 제조업이 가장 처벌이 엄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처벌의 일관성과 관련하여 업종별로는 제조업(23.4%), 건설업(27.5%), 그리고 해당없음(20.1%)은 20% 이상이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서비스업(19.1%)은 이 법에 의한 처벌이 일관되어 있다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제조·건설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업종에 비하여 처벌이 엄격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비교적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처벌의 일관성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이 적용되는 업종 중에서도 건설업이 가장 처벌이 일관되어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29]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일관성 인지(일반국민)

**<표 3-13>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관성 인지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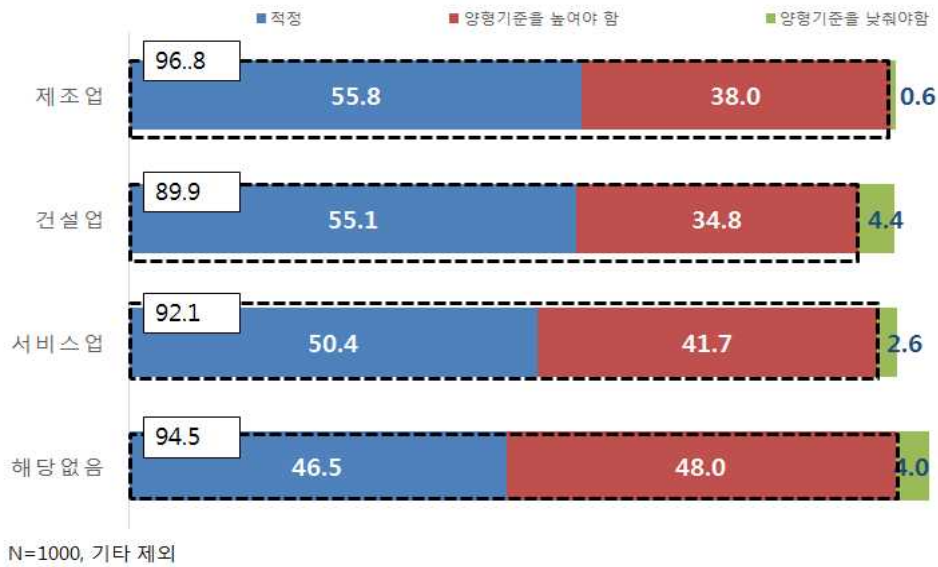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처벌의 엄격성 인지			처벌의 일관성 인지		
			긍정	부정	통계값	긍정	부정	통계값
전체		1,000	20.1	79.9		20.9	79.1	
업종	제조업	158	26.6	73.4	8.454* (df=3)	23.4	76.6	3.120 (df=3)
	건설업	69	23.2	76.8		27.5	72.5	
	서비스업	246	22.0	78.0		19.1	80.9	
	해당없음	527	16.9	83.1		20.1	79.9	

* $p<.05$

라.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처벌규정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96.8%가 처벌규정이 적정하거나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0.6%만이 처벌규정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처벌규정에 대한 적정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89.9%가 처벌규정이 적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4.4%가 처벌규정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유형 중에서 양형기준의 적정성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5$ 에서 업종별 처벌규정 강화의 적정성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0] 업종별 산업안전기본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표 3-14> 업종별 산업안전기본법상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N=1,000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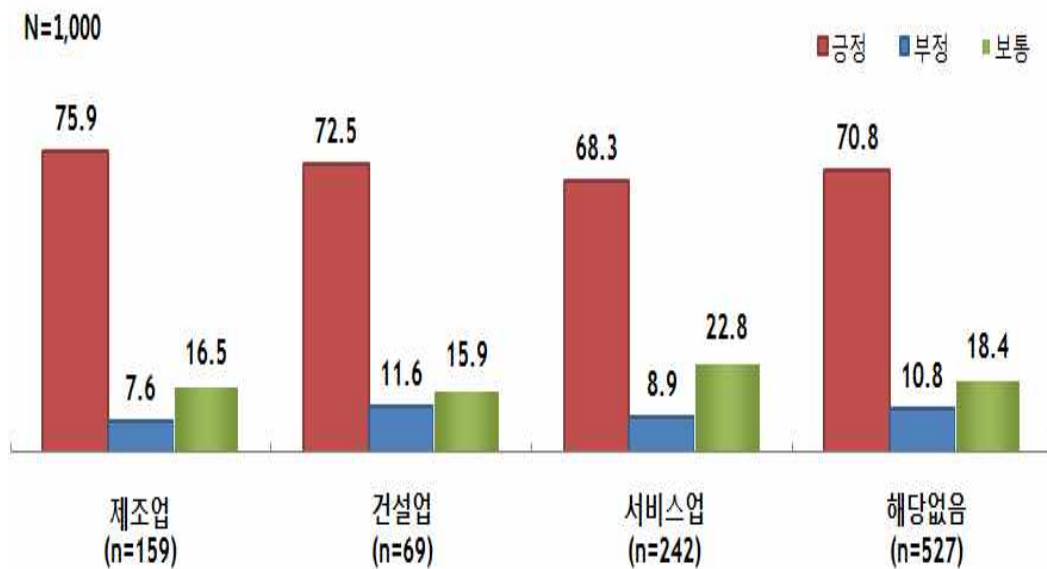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4.3	45.7	37.6	12.4	50.0	50.0	
업종	제조업	158	6.3	52.5	29.7	11.4	58.9	41.1	8.286* (df=3)
	건설업	69	2.9	52.2	31.9	13.0	55.1	44.9	
	서비스업	246	6.1	44.3	38.6	11.0	50.4	49.6	
	해당없음	527	3.0	43.5	40.2	13.3	46.5	53.5	

* p<.05

통계 값은 더미 값으로 산출함

마. 처벌강화의 필요성

업종별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업종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은 처벌이 강화하는 것에 70% 가량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조업: 75.9%, 건설업: 72.5%, 서비스업: 68.3%).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국민들도 70% 수준으로 처벌강화를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업종에 관계없이 70% 수준이 처벌강화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1]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표 3-15>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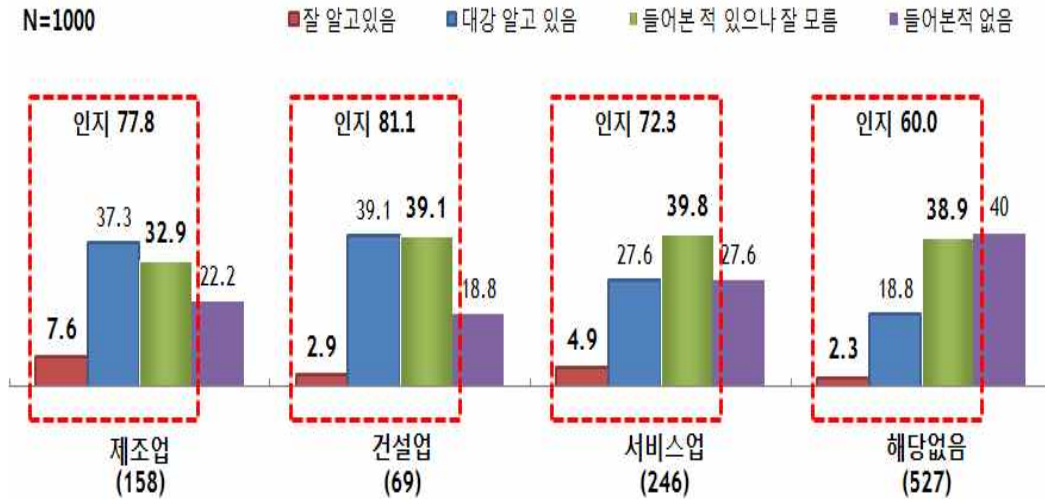
N=1,000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긍정	부정	보통	통계값
전체		1,000	71.1	9.9	19.0	
업종	제조업	158	75.9	7.6	16.5	5.353 (df=6)
	건설업	69	72.5	11.6	15.9	
	서비스업	246	68.3	8.9	22.8	
	해당없음	527	70.8	10.8	18.4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 및 양형태도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업종별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건설업: 81.1% > 제조업: 77.8% > 서비스업: 72.4%) 반면에 이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개정법안을 인지하는 비율은 60.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7.6%), 서비스업(4.9%), 건설업(2.9%) 순으로 조사되어 업종별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 인지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개정된 산업안전법에 대한 업종별 인식차이는 유의수준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2] 업종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일반국민)

<표 3-16> 업종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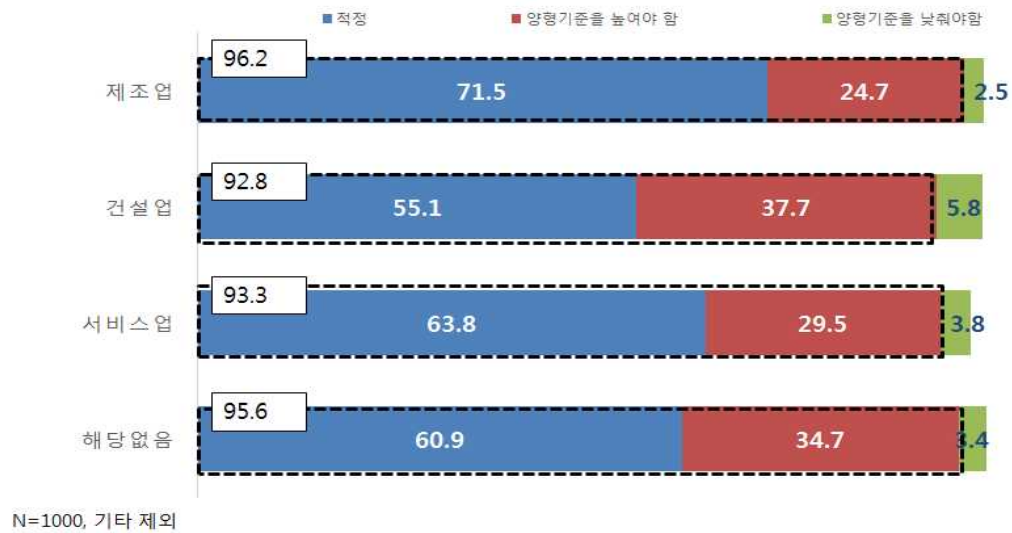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3.8	25.3	38.2	32.7	
업종	제조업	158	7.6	37.3	32.9	22.2	55.194*** (df=9)
	건설업	69	2.9	39.1	39.1	18.8	
	서비스업	246	4.9	27.6	39.8	27.6	
	해당없음	527	2.3	18.8	38.9	40.0	

* p<.05, *** p<.001

나. 가중처벌의 적정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에 대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가중처벌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33]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특히 제조업의 경우 96.2%가 가중처벌이 적정하거나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2.5%만이 양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처벌규정에 대한 적정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92.8%가 가중처벌이 적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5.8%가 양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유형 중에서 양형기준의 적정성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 결과 업종별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17>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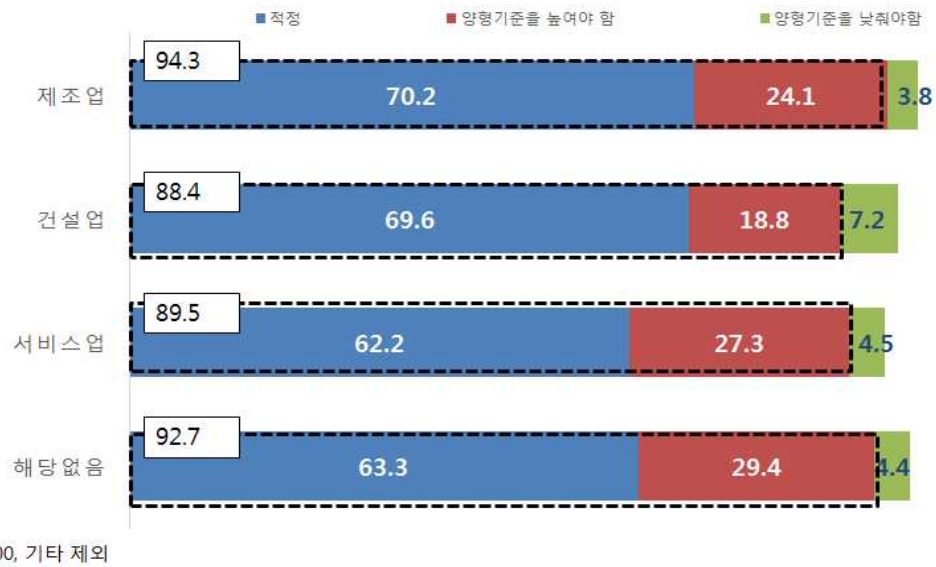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7.7	55.2	29.0	8.1	62.9	37.1	
업종	제조업	158	9.5	62.0	23.4	5.1	71.5	28.5	7.824 (df=3)
	건설업	69	2.9	52.2	34.8	10.1	55.1	44.9	
	서비스업	246	9.3	54.5	30.5	5.7	63.8	36.2	
	해당없음	527	7.0	53.9	29.2	9.9	60.9	39.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다.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선고는 경우에 그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는 교육명령에 대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수강명령의 병과가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90% 가량 이상이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94.3%가 수강명령 병과가 적정하거나 강화한다고 하였으며, 3.8%만이 양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서 다른 업종에 비하여 수강명령 병과에 대한 적정성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건설업의 경우에는 88.4%가 수강명령 병과가 적정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7.2%가 양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전체 사업유형 중에서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업종별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4]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표 3-18> 업종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상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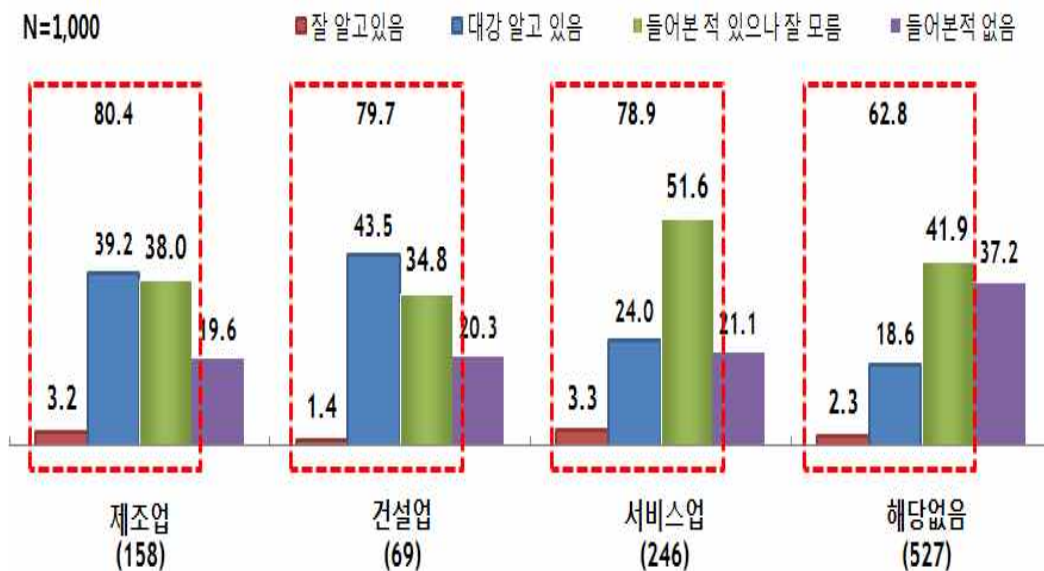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10.3	54.3	28.5	6.9	64.6	35.4	
업종	제조업	158	10.1	60.1	22.2	7.6	70.3	29.7	3.918 (df=3)
	건설업	69	14.5	55.1	20.3	10.1	69.6	30.4	
	서비스업	246	13.0	49.2	30.1	7.7	62.2	37.8	
	해당없음	527	8.5	54.8	30.7	5.9	63.4	36.6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4.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가.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업종별로는 양형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제조업: 80.4% > 건설업: 79.7% > 서비스업: 78.9%) 반면에 이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개정법안을 인지하는 비율은 60.0%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양형위원회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 3.2%, 서비스업 1.4%, 건설업 3.3%, 해당없음 2.3%로 모든 업종에서 양형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 가량으로 나타나 인지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5] 업종별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표 3-19> 업종별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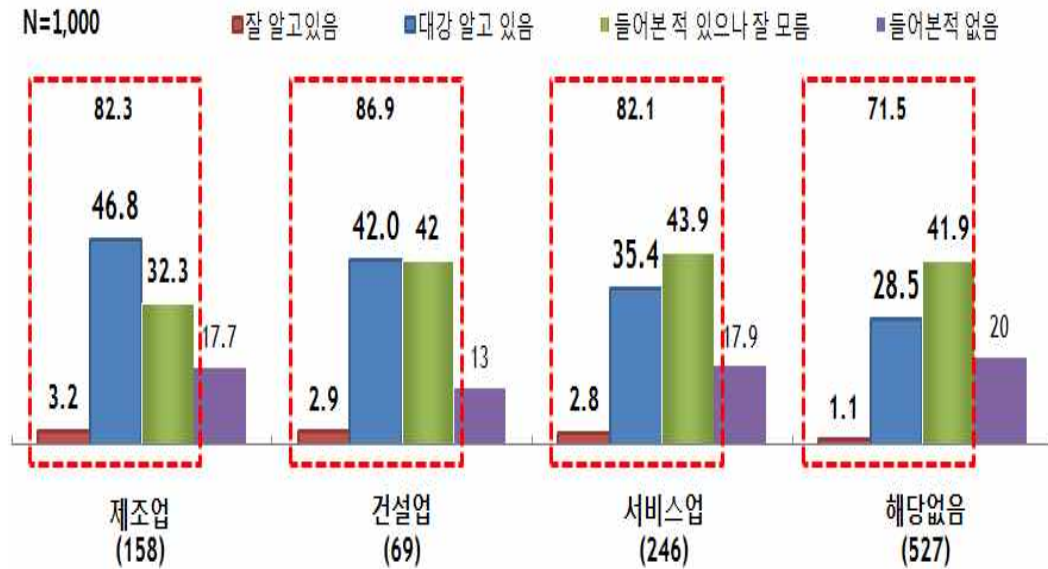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2.6	24.9	43.2	29.3	
업종	제조업	158	3.2	39.2	38.0	19.6	62.394*** (df=9)
	건설업	69	1.4	43.5	34.8	20.3	
	서비스업	246	3.3	24.0	51.6	21.1	
	해당없음	527	2.3	18.6	41.9	37.2	

*** p<.001

나.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업종별로는 양형기준제를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대체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조·건설·서비스업에서 인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건설업: 86.9%>제조업: 82.3%>서비스업: 82.1%) 반면에 이 법에 직접적으로 적용받지 않는 업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개정법안을 인지하는 비율은 71.5%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한편, 양형기준제를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조업 3.2%, 서비스업 2.9%, 건설업 2.8%, 해당없음 1.1%로 모든 업종에서 양형기준제를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 가량으로 나타나 인지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01$ 에서 업종별 양형기준제 인지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6] 업종별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표 3-20> 업종별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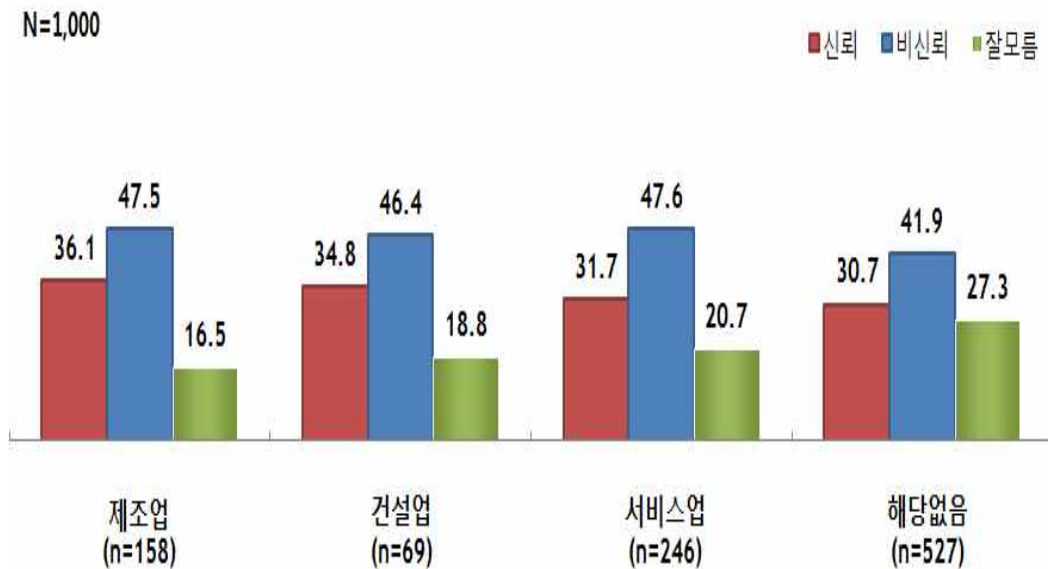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2.0	34.0	40.9	23.1	
업종	제조업	158	3.2	46.8	32.3	17.7	36.065*** (df=9)
	건설업	69	2.9	42.0	42.0	13.0	
	서비스업	246	2.8	35.4	43.9	17.9	
	해당 없음	527	1.1	28.5	41.9	28.5	

*** p<.001

다. 양형기준의 신뢰성 인식

업종별로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이 양형기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36.1%로 건설업(34.8%)과 서비스업(31.7%), 해당없음(30.7%)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업종에 비하여 제조업에 종사하는 국민들은 양형기준을 신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카이제곱 검증결과 업종별 양형기준 신뢰여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37] 업종별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표 3-21> 업종별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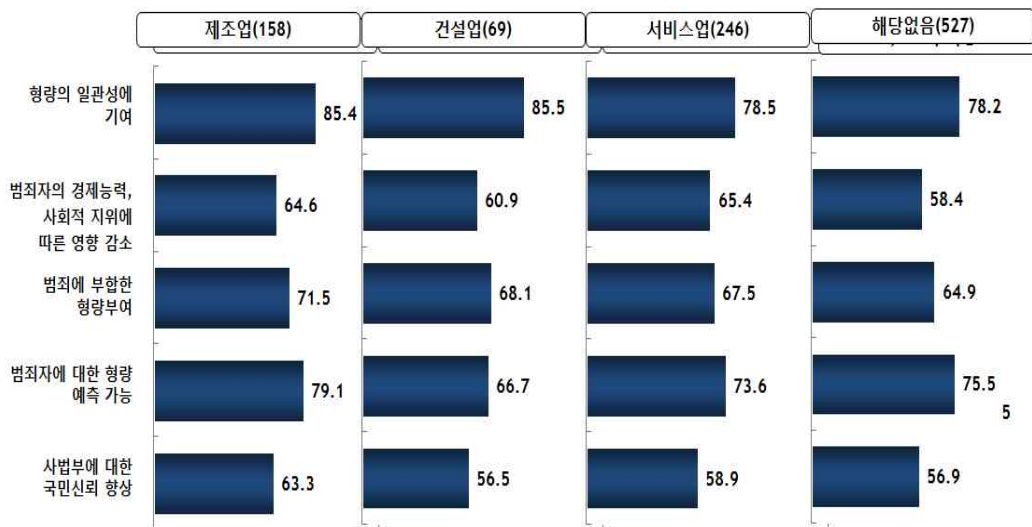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신뢰	비신뢰	잘 모름	통계값
전체		1,000	32.1	44.5	23.4	
업종	제조업	158	36.1	47.5	16.5	10.999 (df=6)
	건설업	69	34.8	46.4	18.8	
	서비스업	246	31.7	47.6	20.7	
	해당없음	527	30.7	41.9	27.3	

* p<.05, *** p<.001

라.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식

양형기준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양형기준의 효과성을 60% 가량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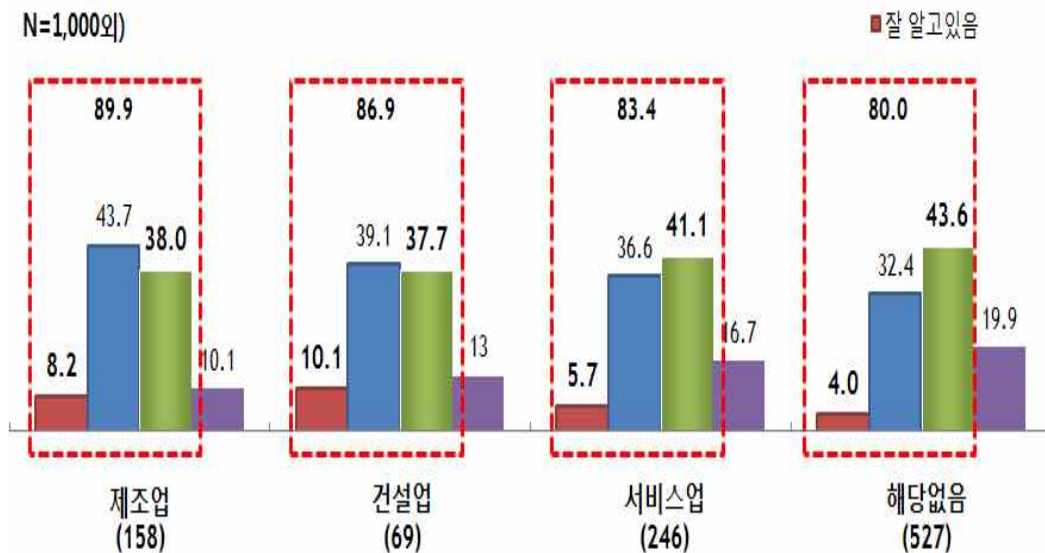


N=1,000

[그림 3-38] 업종별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지여부(일반국민)

업종에 관계없이 응답자들은 ‘형량의 일관성에 기여’(건설업 85.5%>제조업 85.4%>서비스업 78.5%>해당없음 78.2%)와 ‘범죄자에 대한 형량 예측 가능’(제조업 79.1%>서비스업 73.6%>해당없음 75.5%>건설업 66.7%), ‘범죄에 부합한 형량부여’(제조업 71.5%>건설업 68.1%>서비스업 67.5%>해당없음 64.9%), ‘범죄자의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 감소’(서비스업 65.4%>제조업 64.6%>건설업 60.9%>해당없음 58.4%),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제조업 63.3%>서비스업 58.9%>건설업 56.5%>해당없음 56.9%)로 나타났다.

마.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의 인지여부
업종별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업종에 관계없이 대체로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을 80% 이상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제조업: 89.9%>건설업: 86.9%>서비스업: 83.4%>해당없음 80.0%).



[그림 3-39]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일반국민)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양형기준을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건설업 10.1%, 건설업 8.2%, 서비스업 5.7%, 해당없음 4.0% 순으로 조사되어 업종별로 양형기준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에서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5% 미만으로 나타나 적극적으로 인지하는 수준이 여전히 미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5$ 에서 업종별 처벌규정 강화의 적정성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2>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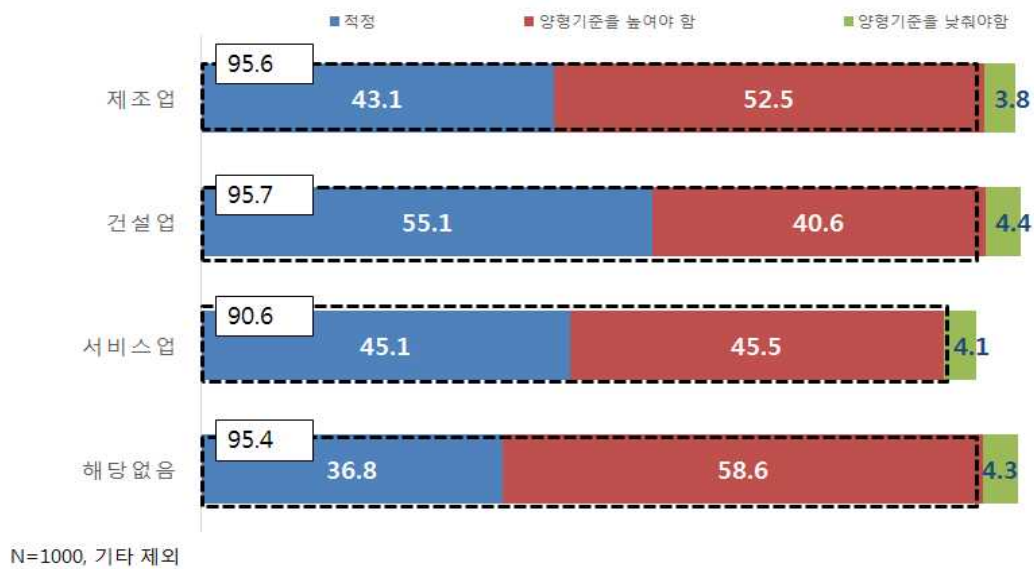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5.5	35.7	41.7	17.1	
업종	제조업	158	8.2	43.7	38.0	10.1	20.652* (df=9)
	건설업	69	10.1	39.1	37.7	13.0	
	서비스업	246	5.7	36.6	41.1	16.7	
	해당없음	527	4.0	32.4	43.6	19.9	

* $p<.05$

바.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다른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업종에 관계없이 양형기준이 적정하거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응답이 90% 이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의 경우 각각 95.6%와 95.7%로 양형기준이 적정하거나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양형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응답도 업종에 관계없이 4.0% 가량이 양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서 모든 업종에 있어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01$ 에서 업종별 처벌규정 강화의 적정성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40]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표 3-23>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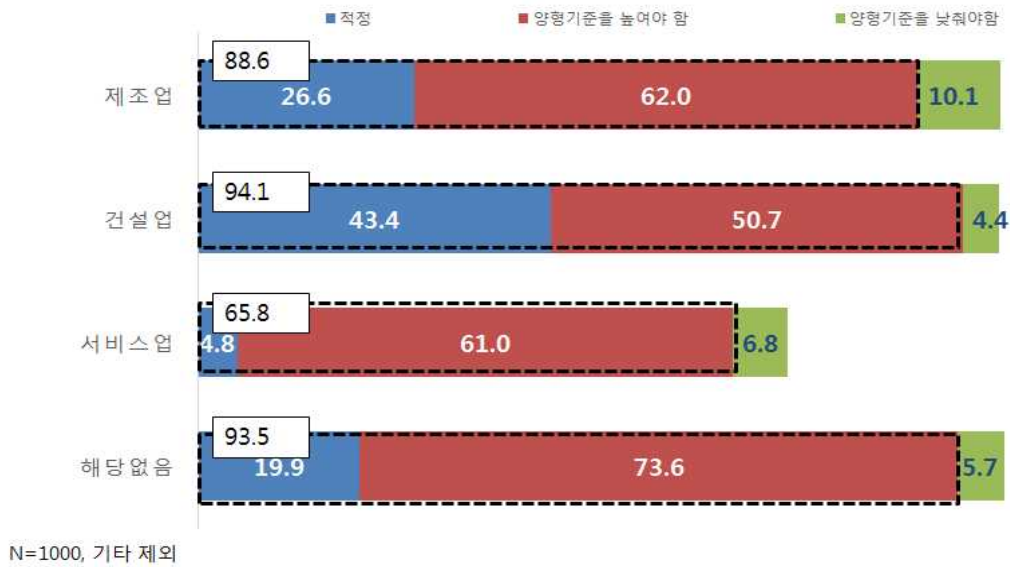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4.2	36.9	44.5	14.4	41.1	58.9	
업종	제조업	158	5.1	38.0	43.0	13.9	43.0	57.0	11.456** (df=3)
	건설업	69	2.9	52.2	33.3	11.6	55.1	44.9	
	서비스업	246	6.1	39.0	42.7	12.2	45.1	54.9	
	해당없음	527	3.2	33.6	47.2	15.9	36.8	63.2	

** p<.01, 통계 값은 더미 값으로 산출함

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양형 인식

조사대상자들에게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의 처벌결과를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양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94.1%가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제조업의 88.6%가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제조·건설·서비스업에 종사하지 않는 국민들의 93.5%가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65.8%가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응답하거나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업을 제외한 다른 업종은 현행 업무상과실치사죄상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서비스업의 양형기준 적정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1]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걱정성(일반국민)

한편 카이제곱 검증결과 유의수준 $p < .01$ 에서 업종별 처벌규정 강화의 걱정성 인식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24>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 걱정성(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매우 걱정	대체로 걱정	별로 걱정하지 않음	전혀 걱정하지 않음	걱정	걱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1.4	22.9	45.4	30.3	24.3	75.7	
업종	제조업	158	1.3	25.3	44.3	29.1	26.6	73.4	20.585** (df=3)
	건설업	69	1.4	42.0	34.8	21.7	43.5	56.5	
	서비스업	246	2.0	24.8	48.4	24.8	26.8	73.2	
	해당없음	527	1.1	18.8	45.7	34.3	19.9	8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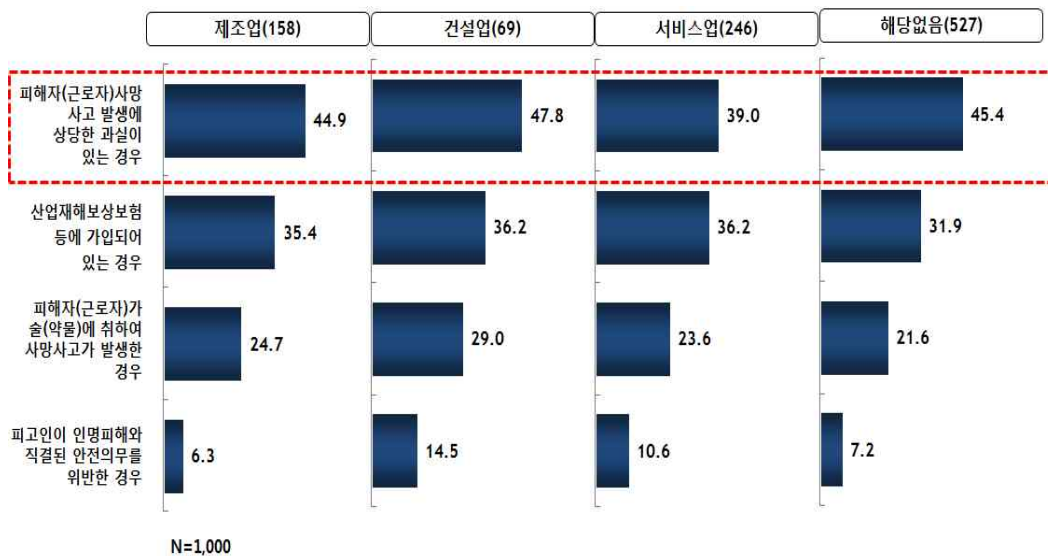
** $p < .01$, 통계 값은 더미 값으로 산출함

5.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일반적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가중감경 요인과 관련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일반국민들은 ‘피해자에게도 사망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 40% 가량 이상이 경하게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30% 가량 이상이 경하게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근로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업종에 관계없이 각각 양형기준보다 50%와 70% 이상이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국민들은 피해자에게도 사망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는 피해자



[그림 3-42] 업종별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표 3-25> 업종별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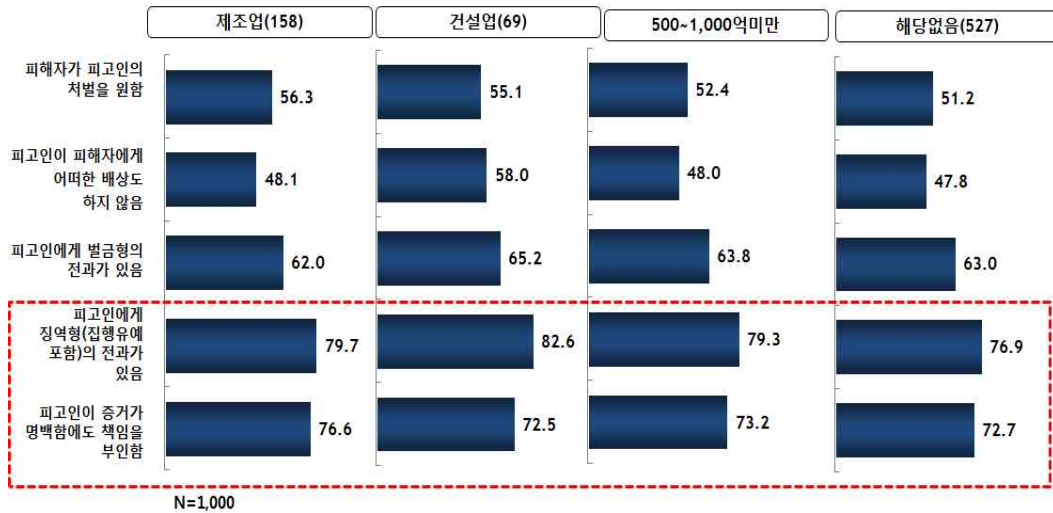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전체		1,000	43.9	33.7	33.8	19.7	23.1	59.8	8.4	78.3
업종	제조업	158	44.9	38.0	35.4	24.7	24.7	56.3	6.3	79.1
	건설업	69	47.8	31.9	36.2	21.7	29.0	53.6	14.5	65.2
	서비스업	246	39.0	35.0	36.2	19.1	23.6	57.7	10.6	76.8
	해당없음	527	45.4	32.1	31.9	18.2	21.6	62.6	7.2	80.5

- A. 피해자(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C. 피해자(근로자)가 술(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D.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이 없이 제외)

나.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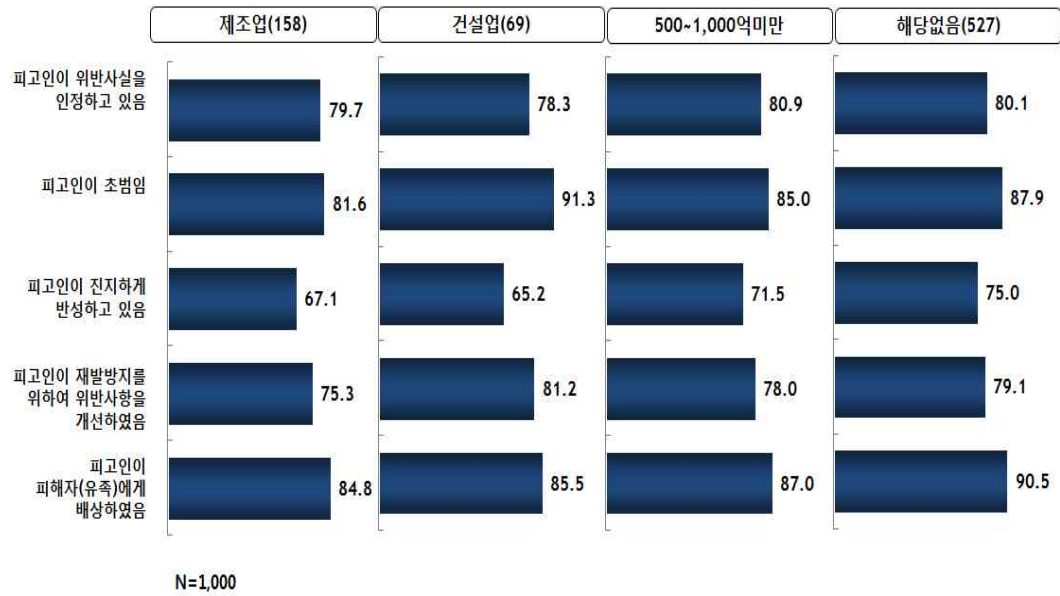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일반국민들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포함)의 전과가 있음’과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인함’은 70% 이상이, 그리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은 60% 이상이 가중 양형인자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은 50% 가량 이하가 양형인자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가중 양형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3-43] 업종별 가장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다. 산업안전보건법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가장 양형인자에 대하여 업종에 관계없이 일반국민들은 대체로 모든 감경 양형인자에 대하여 70~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하였음’과 ‘피고인이 초범임’은 80% 이상이, 그리고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과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은 70% 이상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감경 양형인자보다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은 70% 이하가 감경 양형인자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다른 감경 양형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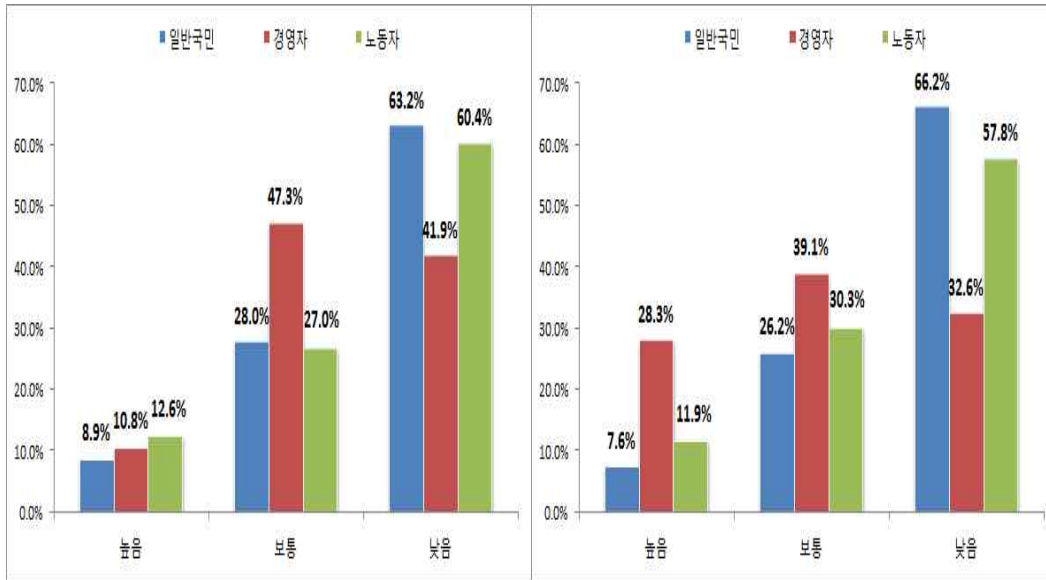
[그림 3-44] 업종별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제4장 집단 간 인식조사 결과비교

제1절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1.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우리나라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수준과 관련하여 일반국민, 경영단체, 노동단체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경영자집단(41.9%, 32.6%)이 일반국민(63.2%, 66.2%) 및 노동자집단(60.4%, 57.8%)에 비하여 법령 준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법령 준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경영자집단(10.8%, 28.3%)과 노동자집단(12.6%, 11.9%)이 일반국민(8.9%, 7.6%)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이제곱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경영자단체와 노동자단체도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준수 수준이 낮다는 것에 어느 정도 동의하고 있으며, 일반국민과 노동자단체는 근로자에 비하여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준수 수준이 더 낮은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경영자단체는 근로자의 법령준수 수준이 경영자보다 더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 근로자 준수수준

[그림 4-2] 경영자 준수수준

<표 4-1>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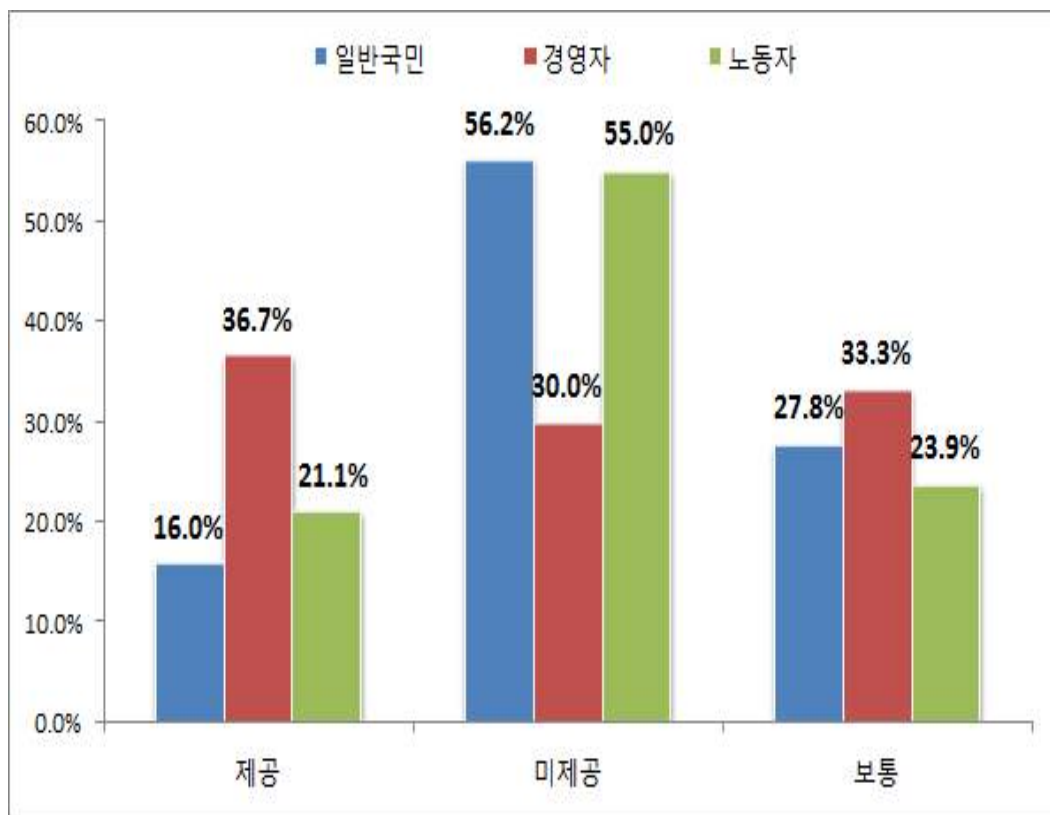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근로자 법령 준수수준				경영자 법령 준수수준			
	일반국민 (N=969)	경영자 (N=93)	노동자 (N=111)	X^2	일반국민 (N=971)	경영자 (N=92)	노동자 (N=109)	X^2
높음	86	10	14	18.979** (df=4)	74	26	13	58.831*** (df=4)
	8.9%	10.8%	12.6%		7.6%	28.3%	11.9%	
보통	271	44	30		254	36	33	
	28.0%	47.3%	27.0%		26.2%	39.1%	30.3%	
낮음	612	39	67		643	30	63	
	63.2%	41.9%	60.4%		66.2%	32.6%	57.8%	

** p<.01, *** p<.001 / (잘 모름 제외)

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제공 수준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일반국민(56.2%)과 노동자단체(55.0%)의 절반 이상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경영자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노동단체와 경영자 단체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으며, 카이제곱 검증 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3]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비교

<표 4-2>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비교

단위: 명/%

구분	일반국민 (N=959)	경영자 (N=90)	노동자 (N=109)	X^2
제공	153	33	23	32.245** (df=4)
	16.0%	36.7%	21.1%	
미제공	539	27	60	
	56.2%	30.0%	55.0%	
보통	267	30	26	
	27.8%	33.3%	23.9%	

** $p < .01$ / (잘 모름 제외)

3.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

노동단체에서는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59.5%)’와 ‘정부지원 확대(41.4%)’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자단체는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55.96%)”와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44.4%)’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와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은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3>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복응답)**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A	B	C	D	E	F
일반국민	1,000	61.4%	59.7%	23.8%	14.4%	29.4%	11.0%
경영단체	99	44.4%	59.6%	23.2%	32.3%	17.2%	20.2%
노동단체	111	59.5%	33.3%	27.0%	18.0%	41.4%	16.2%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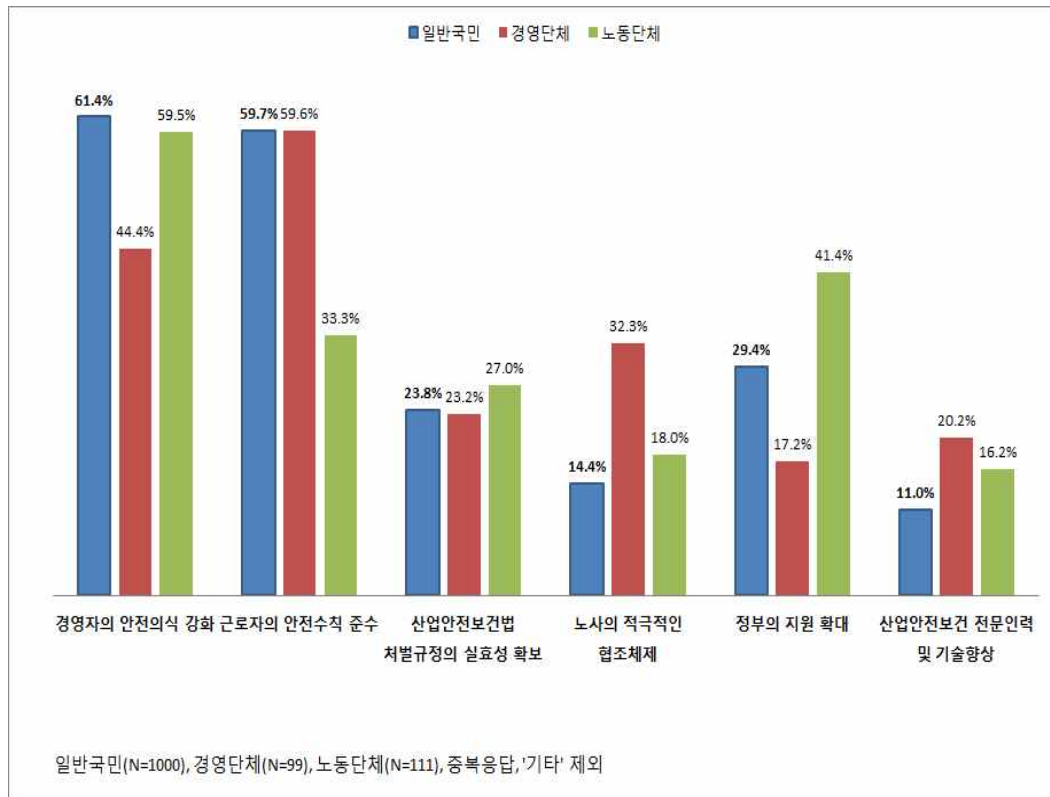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D. 정부의 지원 확대,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 기타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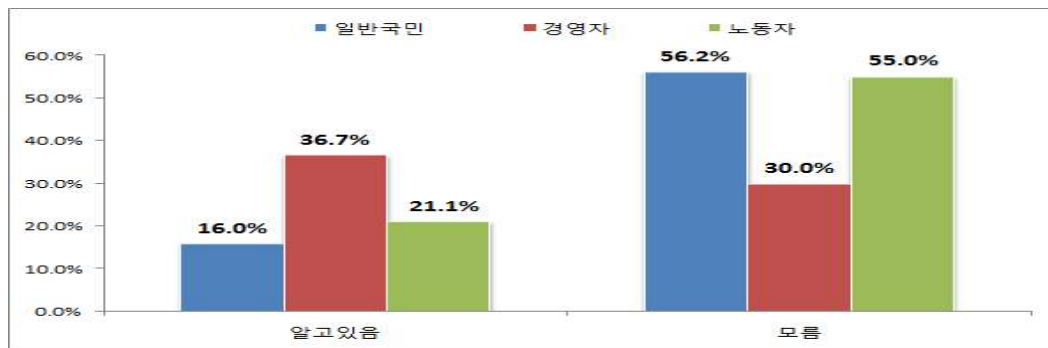


[그림 4-4]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1.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 인지와 관련하여 경영자단체(36.7%)에 비하여 일반국민(16.0%)과 노동단체(21.1%)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을 ‘알고 있다’는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5]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비교

<표 4-4>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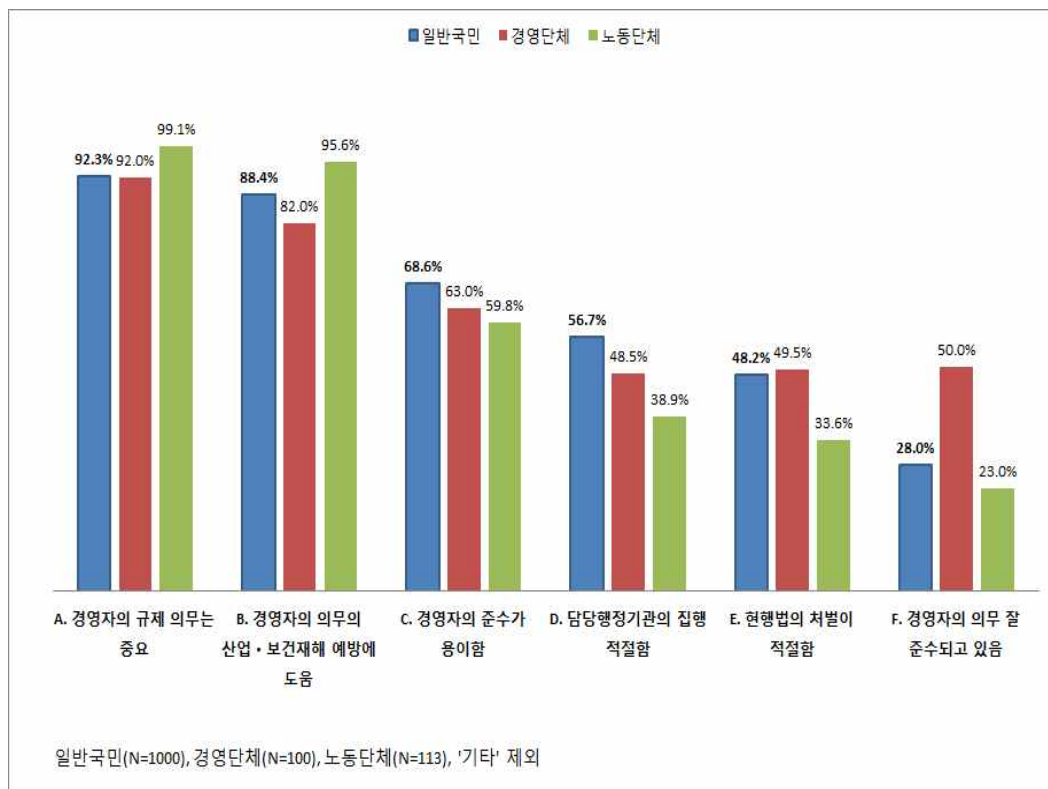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99)	노동자 (N=113)	X^2
알고 있음	222	34	39	15.962** (df=4)
	22.2%	34.3%	34.5%	
모름	274	30	27	
	27.4%	30.3%	23.9%	
보통	504	35	47	
	50.4%	35.4%	41.6%	

** $p < .01$ / (기타 및 잘 모름 제외)

2.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인정도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인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나 취지에 도움이 된다’는 것에 대해 일반국민,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모두 높은 비율로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6]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비교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는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는 경영자단체에 한해서 높게 동의하고 있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벌칙부과 내용이 적절하다’는 질문에 대

해서 노동단체의 33.6%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국민(48.2%)과 경영자단체(49.5%)에 비하여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4-5>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비교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A	B	C	D	E	F
일반국민	1,000	92.3%	88.4%	68.6%	56.7%	48.2%	28.0%
경영단체	100	92.0%	82.0%	63.0%	48.5%	49.5%	50.0%
노동단체	113	99.1%	95.6%	59.8%	38.9%	33.6%	23.0%
X^2	-	7.375	10.038 *	11.428 *	18.453 **	17.515 **	24.61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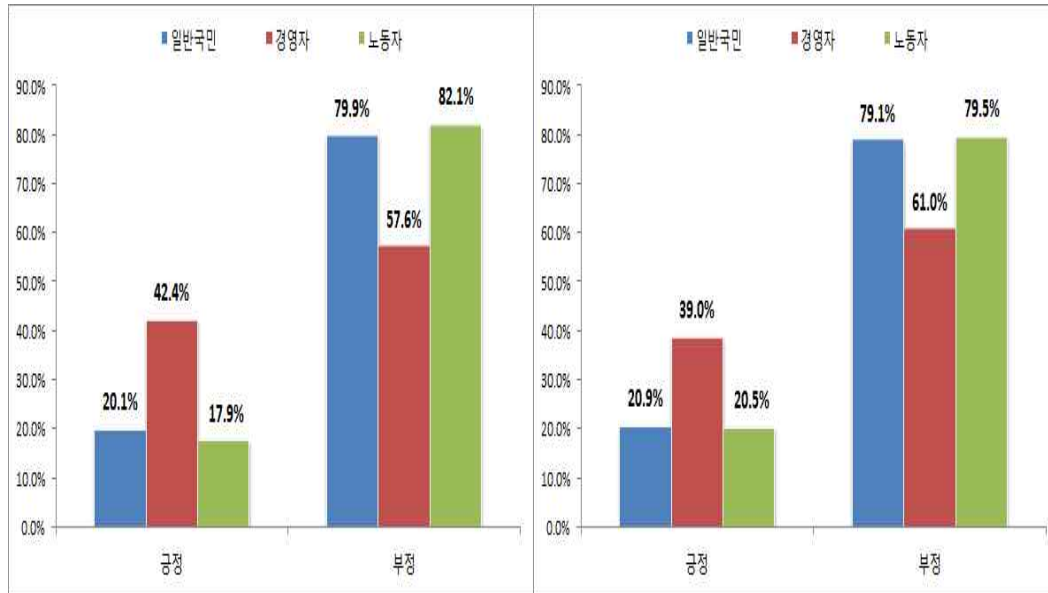
A. 경영자의 규제 의무는 중요
C. 경영자의 준수가 용이함
E. 현행법의 처벌이 적절함
(비동의, 잘 모름, 기타 제외)

B. 경영자의 의무의 산업·보건재해 예방에 도움
D. 담당행정기관의 집행 적절함
F. 경영자의 의무 잘 준수되고 있음

* $p<.05$, ** $p<.01$, *** $p<.001$

3.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평가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처벌의 공정성에 대하여 일반국민,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자단체는 처벌의 엄격성과 일관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각각 42.4%와 39.0%인 것에 비하여 노동단체의 긍정적인 인식(17.9%, 20.5%)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7] 처벌의 엄격성 인지

[그림 4-8] 처벌의 일관성 인지

<표 4-6>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반성 인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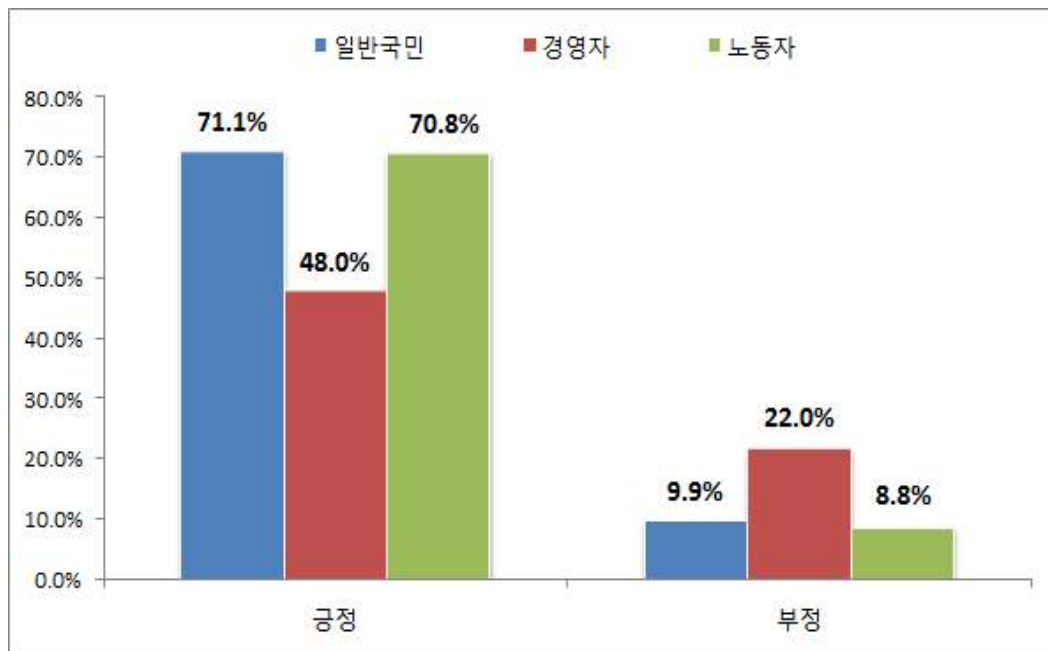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처벌의 엄격성 인지				처벌의 일관성 인지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99)	노동자 (N=112)	X^2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100)	노동자 (N=112)	X^2
긍정	201	42	20	27.489*** (df=2)	209	39	23	17.392*** (df=2)
	20.1%	42.4%	17.9%		20.9%	39.0%	20.5%	
부정	799	57	92		791	61	89	
	79.9%	57.6%	82.1%		79.1%	61.0%	79.5%	

*** p<.001 / (기타 및 잘 모름 제외)

4. 처벌강화의 필요성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강화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일반국민(71.1%), 경영자단체(48.0%), 노동단체(70.8%) 모두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자단체는 처벌강화의 필요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이 22.0%로 노동단체(8.8%)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9]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비교

<표 4-7>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 강화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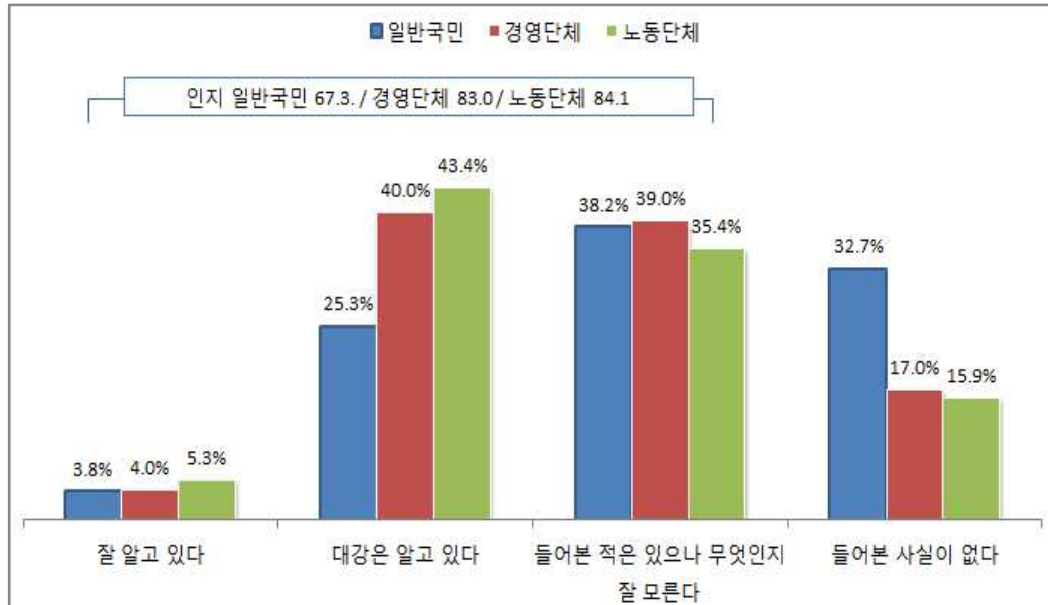
구분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100)	노동자 (N=113)	X^2
긍정	711	48	80	25.322*** (df=4)
	71.1%	48.0%	70.8%	
부정	99	22	10	
	9.9%	22.0%	8.8%	
보통	190	30	23	
	19.0%	30.0%	20.4%	

*** p<.001 / (기타 및 잘 모름 제외)

제3절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의 적정성 평가

1.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인지와 관련하여 일반국민(67.3%), 경영자단체(83.0%), 노동단체(84.1%) 모두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3.8%, 경영자단체 4.0%, 노동단체 5.3%로 낮은 수준이지만 ‘대강 알고 있다’와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비율은 각각 일반국민 25.3%, 38.2%, 경영자단체 40.0%, 39.0%, 노동단체 43.4%, 35.4%로 조사되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들어 본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32.7%), 경영자단체(17.0%), 노동단체(15.9%)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0]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도 비교

<표 4-8>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도 비교

단위: 명/%

구분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100)	노동자 (N=113)	χ^2
잘 알고 있음	38	4	6	33.552*** (df=6)
	3.8%	4.0%	5.3%	
대강 알고 있음	253	40	49	
	25.3%	40.0%	43.4%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382	39	40	
	38.2%	39.0%	35.4%	
들어본 적 없음	327	17	18	
	32.7%	17.0%	15.9%	

*** p<.001

2. 관련 법령의 적정성 인식 비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현행 처벌 규정의 적정성 평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정성’의 경우에 일반국민,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집단 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중 가중처벌 및 수감명령 병과’와 관련한 적정성 평가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처벌규정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경영자단체(66.0%)가 가장 높았고, 일반국민(50.0%), 노동단체(36.0%)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한 노동단체 응답자의 56.9%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다른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양형기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경영자단체(60.0%)가 가장 높았고, 일반국민(41.1%), 노동단체(29.7%)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한 노동단체 응답자의 35.2%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의 안전의무 위반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의 처벌결과를 시나리오로 제시하여 양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양형기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경영자단체(56.6%)가 가장 높았고, 일반국민(24.3%), 노동단체(25.5%)로 나타났으며, 특히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한 노동단체 응답자의 34.9%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체로 경영자집단들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 및 양형기준에 대하여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노동단체들은 처벌 및 양형기준이 적정하지 않으며, 현행 처벌규정 및 양형기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3-9>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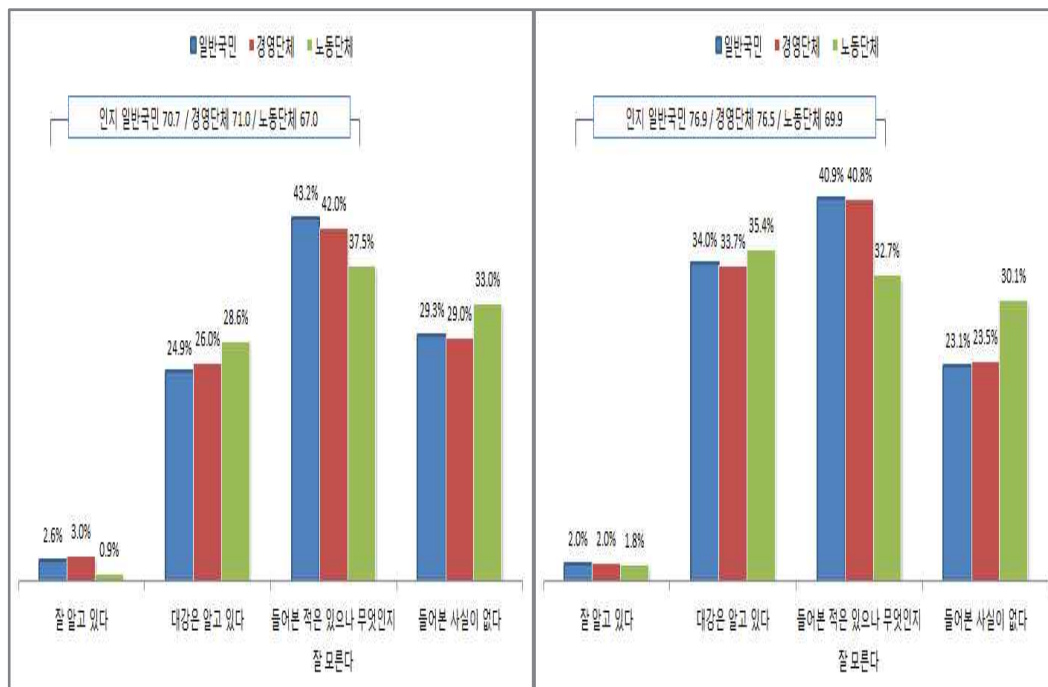
구 분	일반국민(=N=1,000)			경영단체(N=100)			노동단체(N=111)			X^2
	적 정	부정적		적 정	부적정		적 정	부적정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야 함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야 함		양형 기준을 높여야 함	양형 기준을 낮추어야 함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50.0	33.2	2.4	66.0	30.0	16.0	36.0	56.9	3.1	18.897***
개정 산안법 (가중처벌) 적정성	62.9	32.6	3.6	70.0	26.4	2.9	60.0	23.5	22.7	2.490
개정 산안법 (수강명령) 적정성	64.6	29.1	4.8	74.0	15.0	10.0	58.2	31.4	3.6	5.840
현행 산안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41.1	34.0	3.2	60.0	20.2	8.1	29.7	35.2	1.5	20.474***
산안법 사망사건의 양형인식	24.3	33.4	3.3	56.6	23.1	5.8	25.5	34.9	1.4	47.684***

*** p<.001, 통계 값은 더미 값으로 산출함

제4절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1.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다음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의 인지도는 일반국민(70.7%, 76.9%), 경영자단체(71.0%, 76.5%), 노동단체(67.0%, 69.9%) 모두 70%가량으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2.6%, 2.0%, 경영자단체 3.0%, 2.0%, 노동단체 0.9%, 1.8%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양형기준제와 양형위원회를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11] 양형위원회 인지여부 [그림 4-12]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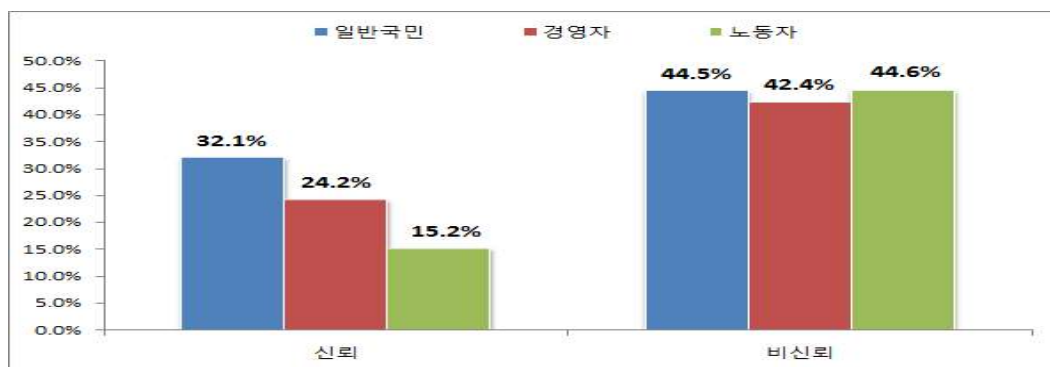
<표 4-10>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비교

단위: 명/%

구분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100)	노동자 (N=112)	X^2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98)	노동자 (N=113)	X^2
잘 알고 있음	26	3	1	3.128 (df=6)	20	2	2	3.878 (df=6)
	2.6%	3.0%	.9%		2.0%	2.0%	1.8%	
대강 알고 있음	249	26	32		340	33	40	
	24.9%	26.0%	28.6%		34.0%	33.7%	35.4%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432	42	42		409	40	37	
	43.2%	42.0%	37.5%		40.9%	40.8%	32.7%	
들어본 적 없음	293	29	37		231	23	34	
	29.3%	29.0%	33.0%		23.1%	23.5%	30.1%	

2. 양형기준의 신뢰성 인식

일반국민, 경영자단체, 노동단체 모두 양형기준을 신뢰한다는 비율에 비하여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양형기준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32.1%), 경영자단체(24.2%), 노동단체(15.2%)로 순으로 집단에 따라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3] 양형기준의 신뢰여부 비교

<표 4-11> 양형기준의 신뢰여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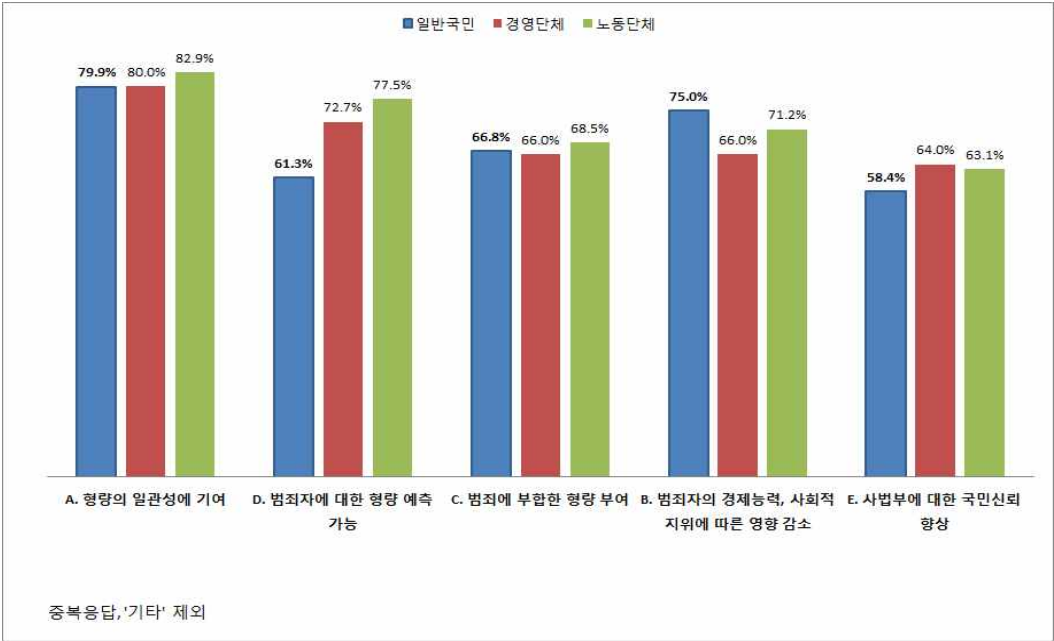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99)	노동자 (N=112)	X^2
신뢰	321	24	17	24.292*** (df=4)
	32.1%	24.2%	15.2%	
비신뢰	445	42	50	
	44.5%	42.4%	44.6%	
잘 모름	234	33	45	
	23.4%	33.3%	40.2%	

*** p<.001

3.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식

양형기준제의 효과성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의 일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한 비율이 일반국민(79.9%), 경영자단체(80.0%), 노동단체(82.9%)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노동단체와 경영자단체의 경우에는 ‘범죄자에 대한 형량을 예측 가능하다’는 응답이 77.5%와 72.7%로 일반국민(61.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밖에도 ‘범죄자의 경제능력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부당한 영향이 감소’ 및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가’의 경우 동의하는 비율도 50%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4]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인식 비교

<표 4-12> 양형기준제의 효과성 인식 비교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A	B	C	D	E
일반국민	1,000	79.9%	61.3%	66.8%	75.0%	58.4%
경영단체	100	80.0%	72.7%	66.0%	66.0%	64.0%
노동단체	111	82.9%	77.5%	68.5%	71.2%	63.1%
X^2	-	.562	15.095 **	.164	4.292	1.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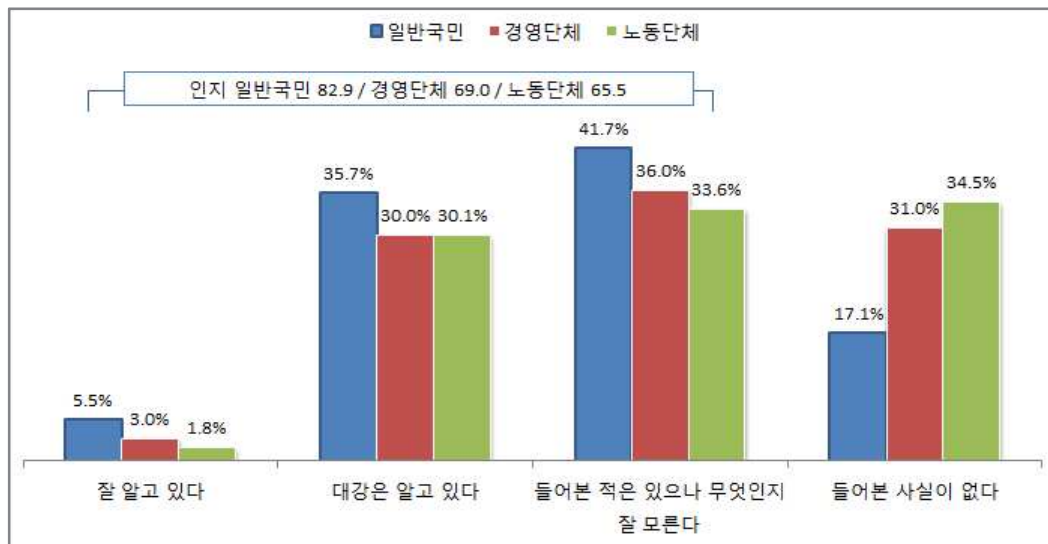
A. 형량의 일관성에 기여
C. 범죄에 부합한 형량 부여
E.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
(비동의, 잘 모름, 기타 제외)

B. 범죄자의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 감소
D. 범죄자에 대한 형량 예측 가능

** p<.01

4.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의 인지여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고할 양형기준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일반국민(82.9%), 경영자단체(69.0%), 노동단체(69.5%) 모두에서 인식하는 비율이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일반국민 5.5%, 경영자단체 3.0%, 노동단체 1.8%로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양형기준을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의 대다수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을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의 양형기준에 대해 ‘들어 본 사실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일반국민(17.1%), 경영자단체(31.0%), 노동단체(34.5%)로 나타나 일반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카이제곱 검증결과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4-15]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비교

<표 4-13>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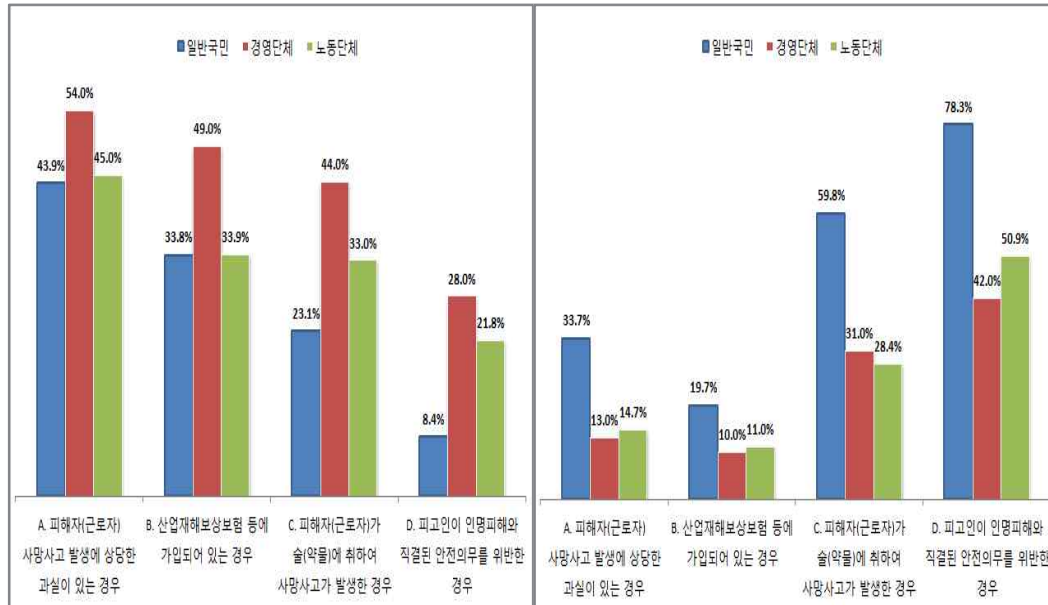
구분	일반국민 (N=1,000)	경영자 (N=100)	노동자 (N=113)	χ^2
잘 알고 있음	55	3	2	29.774*** (df=6)
	5.5%	3.0%	1.8%	
대강 알고 있음	357	30	34	
	35.7%	30.0%	30.1%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417	36	38	
	41.7%	36.0%	33.6%	
들어본 적 없음	171	31	39	
	17.1%	31.0%	34.5%	

*** p<.001

제5절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1.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일반적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가중감경 요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피해자에게도 사망사고 발생의 과실이 있는 경우’와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경하게 처벌하는 것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으며, 피해자(근로자)가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양형기준보다 중하게 처벌하는 것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6]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비교(경하게) **[그림 4-17]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비교(중하게)**

<표 4-14>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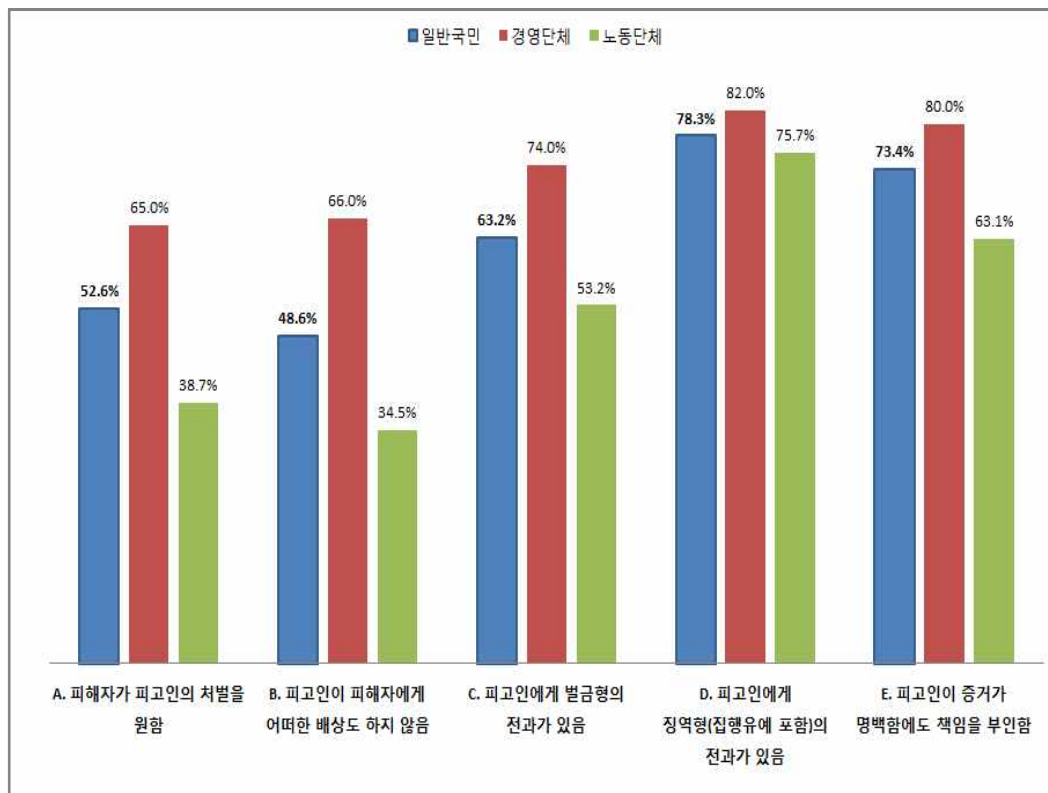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A		B		C		D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일반국민	1,000	43.9%	33.7%	33.8%	19.7%	23.1%	59.8%	8.4%	78.3%
경영단체	100	54.0%	13.0%	49.0%	10.0%	44.0%	31.0%	28.0%	42.0%
노동단체	109	45.0%	14.7%	33.9%	11.0%	33.0%	28.4%	21.8%	50.9%
X^2		14.684**		20.802***		9.829**		1.255	

- A. 피해자(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C. 피해자(근로자)가 술(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D.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이 없이 제외)

** p<.01, *** p<.001

2.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일반국민과 경영자단체는 대체로 모든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5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노동단체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38.7%)’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34.5%)’이 다른 가중 양형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18]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표 4-15>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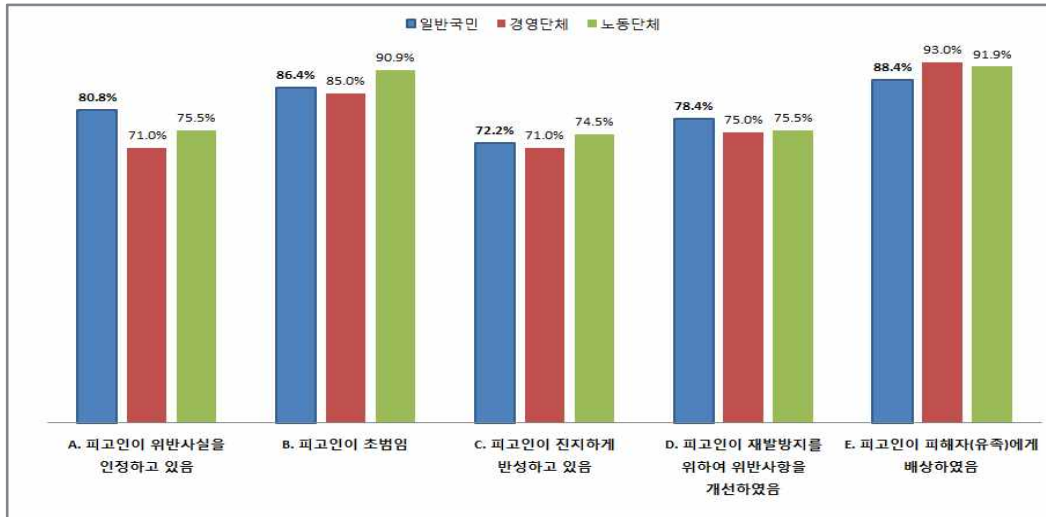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명)	A	B	C	D	E
일반국민	1,000	52.6%	48.6%	63.2%	78.3%	73.4%
경영단체	100	65.0%	66.0%	74.0%	82.0%	80.0%
노동단체	111	38.7%	34.5%	53.2%	75.7%	63.1%
χ^2		6.576*	2.018	.366	1.013	2.962

-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D.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E.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인함
 (중요하지 않음 제외)

* $p < .05$

3. 산업안전보건법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하여 응답자들은 대체로 모든 감경 양형인자에 대하여 70~8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및 유족에게 배상하였음’과 ‘피고인이 초범임’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과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은 다른 감경 양형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9]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표 4-16>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비교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A	B	C	D	E
일반국민	1,000	80.8%	86.4%	72.2%	78.4%	88.4%
경영단체	100	71.0%	85.0%	71.0%	75.0%	93.0%
노동단체	110	75.5%	90.9%	74.5%	75.5%	91.9%
χ^2		14.684**	20.802***	9.829**	1.255	8.128

- A.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B. 피고인이 초범임
 C.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D.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E. 피고인이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였음
 (중요하지 않음 제외)
 ** p<.01, *** p<.001

제5장 결 론

2019년 1월 15일에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처벌강화(제167조), 도급인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제169조), 양벌규정의 이원화를 통한 벌금규정의 실효성 제고(제173조), 형벌과 수강명령의 병과(제174조) 등과 같은 조치를 담고 있다. 이 규정들은 모두 변화된 노동환경에 상응하는 제재강화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처벌강화가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에게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안전·보건조치를 두고 있다. 안전·보건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1981.12.31) 당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정하였으나, 벌칙의 상향조정 필요성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개정(1990.1.13) 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였다. 이후 제6차 개정(1996.12.31)에서는 타 법령의 유사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 보다 낮은 형량으로 인해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정하는 등 그 법정형을 높여왔다. 또한 사업주의 적극적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규정을 도입(2006.3.24)하였다.

그럼에도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주의 범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상향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본 연구의 인식조사 결과도 현행 처벌규정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0%에 불과하여 법정형 상향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

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 위반, 그리고 그로 인한 치사의 결과에 대해 법정형의 상향만이 해답은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나 전부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와 같은 결과적 가중범을 처벌하는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은 그 위반 시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정형보다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지만, 법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형사처벌의 실태를 보면 약식명령의 청구사건이 대부분이고, 구약식 사건에서 선고되는 형벌도 대부분이 벌금형이며 선고되는 형량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선고형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법정형의 상향논의도 필요하겠지만, 현재의 법정형이 법 위반 시에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에 있어서 법원의 인식전환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의 인식조사 결과에서 양형기준이 부적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44.7%가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바로 이러한 문제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 시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에 대한 가장 실효적인 대응방안은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을 규범적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인식 조사결과 일반국민들은 산업안전·보건관련 법령 준수 수준이 사업자와 근로자에 상관없이 모두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에 대한 순응도 및 적정성 인식에서는 대부분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지도 및 신뢰도는 낮은 반면 처벌을 보다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인지도는 경영자단체나 노동단체에 비하여 일반국민의 인지도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서 그 정확한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개정된 법안 중 처벌강화 및 수감명령

에 대해서도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현행 양형기준의 가중 및 감경요인들에 대하여 대부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은 낮은 만큼 이에 대한 양형기준의 설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한국산업안전공단·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관한 벌칙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8.
2. 김성룡·이진국·김도우·조흠학·김기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연구보고서, 고용노동부 용역과제, 2018.
3. 김성은·김성언, 환경범죄의 형사처리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9.
4. 송강직, 일본에서의 과로자살 법리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제28권 2집,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12.
5. 양형위원회, 2018 양형기준, 2018.
6. 이진국, 양형의 이론과 실제, 피앤씨미디어, 2018.
7. 조흠학, 세계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형사처벌제도와 처벌사례 연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8. Health and Safety Executive, Enforcement statistics in Great Britain, 2018.
9. Sentencing Council, Health and Safety Offences, Corporate Manslaughter and Food Safety and Hygiene Offences. 2016.
10. 中央労働災害防止協會, 労働衛生のしおり, 2018년도, 2018.
11. 厚生労働省労働基準局, 平成27年労働基準監督年報 (第68回), 2017.
12. 木村嘉勝, よくわかる労働安全衛生法, 労働調査會, 2019.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anctions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Jin Kuk LEE(Law School, Ajou University)

Kang Jik Song(Law School, Dong-A University)

Do Woo Kim(Department of Police Scicenc, Kyungnam University)

Seung Kuk Yang(Human Right Center, Ajou University)

Object

This study aimed increase in awareness of cases involving violation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OSH Act) by the courts and the prosecution. It also aims to secure sentences appropriate for the responsibility of violators of the OSH Act and prevent repeat offenses.

Method

The survey is aimed at collecting opinions and exploring general awareness related to the OSH Act of the general public. This includes a survey on the recognition of matters related to the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 criteria for sentencing. The survey is conducted by using an online panel survey method that extracts proportionate samples by gender, region and age from 1,000 people. In addition, in order to compare differences in perception among groups with respect to the OSH Act, the comparison analyses were conducted among the general public by dividing groups of management (employers) from groups of workers (employees). The survey of interest groups was

conducted on a sample of 100 management and 100 workers.

Result

The result of the survey indicated that the general public recognized that both employers and workers had low levels of compliance with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related laws. The survey also found that there is a low awareness of punishment regulations. However, most of them were highly recognized for their compliance with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law's punishment regulations and their perception of propriety. In view of this, it can be understood that while there is generally less confidence in the current punishment rules for the OSH Act, people agree that enhancing its effectiveness by strengthening penalties is a desirable option.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people did not understand the exact contents of the revised OSH Act, although they were highly aware of it. Most people also agreed on tougher punishment and mandatory education. Moreover, the weighting and reduction factors of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related to the OSH Act were deemed as important.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recognition of relative importance on some issues needs to be more specific about the setting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for them.

The differences in industry perceptions of the OSH Act are as follows. In general, the general public engaged in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industries directly applied to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related statutes showed a higher level of awareness than the general public did not. Although there a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level of recognition between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it was analyzed that the level of recognition in the service industry is somewhat weaker than in the manufacturing and construction industries.

Conclusion

Social calls continue to be made for employers to raise penalties for violations of the law in order to prevent occupational accidents. It would not be the only answer to the

question of whether a court sentence should be considered as the only way to prevent violations of the law and the consequent death. The results of the study further demonstrated that 44.7% of those who said the sentencing criteria were inadequate argued that stricter guidelines are needed. In conclusion, it's difficul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to enforce duty for safety and health procedure under the OSH Act because the sentencing criteria is lower than the usual standard for punishment of the crime of death by occupational negligence. Therefor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proposed that the recommended sentencing scope should be raised by adjusting the existing criteria in a normative manner:

A Proposal of a countermeasure; the Criminal Policy for the crime of death by negligence of duty for safety and health procedure under the OSH Act

- Deriving the need to enhance the legal penalty for the crime of death by negligence of duty for safety and health procedure under the OSH Act
- Propose the need for normative adjustment to the penalty criteria for the crime of death by negligence of duty for safety and health procedure under the OSH Act

Analyze the results of a survey on perception about sanctions and sentencing guidelines of the OSH Act for the first time in Korea

- Based on the results, the government provides the basis for strengthening punishment and preparing the criteria for punishment in the OSH Act
- By comparing and analyzing elements of preconceptions and prejudices of management and labor organizations in relation to the interests of the general public, it is possible to present policy directions that can resolve conflicts among interest groups.

Keywords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anctions Recognition Survey, Duty for Safety and Health Procedure, Crime of Death by Negligence of Duty for Safety and Health Procedure, Sentencing Guidelines.

부록 : 교차분석표

1.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 및 관리현황

가. 근로자 및 사업주(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

<부록 표 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969(잘 모름 / 무응답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명)	높음	낮음	보통	통계값
전체		969	8.6	61.2	27.1	
성별	남자	495	9.9	60.9	27.1	1.884 (df=2)
	여자	474	7.3	61.5	27.1	
연령	20대*	187	11.8	56.9	27.2	4.940 (df=8)
	30대	182	6.8	61.6	27.4	
	40대	220	7.2	64.4	27.5	
	50대	225	9.1	62.8	25.5	
	60대 이상	155	8.0	59.3	28.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23	9.8	59.0	26.5	5.938 (df=6)
	전문대학 졸업/재학	171	10.1	62.0	23.5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82	8.6	61.7	27.9	
	대학원 졸업/재학	93	3.1	62.5	31.3	
권역	서울	194	6.7	66.7	26.2	12.244 (df=10)
	경기/인천	307	9.6	60.4	28.1	
	대전/충청	99	8.6	60.0	25.7	
	광주/전라	88	8.4	47.4	36.8	
	부산/대구/울산/경상	241	9.2	64.5	22.3	
	제주/강원	40	7.3	56.1	34.1	
업종	제조업	156	13.9	52.5	32.3	13.916* (df=6)
	건설업	66	8.7	65.2	21.7	
	서비스업	243	9.8	60.2	28.9	
	해당없음	504	6.5	63.8	25.4	

* p<.05

**<부록 표 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경영자(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971명(잘 모름 / 무응답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높음	낮음	보통	통계값
전체		971	7.6	66.2	26.2	
성별	남자	495	9.5	63.8	26.7	5.618 (df=2)
	여자	476	5.7	68.7	25.6	
연령	20대*	188	11.2	62.8	26.1	5.103 (df=8)
	30대	181	7.2	68.5	24.3	
	40대	219	7.3	66.7	26.0	
	50대	226	6.2	67.3	26.5	
	60대 이상	157	6.4	65.6	28.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24	9.8	63.8	26.3	6.810 (df=6)
	전문대학 졸업/재학	170	9.4	66.5	24.1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84	7.0	66.5	26.4	
	대학원 졸업/재학	93	2.2	69.9	28.0	
권역	서울	193	8.3	66.8	24.9	10.031 (df=10)
	경기/인천	309	6.8	68.9	24.3	
	대전/충청	99	9.1	66.7	24.2	
	광주/전라	90	10.0	52.2	37.8	
	부산/대구/울산/경상	240	6.7	67.1	26.3	
	제주/강원	40	7.5	67.5	25.0	
업종	제조업	157	10.8	54.1	35.0	20.688** (df=6)
	건설업	66	6.1	57.6	36.4	
	서비스업	242	8.7	65.3	26.0	
	해당없음	506	6.3	71.5	22.1	

** p<.01

<부록 표 1-3> 직업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711명(잘 모름 / 무응답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높음	낮음	보통	통계값
전체		711	10.0	63.3	26.7	
직업	관리자	78	11.5	61.5	26.9	11.184 (df=18)
	전문가	84	14.3	57.1	28.6	
	기술공 및 준전문가	35	11.4	51.4	37.1	
	사무 종사자	256	8.6	65.6	25.8	
	서비스 종사자	121	7.4	67.8	24.8	
	판매 종사자	39	12.8	59.0	28.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0.0	72.7	27.3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68.0	2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66.7	16.7	
	단순노무 종사자	56	14.3	60.7	25.0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	12.3	69.2	18.5	23.231* (df=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67	20.9	53.7	25.4	
	임금근로자 (피고용자)	525	8.2	63.4	28.4	
	무급가족종사자	9	33.3	55.6	11.1	
	그 외 종사자	44	6.8	70.5	22.7	
	기타	1	0.0	0.0	100.0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여부	그렇다	190	8.4	63.7	27.9	.919 (df=4)
	그렇지 않다	401	10.7	63.3	25.9	
	해당 없음	120	10.0	62.5	27.5	

* $p<.05$

<부록 표 1-4> 경영자(사용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710명(잘 모름 / 무응답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높음	낮음	보통	통계값
전체		710	8.2	65.9	25.9	
직업	관리자	78	10.3	55.1	34.6	18.231 (df=18)
	전문가	85	14.1	67.1	18.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6	5.6	61.1	33.3	
	사무 종사자	255	7.1	67.8	25.1	
	서비스 종사자	119	5.9	69.7	24.4	
	판매 종사자	39	10.3	64.1	25.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0.0	81.8	1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60.0	3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83.3	0.0	
	단순노무 종사자	56	8.9	64.3	26.8	
종사상 지위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65	12.3	69.2	18.5	12.437 (df=1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67	13.4	56.7	29.9	
	임금근로자 (피고용자)	527	7.0	67.0	26.0	
	무급가족종사자	9	0.0	55.6	44.4	
	그 외 종사자	41	9.8	65.9	24.4	
	기타	1	0.0	0.0	100.0	
(사업장) 노동조합 조직여부	그렇다	190	11.6	63.2	25.3	4.766 (df=4)
	그렇지 않다	401	7.5	66.6	25.9	
	해당 없음	119	5.0	68.1	26.9	

<부록 표 1-5> 업종별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높음	낮음	보통	통계값
전체		465	11.2	59.4	29.5	
업종 (n=465)	제조업	156	14.1	53.2	32.7	5.351 (df=4)
	건설업	66	9.1	68.2	22.7	
	서비스업	243	9.9	60.9	29.2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299	10.5	56.4	31.1	7.768 (df=6)
	120~500억 미만	83	15.7	57.8	26.5	
	500~1,000억 미만	29	13.3	70.0	13.3	
	1,000억 이상	54	5.5	63.6	29.1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4	11.5	55.0	31.7	11.856 (df=10)
	50~99인	53	20.8	58.5	20.8	
	100~299인	47	10.4	52.1	35.4	
	300~499인	24	4.2	58.3	37.5	
	500~999인	26	11.5	65.4	23.1	
	1,000인 이상	35	2.9	68.6	28.6	

<부록 표 1-6> 업종별 경영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준수수준 인식(일반국민)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높음	낮음	보통	통계값
전체		465	9.0%	60.4%	30.5%	
업종 (n=465)	제조업	157	10.8%	54.1%	35.0%	6.682 (df=4)
	건설업	66	6.1%	57.6%	36.4%	
	서비스업	242	8.7%	65.3%	26.0%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299	8.4%	59.2%	32.4%	5.652 (df=6)
	120~500억 미만	83	13.3%	63.9%	22.9%	
	500~1,000억 미만	29	10.3%	65.5%	24.1%	
	1,000억 이상	54	5.6%	59.3%	35.2%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4	8.9%	59.8%	31.3%	8.847 (df=10)
	50~99인	53	17.0%	56.6%	26.4%	
	100~299인	47	4.3%	66.0%	29.8%	
	300~499인	24	16.7%	58.3%	25.0%	
	500~999인	26	3.8%	61.5%	34.6%	
	1,000인 이상	35	8.6%	68.6%	22.9%	

※ 업종에서 해당 없음(527)이 우선 제외, 상시근로자수는 건설업(49)을 제외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 한해 산출

나.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의 정기적 제공 수준

**<부록 표 1-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인식(일반국민)**

N=969(잘 모름 / 무응답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제공	미제공	보통	통계값
전체		959	16.0	56.2	27.8	
성별	남자	491	19.3	53.2	27.5	8.971* (df=2)
	여자	468	12.4	59.4	28.2	
연령	20대*	188	16.5	51.6	31.9	10.695 (df=8)
	30대	179	12.3	63.1	24.6	
	40대	215	15.8	59.1	25.1	
	50대	220	16.4	51.4	32.3	
	60대 이상	157	19.1	56.7	24.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26	17.7	55.8	26.5	1.754 (df=6)
	전문대학 졸업/재학	168	16.1	56.5	27.4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74	15.8	56.1	28.1	
	대학원 졸업/재학	91	12.1	57.1	30.8	
권역	서울	188	13.3	60.6	26.1	13.298 (df=10)
	경기/인천	306	15.4	56.9	27.8	
	대전/충청	98	19.4	59.2	21.4	
	광주/전라	89	19.1	47.2	33.7	
	부산/대구/울산/경상	238	16.4	56.7	26.9	
	제주/강원	40	15.0	40.0	45.0	
업종	제조업	156	26.3	42.9	30.8	36.517*** (df=6)
	건설업	67	22.4	49.3	28.4	
	서비스업	242	12.8	51.7	35.5	
	해당없음	494	13.4	63.6	23.1	

* $p<.05$

**<부록 표 1-8> 직업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인식
(일반국민)**

N=726명(잘 모름 / 무응답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제공	미제공	보통	통계값
전체		704	16.9	54.0	29.1	
직업	관리자	78	29.5	38.5	32.1	27.722 (df=18)
	전문가	81	19.8	54.3	25.9	
	기술공 및 준전문가	37	21.6	48.6	29.7	
	사무 종사자	252	15.5	55.6	29.0	
	서비스 종사자	120	8.3	60.0	31.7	
	판매 종사자	39	12.8	53.8	3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0	20.0	70.0	1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12.0	60.0	2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50.0	50.0	0.0	
	단순노무 종사자	56	17.9	53.6	28.6	

**<부록 표 1-9> 업종별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 관련 정보제공 수준 인식
(일반국민)**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제공	미제공	보통	통계값
전체		465	18.7%	48.4%	32.9%	
업종 (n=465)	제조업	156	26.3%	42.9%	30.8%	12.412* (df=4)
	건설업	67	22.4%	49.3%	28.4%	
	서비스업	242	12.8%	51.7%	35.5%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299	14.4%	51.5%	34.1%	15.984* (df=6)
	120~500억 미만	83	24.1%	37.3%	38.6%	
	500~1,000억 미만	29	27.6%	55.2%	17.2%	
	1,000억 이상	54	29.6%	44.4%	25.9%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4	13.6%	50.0%	36.4%	11.710 (df=10)
	50~99인	53	26.4%	37.7%	35.8%	
	100~299인	47	23.4%	44.7%	31.9%	
	300~499인	24	16.7%	50.0%	33.3%	
	500~999인	26	23.1%	46.2%	30.8%	
	1,000인 이상	34	23.5%	58.8%	17.6%	

*p<.05

다. 산업재해예방방법에 대한 인식(2008년 비교)

**<부록 표 1-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중복응답)**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전체		1,000	61.4	59.7	23.8	14.4	29.4	11.0
성별	남자	506	62.5	59.3	24.7	12.8	29.4	10.7
	여자	494	60.3	60.1	22.9	16.0	29.4	11.3
연령	20대*	195	63.1	54.9	21.5	21.0	31.3	8.2
	30대	190	62.1	53.2	23.2	19.5	32.6	8.9
	40대	222	62.6	54.1	27.9	14.9	30.2	10.4
	50대	231	57.1	64.9	26.4	10.4	27.3	13.0
	60대 이상	162	63.0	73.5	17.9	5.6	25.3	14.8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54.7	66.2	23.9	16.2	25.6	12.8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58.7	55.3	30.2	15.1	28.5	12.3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65.0	57.2	21.4	12.8	33.0	10.2
	대학원 졸업/재학	96	64.6	64.6	24.0	16.7	21.9	8.3
권역	서울	195	63.1	57.4	21.5	15.9	30.3	11.3
	경기/인천	313	64.9	62.9	22.0	12.5	29.1	8.3
	대전/충청	105	59.0	57.1	21.0	17.1	29.5	16.2
	광주/전라	95	52.6	62.1	25.3	18.9	28.4	12.6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58.2	57.8	28.3	14.7	29.1	11.6
	제주/강원	41	73.2	58.5	24.4	2.4	31.7	9.8
업종	제조업	158	60.8	60.8	25.3	15.8	27.8	9.5
	건설업	69	59.4	63.8	20.3	7.2	33.3	15.9
	서비스업	246	63.4	61.4	25.6	14.2	23.2	11.8
	해당없음	527	60.9	58.1	23.0	15.0	32.3	10.4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기타제외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1순위)**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통계값
전체		1,000	44.2	23.6	10.1	5.1	14.1	2.7	
성별	남자	506	46.6	21.7	10.3	4.2	14.2	2.6	6.756 (df=6)
	여자	494	41.7	25.5	9.9	6.1	14.0	2.8	
연령	20대*	195	47.2	20.5	9.7	9.2	11.8	1.5	28.730 (df=24)
	30대	190	43.2	21.6	8.9	7.9	14.7	3.2	
	40대	222	41.4	25.2	10.4	3.2	16.2	3.6	
	50대	231	42.4	24.2	13.0	3.5	13.9	2.6	
	60대 이상	162	48.1	26.5	7.4	1.9	13.6	2.5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41.0	27.8	11.5	6.4	10.3	2.6	21.044 (df=18)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39.1	23.5	12.8	6.1	16.2	2.2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48.1	22.2	7.3	4.3	15.1	2.9	
	대학원 졸업/재학	96	41.7	20.8	15.6	4.2	14.6	3.1	
권역	서울	195	45.6	23.6	7.2	4.1	16.4	2.6	21.929 (df=30)
	경기/인천	313	44.1	24.0	8.9	6.1	12.8	3.8	
	대전/충청	105	45.7	24.8	9.5	7.6	11.4	1.0	
	광주/전라	95	35.8	22.1	13.7	7.4	17.9	3.2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44.2	24.3	12.4	3.2	13.9	2.0	
	제주/강원	41	53.7	17.1	12.2	2.4	12.2	2.4	
업종	제조업	158	45.6	24.1	12.7	2.5	12.7	2.5	14.961 (df=18)
	건설업	69	42.0	24.6	8.7	2.9	17.4	4.3	
	서비스업	246	45.5	23.6	11.4	5.7	10.2	3.7	
	해당없음	527	43.5	23.3	8.9	5.9	15.9	2.1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2순위)**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통계값
전체		1,000	17.2	36.1	13.7	9.3	15.3	8.3	
성별	남자	506	15.8	37.5	14.4	8.7	15.2	8.1	3.572 (df=6)
	여자	494	18.6	34.6	13.0	9.9	15.4	8.5	
연령	20대*	195	15.9	34.4	11.8	11.8	19.5	6.7	45.490** (df=24)
	30대	190	18.9	31.6	14.2	11.6	17.9	5.8	
	40대	222	21.2	28.8	17.6	11.7	14.0	6.8	
	50대	231	14.7	40.7	13.4	6.9	13.4	10.4	
	60대 이상	162	14.8	46.9	10.5	3.7	11.7	12.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13.7	38.5	12.4	9.8	15.4	10.3	24.331 (df=18)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19.6	31.8	17.3	8.9	12.3	10.1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16.9	35.0	14.1	8.6	17.9	7.3	
	대학원 졸업/재학	96	22.9	43.8	8.3	12.5	7.3	5.2	
권역	서울	195	17.4	33.8	14.4	11.8	13.8	8.7	37.458 (df=30)
	경기/인천	313	20.8	39.0	13.1	6.4	16.3	4.5	
	대전/충청	105	13.3	32.4	11.4	9.5	18.1	15.2	
	광주/전라	95	16.8	40.0	11.6	11.6	10.5	9.5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13.9	33.5	15.9	11.6	15.1	9.6	
	제주/강원	41	19.5	41.5	12.2		19.5	7.3	
업종	제조업	158	15.2	36.7	12.7	13.3	15.2	7.0	11.810 (df=18)
	건설업	69	17.4	39.1	11.6	4.3	15.9	11.6	
	서비스업	246	17.9	37.8	14.2	8.5	13.0	8.1	
	해당없음	527	17.5	34.7	14.0	9.1	16.3	8.3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 p<.01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3> 직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일반국민, 중복)**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전체		726	61.8	59.5	24.2	14.5	29.3	10.2
직업	관리자	78	64.1	65.4	23.1	7.7	28.2	11.5
	전문가	88	69.3	58.0	22.7	18.2	26.1	5.7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56.4	59.0	23.1	20.5	33.3	7.7
	사무 종사자	258	65.1	55.8	23.6	14.7	31.4	8.9
	서비스 종사자	122	55.7	64.8	23.8	17.2	23.8	13.9
	판매 종사자	39	64.1	53.8	35.9	10.3	28.2	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81.8	54.5	18.2	9.1	27.3	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52.0	64.0	32.0	12.0	24.0	1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50.0	33.3	33.3	16.7	50.0	16.7
	단순노무 종사자	60	50.0	65.0	21.7	11.7	36.7	15.0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기타 제외)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4> 직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일반국민, 1순위)**

N=726명(기타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통계값
전체		726	45.5	22.6	10.2	4.5	14.2	2.8	
직업	관리자	78	42.3	29.5	7.7	1.3	17.9	1.3	47.503 (df=54)
	전문가	88	51.1	18.2	6.8	4.5	17.0	2.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38.5	17.9	15.4	5.1	17.9	5.1	
	사무 종사자	258	49.2	21.3	9.7	4.7	12.0	3.1	
	서비스 종사자	122	39.3	27.9	13.1	5.7	10.7	2.5	
	판매 종사자	39	46.2	15.4	12.8	7.7	15.4	0.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54.5	9.1	0.0	9.1	27.3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32.0	24.0	20.0	4.0	16.0	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16.7	0.0	0.0	33.3	16.7	
	단순노무 종사자	60	46.7	25.0	8.3	3.3	13.3	3.3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5> 직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일반국민, 2 순위)**

N=726명(기타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통계값
전체		726	16.4	36.9	14.0	9.9	15.2	7.4	
직업	관리자	78	21.8	35.9	15.4	6.4	10.3	10.3	49.183 (df=54)
	전문가	88	18.2	39.8	15.9	13.6	9.1	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17.9	41.0	7.7	15.4	15.4	2.6	
	사무 종사자	258	15.9	34.5	14.0	10.1	19.4	5.8	
	서비스 종사자	122	16.4	36.9	10.7	11.5	13.1	11.5	
	판매 종사자	39	17.9	38.5	23.1	2.6	12.8	5.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27.3	45.5	18.2	0.0	0.0	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20.0	40.0	12.0	8.0	8.0	1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16.7	33.3	16.7	16.7	0.0	
	단순노무 종사자	60	3.3	40.0	13.3	8.3	23.3	11.7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6> 업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일반국민, 중복)**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전체		473	61.9	61.5	24.7	13.7	26.2	11.6
업종 (n=465)	제조업	158	60.8	60.8	25.3	15.8	27.8	9.5
	건설업	69	59.4	63.8	20.3	7.2	33.3	15.9
	서비스업	246	63.4	61.4	25.6	14.2	23.2	11.8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305	59.3	61.3	24.9	13.8	26.6	14.1
	120~500억 미만	83	75.9	61.4	19.3	13.3	21.7	8.4
	500~1,000억 미만	30	53.3	70.0	23.3	13.3	26.7	10.0
	1,000억 이상	55	60.0	58.2	32.7	14.5	30.9	3.6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8	62.4	64.7	24.3	11.5	24.3	12.8
	50~99인	53	62.3	60.4	30.2	22.6	17.0	7.5
	100~299인	48	64.6	45.8	20.8	20.8	37.5	10.4
	300~499인	24	62.5	62.5	33.3	4.2	29.2	8.3
	500~999인	26	73.1	73.1	15.4	11.5	15.4	11.5
	1,000인 이상	35	51.4	51.4	34.3	25.7	28.6	5.7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기타제외)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7> 업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일반국민, 1 순위)**

N=473명/404명(기타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통계값
전체		473	45.0	23.9	11.4	4.2	12.1	3.4	
업종 (n=473명)	제조업	158	45.6	24.1	12.7	2.5	12.7	2.5	6.453 (df=10)
	건설업	69	42.0	24.6	8.7	2.9	17.4	4.3	
	서비스업	246	45.5	23.6	11.4	5.7	10.2	3.7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44.3	23.6	10.8	4.9	12.5	3.9	14.559 (df=15)
	120~500억 미만	83	50.6	28.9	9.6	1.2	8.4	1.2	
	500~1,000억 미만	30	30.0	26.7	13.3	3.3	23.3	3.3	
	1,000억 이상	55	49.1	16.4	16.4	5.5	9.1	3.6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44.5	26.1	10.1	4.6	11.9	2.8	23.079 (df=25)
	50~99인	53	45.3	30.2	13.2	3.8	5.7	1.9	
	100~299인	48	50.0	14.6	12.5	6.3	12.5	4.2	
	300~499인	24	50.0	8.3	25.0	0.0	16.7	0.0	
	500~999인	26	50.0	26.9	3.8	0.0	11.5	7.7	
	1,000인 이상	35	40.0	20.0	17.1	8.6	8.6	5.7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부록 표 1-18> 업종별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방법 인식
(일반국민, 2 순위)**

N=473명/404명(기타 제외),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통계값
전체		473	16.9	37.6	13.3	9.5	14.2	8.2	
업종 (n=473)	제조업	158	15.2	36.7	12.7	13.3	15.2	7.0	6.453 (df=10)
	건설업	69	17.4	39.1	11.6	4.3	15.9	11.6	
	서비스업	246	17.9	37.8	14.2	8.5	13.0	8.1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15.1	37.7	14.1	8.9	14.1	10.2	14.559 (df=15)
	120~500억 미만	83	25.3	32.5	9.6	12.0	13.3	7.2	
	500~1,000억 미만	30	23.3	43.3	10.0	10.0	3.3	6.7	
	1,000억 이상	55	10.9	41.8	16.4	9.1	21.8	0.0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17.9	38.5	14.2	6.9	12.4	10.1	23.079 (df=25)
	50~99인	53	17.0	30.2	17.0	18.9	11.3	5.7	
	100~299인	48	14.6	31.3	8.3	14.6	25.0	6.3	
	300~499인	24	12.5	54.2	8.3	4.2	12.5	8.3	
	500~999인	26	23.1	46.2	11.5	11.5	3.8	3.8	
	1,000인 이상	35	11.4	31.4	17.1	17.1	20.0	0.0	

A.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C.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E.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B.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D. 정부의 지원 확대,

F.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2. 산업안전보건법 처벌에 대한 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대한 인지도

<부록 표 2-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처벌규정의 인지여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알고있음	모름	보통	통계값
전체		1,000	22.2	27.4	50.4	
성별	남자	506	27.5	28.3	44.3	20.733*** (df=2)
	여자	494	16.8	26.5	56.7	
연령	20대*	195	24.6	21.0	54.4	14.500 (df=8)
	30대	190	18.9	24.2	56.8	
	40대	222	21.2	32.0	46.8	
	50대	231	19.9	30.7	49.4	
	60대 이상	162	27.8	27.8	44.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23.9	28.6	47.4	5.449 (df=6)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21.2	24.0	54.7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21.6	29.3	49.1	
	대학원 졸업/재학	96	22.9	20.8	56.3	
권역	서울	195	25.6	23.6	50.8	14.208 (df=10)
	경기/인천	313	19.2	30.7	50.2	
	대전/충청	105	21.9	24.8	53.3	
	광주/전라	95	29.5	28.4	42.1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22.7	25.1	52.2	
	제주/강원	41	9.8	39.0	51.2	
업종	제조업	158	34.8	36.1	29.1	70.715*** (df=6)
	건설업	69	40.6	20.3	39.1	
	서비스업	246	23.2	31.7	45.1	
	해당없음	527	15.6	23.7	60.7	

*** p<.001

<부록 표 2-2> 직업별 따른 처벌규정의 인지여부(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인지	모름	보통	통계값
전체		726	25.9	28.2	45.9	
직업	관리자	78	44.9	28.2	26.9	36.363** (df=18)
	전문가	88	31.8	23.9	44.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30.8	30.8	38.5	
	사무 종사자	258	22.1	30.6	47.3	
	서비스 종사자	122	18.9	24.6	56.6	
	판매 종사자	39	23.1	30.8	46.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36.4	27.3	36.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12.0	32.0	5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66.7	16.7	
	단순노무 종사자	60	26.7	23.3	50.0	

** p<.01, *** p<.001

<부록 표 2-3> 업종별 따른 처벌규정의 인지여부(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인지	모름	보통	통계값
전체		473	29.6%	31.5%	38.9%	
업종 (n=473)	제조업	158	34.8%	36.1%	29.1%	17.840* (df=4)
	건설업	69	40.6%	20.3%	39.1%	
	서비스업	246	23.2%	31.7%	45.1%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27.2%	31.1%	41.6%	7.054 (df=6)
	120~500억 미만	83	37.3%	32.5%	30.1%	
	500~1,000억 미만	30	40.0%	23.3%	36.7%	
	1,000억 이상	55	25.5%	36.4%	38.2%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28.0%	31.2%	40.8%	16.937 (df=10)
	50~99인	53	34.0%	30.2%	35.8%	
	100~299인	48	22.9%	43.8%	33.3%	
	300~499인	24	25.0%	37.5%	37.5%	
	500~999인	26	50.0%	23.1%	26.9%	
	1,000인 이상	35	8.6%	42.9%	48.6%	

*p<.05

나. 산업안전보건 규제의 인정도

<부록 표 2-4> 일반적 특성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전체		1,000	92.3	88.4	68.6	56.7	48.2	28.0
성별	남자	506	93.7	88.3	69.6	55.7	47.6	27.5
	여자	494	90.9	88.5	67.6	57.7	48.8	28.5
연령	20대*	195	92.8	88.2	68.2	57.4	53.8	31.8
	30대	190	86.3	83.7	60.5	51.6	45.3	27.9
	40대	222	93.2	89.6	70.3	57.7	45.5	27.0
	50대	231	95.7	89.6	70.6	58.0	47.2	25.5
	60대 이상	162	92.6	90.7	73.5	58.6	50.0	28.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92.3	87.2	72.6	62.4	49.6	33.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89.4	87.2	66.5	55.3	46.4	31.3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94.5	90.4	68.2	55.0	47.0	23.8
	대학원 졸업/재학	96	86.5	83.3	64.6	54.2	54.2	30.2
권역	서울	195	93.3	87.7	66.7	54.9	44.6	25.6
	경기/인천	313	94.6	89.8	69.0	55.9	49.2	26.5
	대전/충청	105	90.5	87.6	66.7	54.3	51.4	34.3
	광주/전라	95	85.3	85.3	72.6	56.8	45.3	25.3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91.6	88.8	69.3	60.2	48.2	28.7
	제주/강원	41	95.1	87.8	65.9	56.1	56.1	36.6
업종	제조업	158	93.7	88.0	70.3	61.4	56.3	37.3
	건설업	69	95.7	89.9	71.0	52.2	46.4	31.9
	서비스업	246	92.7	91.1	72.4	60.2	49.6	29.3
	해당없음	527	91.3	87.1	66.0	54.3	45.4	24.1

A. 경영자의 규제 의무는 중요
C. 경영자의 준수가 용이함
E. 현행법의 처벌이 적절함
(비동의, 잘 모름 제외)

B. 경영자의 의무의 산업·보건재해 예방에 도움
D. 담당행정기관의 집행 적절함
F. 경영자의 의무 잘 준수되고 있음

<부록 표 2-5> 직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전체		726	92.4	88.0	68.2	57.3	47.8	29.2
직업	관리자	78	98.7	87.2	71.8	56.4	52.6	24.4
	전문가	88	92.0	88.6	61.4	56.8	44.3	31.8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92.3	79.5	76.9	61.5	48.7	35.9
	사무 종사자	258	91.9	87.6	62.8	53.9	43.8	29.1
	서비스 종사자	122	93.4	91.0	78.7	62.3	50.0	27.9
	판매 종사자	39	89.7	97.4	69.2	53.8	41.0	28.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100.0	81.8	63.6	72.7	54.5	36.4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84.0	84.0	68.0	64.0	68.0	3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00.0	100.0	66.7	50.0	50.0	33.3
	단순노무 종사자	60	88.3	85.0	70.0	58.3	53.3	28.3

A. 경영자의 규제 의무는 중요

B. 경영자의 의무의 산업·보건재해 예방에 도움

C. 경영자의 준수가 용이함

D. 담당행정기관의 집행 적절함

E. 현행법의 처벌이 적절함

F. 경영자의 의무 잘 준수되고 있음

(비동의, 잘 모름 제외)

<부록 표 2-6>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F
전체		473	93.4	89.9	71.5	59.4	51.4	32.3
업종 (n=473)	제조업	158	93.7	88.0	70.3	61.4	56.3	37.3
	건설업	69	95.7	89.9	71.0	52.2	46.4	31.9
	서비스업	246	92.7	91.1	72.4	60.2	49.6	29.3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93.8	89.5	74.1	59.3	51.1	32.1
	120~500억 미만	83	95.2	92.8	71.1	62.7	53.0	32.5
	500~1,000억 미만	30	86.7	83.3	56.7	43.3	56.7	33.3
	1,000억 이상	55	92.7	90.9	65.5	63.6	47.3	32.7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94.5	90.8	76.1	62.4	53.2	34.4
	50~99인	53	90.6	84.9	64.2	67.9	49.1	28.3
	100~299인	48	87.5	89.6	68.8	54.2	45.8	33.3
	300~499인	24	95.8	100.0	79.2	75.0	70.8	41.7
	500~999인	26	100.0	88.5	57.7	30.8	50.0	19.2
	1,000인 이상	35	88.6	85.7	62.9	60.0	48.6	28.6

- A. 경영자의 규제 의무는 중요B. 경영자의 의무의 산업·보건재해 예방에 도움
 C. 경영자의 준수가 용이함 D. 담당행정기관의 집행 적절함
 E. 현행법의 처벌이 적절함 F. 경영자의 의무 잘 준수되고 있음
 (비동의, 잘 모름 제외)

다. 처벌의 엄격성/일관성 평가

<부록 표 2-7> 일반적 특성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반성 인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처벌의 엄격성 인지			처벌의 일관성 인지		
			긍정	부정	통계값	긍정	부정	통계값
전체		1,000	20.1	79.9		20.9	79.1	
성별	남자	506	22.7	77.3	4.402 (df=1)	22.9	77.1	2.540 (df=2)
	여자	494	17.4	82.6		18.8	81.2	
연령	20대*	195	22.6	77.4	1.620 (df=4)	27.2	72.8	6.734 (df=4)
	30대	190	18.4	81.6		21.1	78.9	
	40대	222	20.7	79.3		19.8	80.2	
	50대	231	20.3	79.7		17.3	82.7	
	60대 이상	162	17.9	82.1		19.8	80.2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19.7	80.3	.539 (df=3)	19.2	80.8	2.653 (df=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20.1	79.9		20.7	79.3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19.8	80.2		20.6	79.4	
	대학원 졸업/재학	96	22.9	77.1		27.1	72.9	
권역	서울	195	20.0	80.0	4.123 (df=5)	21.0	79.0	4.324 (df=5)
	경기/인천	313	18.8	81.2		17.6	82.4	
	대전/충청	105	24.8	75.2		23.8	76.2	
	광주/전라	95	17.9	82.1		23.2	76.8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21.9	78.1		23.5	76.5	
	제주/강원	41	12.2	87.8		17.1	82.9	
업종	제조업	158	26.6	73.4	8.454* (df=3)	23.4	76.6	3.120 (df=3)
	건설업	69	23.2	76.8		27.5	72.5	
	서비스업	246	22.0	78.0		19.1	80.9	
	해당없음	527	16.9	83.1		20.1	79.9	

* p<.05

<부록 표 2-8> 직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반성 인지(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처벌의 엄격성 인지			처벌의 일반성 인지		
			긍정	부정	통계값	긍정	부정	통계값
전체		726	20.0	80.0		20.1	79.9	
직업	관리자	78	26.9	73.1	10.783 (df=9)	24.4	75.6	6.126 (df=9)
	전문가	88	20.5	79.5		15.9	84.1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23.1	76.9		23.1	76.9	
	사무 종사자	258	17.8	82.2		23.3	76.7	
	서비스 종사자	122	16.4	83.6		14.8	85.2	
	판매 종사자	39	15.4	84.6		17.9	8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1	90.9		18.2	8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28.0	72.0		20.0	8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0.0	100.0		16.7	83.3	
	단순노무 종사자	60	28.3	71.7		18.3	81.7	

**<부록 표 2-9>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처벌의 엄격성 및 일반성
인지(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처벌의 엄격성 인지			처벌의 일반성 인지		
			긍정	부정	통계값	긍정	부정	통계값
전체		473	23.7	76.3		21.8	78.2	
업종 (n=473)	제조업	158	26.6	73.4	1.152 (df=2)	23.4	76.6	2.624 (df=2)
	건설업	69	23.2	76.8		27.5	72.5	
	서비스업	246	22.0	78.0		19.1	80.9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23.3	76.7	.954 (df=3)	19.3	80.7	3.255 (df=3)
	120~500억 미만	83	26.5	73.5		27.7	72.3	
	500~1,000억 미만	30	26.7	73.3		23.3	76.7	
	1,000억 이상	55	20.0	80.0		25.5	74.5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21.1	78.9	8.978 (df=5)	17.0	83.0	8.636 (df=5)
	50~99인	53	26.4	73.6		22.6	77.4	
	100~299인	48	25.0	75.0		18.8	81.3	
	300~499인	24	16.7	83.3		25.0	75.0	
	500~999인	26	46.2	53.8		38.5	61.5	
	1,000인 이상	35	22.9	77.1		28.6	71.4	

라.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부록 표 2-10> 일반적 특성에 따른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4.3	45.7	37.6	12.4	50.0	50.0	
성별	남자	506	4.2	45.8	35.8	14.2	50.0	50.0	.000 (df=1)
	여자	494	4.5	45.5	39.5	10.5	50.0	50.0	
연령	20대*	195	4.6	46.2	35.4	13.8	50.8	49.2	.490 (df=4)
	30대	190	5.3	45.3	32.1	17.4	50.5	49.5	
	40대	222	2.7	48.2	39.2	9.9	50.9	49.1	
	50대	231	4.8	43.3	43.3	8.7	48.1	51.9	
	60대 이상	162	4.3	45.7	36.4	13.6	50.0	50.0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7.3	42.7	38.9	11.1	50.0	50.0	3.297 (df=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3.9	40.2	36.9	19.0	44.1	55.9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3.1	48.5	36.9	11.6	51.5	48.5	
	대학원 졸업/재학	96	4.2	49.0	39.6	7.3	53.1	46.9	
권역	서울	195	3.6	52.8	33.8	9.7	56.4	43.6	12.139* (df=5)
	경기/인천	313	4.2	45.4	38.7	11.8	49.5	50.5	
	대전/충청	105	7.6	41.0	40.0	11.4	48.6	51.4	
	광주/전라	95	3.2	47.4	33.7	15.8	50.5	49.5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4.8	45.0	36.3	13.9	49.8	50.2	
	제주/강원	41	0.0	26.8	58.5	14.6	26.8	73.2	
업종	제조업	158	6.3	52.5	29.7	11.4	58.9	41.1	8.286* (df=3)
	건설업	69	2.9	52.2	31.9	13.0	55.1	44.9	
	서비스업	246	6.1	44.3	38.6	11.0	50.4	49.6	
	해당없음	527	3.0	43.5	40.2	13.3	46.5	53.5	

* p<.05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2-11> 직업별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726	4.4	45.9	36.9	12.8	50.3	49.7	
직업	관리자	78	6.4	52.6	32.1	9.0	59.0	41.0	15.997 (df=9)
	전문가	88	4.5	35.2	46.6	13.6	39.8	60.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2.6	41.0	35.9	20.5	43.6	56.4	
	사무 종사자	258	2.7	51.9	34.5	10.9	54.7	45.3	
	서비스 종사자	122	4.9	41.0	41.0	13.1	45.9	54.1	
	판매 종사자	39	7.7	46.2	38.5	7.7	53.8	46.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0.0	27.3	36.4	36.4	27.3	7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12.0	44.0	28.0	16.0	56.0	4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66.7	0.0	16.7	83.3	16.7	
	단순노무 종사자	60	3.3	41.7	38.3	16.7	45.0	55.0	

*** p<.0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2-12> 업종별 현행 처벌규정의 적정성 인식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473	5.7	48.2	34.7	11.4	53.9	46.1	
업종 (n=473)	제조업	158	6.3	52.5	29.7	11.4	58.9	41.1	2.811 (df=2)
	건설업	69	2.9	52.2	31.9	13.0	55.1	44.9	
	서비스업	246	6.1	44.3	38.6	11.0	50.4	49.6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6.9	44.3	36.7	12.1	51.1	48.9	5.398 (df=3)
	120~500억 미만	83	6.0	53.0	32.5	8.4	59.0	41.0	
	500~1,000억 미만	30	3.3	43.3	36.7	16.7	46.7	53.3	
	1,000억 이상	55	0.0	65.5	25.5	9.1	65.5	34.5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7.8	45.0	36.2	11.0	52.8	47.2	1.093 (df=5)
	50~99인	53	5.7	49.1	35.8	9.4	54.7	45.3	
	100~299인	48	6.3	43.8	33.3	16.7	50.0	50.0	
	300~499인	24	8.3	45.8	33.3	12.5	54.2	45.8	
	500~999인	26	0.0	57.7	42.3	0.0	57.7	42.3	
	1,000인 이상	35	0.0	60.0	25.7	14.3	60.0	40.0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마. 처벌강화의 필요성

**<부록 표 2-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강화의
필요성 인식(일반국민)**

N=1,000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긍정	부정	보통	통계값
전체		1,000	71.1	9.9	19.0	
성별	남자	506	73.7	9.7	16.6	4.137 (df=2)
	여자	494	68.4	10.1	21.5	
연령	20대*	195	66.2	9.7	24.1	23.745* (df=8)
	30대	190	65.8	15.8	18.4	
	40대	222	71.6	5.4	23.0	
	50대	231	74.0	10.8	15.2	
	60대 이상	162	78.4	8.0	13.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65.8	12.8	21.4	12.294 (df=6)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73.7	12.3	14.0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73.3	7.1	19.6	
	대학원 졸업/재학	96	67.7	12.5	19.8	
권역	서울	195	76.4	10.8	12.8	11.939 (df=10)
	경기/인천	313	69.3	8.9	21.7	
	대전/충청	105	71.4	9.5	19.0	
	광주/전라	95	71.6	6.3	22.1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70.9	11.2	17.9	
	제주/강원	41	58.5	14.6	26.8	
업종	제조업	158	75.9	7.6	16.5	5.353 (df=6)
	건설업	69	72.5	11.6	15.9	
	서비스업	246	68.3	8.9	22.8	
	해당없음	527	70.8	10.8	18.4	

* p<.05

**<부록 표 2-14> 직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강화의 필요성 인식
(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긍정	부정	보통	통계값
전체		726	71.3	10.3	18.3	
직업	관리자	78	75.6	6.4	17.9	20.973 (df=18)
	전문가	88	75.0	12.5	12.5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64.1	12.8	23.1	
	사무 종사자	258	72.5	8.9	18.6	
	서비스 종사자	122	66.4	8.2	25.4	
	판매 종사자	39	71.8	10.3	17.9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0.9	9.1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56.0	24.0	2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83.3	16.7	0.0	
	단순노무 종사자	60	71.7	15.0	13.3	

**<부록 표 2-15> 업종별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강화의 필요성 인식
(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긍정	부정	보통	통계값
전체		473	71.5%	8.9%	19.7%	
업종 (n=473)	제조업	158	75.9%	7.6%	16.5%	4.184 (df=4)
	건설업	69	72.5%	11.6%	15.9%	
	서비스업	246	68.3%	8.9%	22.8%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69.5%	10.5%	20.0%	7.334 (df=6)
	120~500억 미만	83	73.5%	3.6%	22.9%	
	500~1,000억 미만	30	76.7%	13.3%	10.0%	
	1,000억 이상	55	76.4%	5.5%	18.2%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70.2%	8.7%	21.1%	6.191 (df=10)
	50~99인	53	71.7%	9.4%	18.9%	
	100~299인	48	77.1%	4.2%	18.8%	
	300~499인	24	58.3%	12.5%	29.2%	
	500~999인	26	73.1%	3.8%	23.1%	
	1,000인 이상	35	77.1%	11.4%	11.4%	

3.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평가 및 양형태도

가.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부록 표 3-1>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여부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3.8	25.3	38.2	32.7	
성별	남자	506	4.3	29.6	35.8	30.2	11.932** (df=3)
	여자	494	3.2	20.9	40.7	35.2	
연령	20대*	195	7.7	27.2	32.3	32.8	38.752*** (df=12)
	30대	190	2.1	28.9	29.5	39.5	
	40대	222	3.2	19.4	41.0	36.5	
	50대	231	2.6	29.4	38.5	29.4	
	60대 이상	162	3.7	21.0	51.2	24.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4.3	20.9	44.9	29.9	14.701 (df=9)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5.0	24.0	33.0	38.0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3.3	28.9	36.9	31.0	
	대학원 졸업/재학	96	3.1	19.8	38.5	38.5	
권역	서울	195	3.1	33.8	34.9	28.2	20.351 (df=15)
	경기/인천	313	5.1	24.0	38.7	32.3	
	대전/충청	105	4.8	24.8	31.4	39.0	
	광주/전라	95	1.1	25.3	45.3	28.4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3.6	21.5	38.6	36.3	
	제주/강원	41	2.4	19.5	48.8	29.3	
업종	제조업	158	7.6	37.3	32.9	22.2	55.194*** (df=9)
	건설업	69	2.9	39.1	39.1	18.8	
	서비스업	246	4.9	27.6	39.8	27.6	
	해당없음	527	2.3	18.8	38.9	40.0	

** p<.01, *** p<.001

<부록 표 3-2> 직업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도부(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726	4.4	29.2	37.3	29.1	
직업	관리자	78	6.4	39.7	32.1	21.8	39.607 (df=27)
	전문가	88	8.0	30.7	34.1	27.3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2.6	28.2	41.0	28.2	
	사무 종사자	258	2.7	32.2	34.9	30.2	
	서비스 종사자	122	3.3	23.8	42.6	30.3	
	판매 종사자	39	7.7	12.8	46.2	33.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1	36.4	36.4	1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32.0	40.0	2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33.3	33.3	0.0	
	단순노무 종사자	60	1.7	20.0	40.0	38.3	

* p<.05

<부록 표 3-3> 업종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인지도부(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473	5.5	32.6	37.4	24.5	
업종 (n=473)	제조업	158	7.6	37.3	32.9	22.2	9.679 (df=6)
	건설업	69	2.9	39.1	39.1	18.8	
	서비스업	246	4.9	27.6	39.8	27.6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218	5.5	28.9	36.7	28.9	17.211 (df=9)
	120~500억 미만	53	11.3	37.7	26.4	24.5	
	500~1,000억 미만	48	8.3	27.1	43.8	20.8	
	1,000억 이상	24	4.2	41.7	33.3	20.8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6	0.0	38.5	53.8	7.7	12.173 (df=15)
	50~99인	35	2.9	31.4	37.1	28.6	
	100~299인	305	5.2	28.2	39.7	26.9	
	300~499인	83	6.0	42.2	34.9	16.9	
	500~999인	30	6.7	46.7	33.3	13.3	
	1,000인 이상	55	5.5	34.5	30.9	29.1	

나. 가중처벌의 적정성

<부록 표 3-4>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7.7	55.2	29.0	8.1	62.9	37.1	
성별	남자	506	9.9	54.0	27.7	8.5	63.8	36.2	.383 (df=1)
	여자	494	5.5	56.5	30.4	7.7	61.9	38.1	
연령	20대*	195	14.9	53.8	25.1	6.2	68.7	31.3	6.007 (df=4)
	30대	190	5.8	53.7	30.5	10.0	59.5	40.5	
	40대	222	8.1	57.7	26.6	7.7	65.8	34.2	
	50대	231	4.3	56.3	29.9	9.5	60.6	39.4	
	60대 이상	162	5.6	53.7	34.0	6.8	59.3	40.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6.8	51.7	33.8	7.7	58.5	41.5	11.795* * (df=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10.1	44.7	34.6	10.6	54.7	45.3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7.7	59.9	24.4	7.9	67.6	32.4	
	대학원 졸업/재학	96	5.2	59.4	30.2	5.2	64.6	35.4	
권역	서울	195	6.7	57.9	27.2	8.2	64.6	35.4	6.074 (df=5)
	경기/인천	313	9.6	50.5	31.0	8.9	60.1	39.9	
	대전/충청	105	6.7	54.3	32.4	6.7	61.0	39.0	
	광주/전라	95	8.4	52.6	28.4	10.5	61.1	38.9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6.4	61.8	24.7	7.2	68.1	31.9	
	제주/강원	41	7.3	46.3	41.5	4.9	53.7	46.3	
업종	제조업	158	9.5	62.0	23.4	5.1	71.5	28.5	7.824 (df=3)
	건설업	69	2.9	52.2	34.8	10.1	55.1	44.9	
	서비스업	246	9.3	54.5	30.5	5.7	63.8	36.2	
	해당없음	527	7.0	53.9	29.2	9.9	60.9	39.1	

** p<.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3-5> 직업별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726	7.4	56.2	28.1	8.3	63.6	36.4	
직업	관리자	78	5.1	60.3	28.2	6.4	65.4	34.6	16.558 (df=9)
	전문가	88	9.1	48.9	35.2	6.8	58.0	42.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7.7	51.3	28.2	12.8	59.0	41.0	
	사무 종사자	258	7.4	64.3	22.9	5.4	71.7	28.3	
	서비스 종사자	122	7.4	51.6	30.3	10.7	59.0	41.0	
	판매 종사자	39	7.7	43.6	33.3	15.4	51.3	48.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18.2	18.2	36.4	27.3	36.4	6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60.0	36.0	0.0	64.0	3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33.3	16.7	16.7	66.7	33.3	
	단순노무 종사자	60	5.0	55.0	28.3	11.7	60.0	40.0	

*** p<.0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3-6> 업종별 가중처벌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473	8.5	56.7	28.8	6.1	65.1	34.9	
업종 (n=473)	제조업	158	9.5	62.0	23.4	5.1	71.5	28.5	6.097* (df=2)
	건설업	69	2.9	52.2	34.8	10.1	55.1	44.9	
	서비스업	246	9.3	54.5	30.5	5.7	63.8	36.2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9.2	53.4	31.1	6.2	62.6	37.4	4.142 (df=3)
	120~500억 미만	83	7.2	60.2	28.9	3.6	67.5	32.5	
	500~1,000억 미만	30	10.0	53.3	20.0	16.7	63.3	36.7	
	1,000억 이상	55	5.5	70.9	20.0	3.6	76.4	23.6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10.6	51.4	32.6	5.5	61.9	38.1	7.243 (df=5)
	50~99인	53	3.8	71.7	22.6	1.9	75.5	24.5	
	100~299인	48	8.3	56.3	27.1	8.3	64.6	35.4	
	300~499인	24	16.7	62.5	12.5	8.3	79.2	20.8	
	500~999인	26	19.2	53.8	26.9	0.0	73.1	26.9	
	1,000인 이상	35	0.0	74.3	17.1	8.6	74.3	25.7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다.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부록 표 3-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10.3	54.3	28.5	6.9	64.6	35.4	
성별	남자	506	11.3	54.0	26.1	8.7	65.2	34.8	.171 (df=1)
	여자	494	9.3	54.7	31.0	5.1	64.0	36.0	
연령	20대*	195	11.8	54.4	26.7	7.2	66.2	33.8	3.111 (df=4)
	30대	190	8.4	52.6	28.4	10.5	61.1	38.9	
	40대	222	9.9	57.2	29.7	3.2	67.1	32.9	
	50대	231	11.7	50.2	32.5	5.6	61.9	38.1	
	60대 이상	162	9.3	58.0	23.5	9.3	67.3	32.7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12.4	48.3	32.1	7.3	60.7	39.3	5.209 (df=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11.7	49.2	29.1	10.1	60.9	39.1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8.8	59.3	26.5	5.5	68.0	32.0	
	대학원 졸업/재학	96	10.4	53.1	29.2	7.3	63.5	36.5	
권역	서울	195	10.3	59.5	24.1	6.2	69.7	30.3	7.275 (df=5)
	경기/인천	313	11.2	51.8	31.3	5.8	62.9	37.1	
	대전/충청	105	9.5	50.5	30.5	9.5	60.0	40.0	
	광주/전라	95	13.7	53.7	25.3	7.4	67.4	32.6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8.8	57.0	27.1	7.2	65.7	34.3	
	제주/강원	41	7.3	43.9	39.0	9.8	51.2	48.8	
업종	제조업	158	10.1	60.1	22.2	7.6	70.3	29.7	3.918 (df=3)
	건설업	69	14.5	55.1	20.3	10.1	69.6	30.4	
	서비스업	246	13.0	49.2	30.1	7.7	62.2	37.8	
	해당없음	527	8.5	54.8	30.7	5.9	63.4	36.6	

** p<.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3-8> 직업별 수강명령 병과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726	10.5	53.6	28.1	7.9	64.0	36.0	
직업	관리자	78	9.0	60.3	21.8	9.0	69.2	30.8	16.629 (df=9)
	전문가	88	14.8	51.1	27.3	6.8	65.9	34.1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15.4	43.6	33.3	7.7	59.0	41.0	
	사무 종사자	258	8.9	61.6	22.1	7.4	70.5	29.5	
	서비스 종사자	122	12.3	43.4	37.7	6.6	55.7	44.3	
	판매 종사자	39	12.8	38.5	38.5	10.3	51.3	48.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1	27.3	18.2	45.5	36.4	6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56.0	32.0	8.0	60.0	4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50.0	16.7	16.7	66.7	33.3	
	단순노무 종사자	60	6.7	55.0	35.0	3.3	61.7	38.3	

*** p<.0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3-9> 업종별 수강명령의 적정성 인식(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473	12.3	53.7	26.0	8.0	66.0	34.0	
업종 (n=473)	제조업	158	10.1	60.1	22.2	7.6	70.3	29.7	6.097* (df=2)
	건설업	69	14.5	55.1	20.3	10.1	69.6	30.4	
	서비스업	246	13.0	49.2	30.1	7.7	62.2	37.8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11.8	51.8	27.9	8.5	63.6	36.4	4.142 (df=3)
	120~500억 미만	83	16.9	53.0	24.1	6.0	69.9	30.1	
	500~1,000억 미만	30	6.7	56.7	26.7	10.0	63.3	36.7	
	1,000억 이상	55	10.9	63.6	18.2	7.3	74.5	25.5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12.4	52.3	28.0	7.3	64.7	35.3	7.243 (df=5)
	50~99인	53	11.3	58.5	24.5	5.7	69.8	30.2	
	100~299인	48	14.6	47.9	29.2	8.3	62.5	37.5	
	300~499인	24	12.5	37.5	33.3	16.7	50.0	50.0	
	500~999인	26	11.5	65.4	23.1	0.0	76.9	23.1	
	1,000인 이상	35	5.7	62.9	20.0	11.4	68.6	31.4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4. 양형기준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에 대한 양형태도

가. 양형위원회 및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부록 표 4-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2.6	24.9	43.2	29.3	
성별	남자	506	3.8	33.2	39.9	23.1	49.495*** (df=3)
	여자	494	1.4	16.4	46.6	35.6	
연령	20대*	195	3.1	17.9	35.4	43.6	77.894*** (df=12)
	30대	190	4.7	17.4	35.3	42.6	
	40대	222	1.4	27.0	49.1	22.5	
	50대	231	1.3	26.8	52.8	19.0	
	60대 이상	162	3.1	36.4	40.1	20.4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2.1	20.1	43.2	34.6	19.178* (df=9)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2.2	19.0	43.6	35.2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3.1	27.3	43.4	26.3	
	대학원 졸업/재학	96	2.1	35.4	41.7	20.8	
권역	서울	195	2.6	28.2	46.7	22.6	24.340 (df=15)
	경기/인천	313	3.2	24.9	46.0	25.9	
	대전/충청	105	1.0	21.9	37.1	40.0	
	광주/전라	95	3.2	30.5	35.8	30.5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2.8	23.5	39.8	33.9	
	제주/강원	41	0.0	12.2	58.5	29.3	
업종	제조업	158	3.2	39.2	38.0	19.6	62.394*** (df=9)
	건설업	69	1.4	43.5	34.8	20.3	
	서비스업	246	3.3	24.0	51.6	21.1	
	해당없음	527	2.3	18.6	41.9	37.2	

*** p<.001

<부록 표 4-2> 직업별 개정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726	2.9	28.1	43.7	25.3	
직업	관리자	78	3.8	44.9	37.2	14.1	63.227*** (df=27)
	전문가	88	4.5	26.1	46.6	22.7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5.1	35.9	35.9	23.1	
	사무 종사자	258	2.3	28.7	43.0	26.0	
	서비스 종사자	122	2.5	16.4	50.0	31.1	
	판매 종사자	39	0.0	35.9	48.7	15.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0.0	45.5	9.1	45.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20.0	52.0	2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16.7	50.0	0.0	
	단순노무 종사자	60	0.0	21.7	41.7	36.7	

* p<.05, *** p<.001

<부록 표 4-3> 업종별 개정 양형위원회 인지 여부(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473	3.0	31.9	44.6	20.5	
업종 (n=473)	제조업	158	3.2	39.2	38.0	19.6	16.896* (df=6)
	건설업	69	1.4	43.5	34.8	20.3	
	서비스업	246	3.3	24.0	51.6	21.1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2.6	28.5	44.3	24.6	27.482** (df=9)
	120~500억 미만	83	1.2	43.4	44.6	10.8	
	500~1,000억 미만	30	13.3	40.0	30.0	16.7	
	1,000억 이상	55	1.8	29.1	54.5	14.5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2.8	26.6	45.9	24.8	16.068 (df=15)
	50~99인	53	5.7	32.1	45.3	17.0	
	100~299인	48	2.1	39.6	39.6	18.8	
	300~499인	24	4.2	29.2	50.0	16.7	
	500~999인	26	7.7	38.5	53.8	0.0	
	1,000인 이상	35	0.0	28.6	51.4	20.0	

* p<.05, ** p<.01

나. 양형기준제 인지여부

<부록 표 4-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2.0	34.0	40.9	23.1	
성별	남자	506	3.0	41.9	36.8	18.4	37.728*** (df=3)
	여자	494	1.0	25.9	45.1	27.9	
연령	20대*	195	1.5	27.2	36.9	34.4	56.618*** (df=12)
	30대	190	2.6	29.5	34.7	33.2	
	40대	222	1.4	37.8	44.6	16.2	
	50대	231	.9	33.3	50.2	15.6	
	60대 이상	162	4.3	43.2	34.6	17.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2.1	29.1	41.0	27.8	18.567* (df=9)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1.7	27.9	41.3	29.1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1.6	37.1	41.8	19.6	
	대학원 졸업/재학	96	4.2	41.7	35.4	18.8	
권역	서울	195	3.1	43.6	32.3	21.0	32.074** (df=15)
	경기/인천	313	1.3	35.1	43.5	20.1	
	대전/충청	105	1.9	26.7	41.0	30.5	
	광주/전라	95	2.1	38.9	32.6	26.3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2.4	28.7	43.8	25.1	
	제주/강원	41	0.0	19.5	63.4	17.1	
업종	제조업	158	3.2	46.8	32.3	17.7	36.065*** (df=9)
	건설업	69	2.9	42.0	42.0	13.0	
	서비스업	246	2.8	35.4	43.9	17.9	
	해당없음	527	1.1	28.5	41.9	28.5	

* p<.05, ** p<.01, *** p<.001

<부록 표 4-5> 직업별 개정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726	2.2	37.3	40.5	20.0	
직업	관리자	78	2.6	48.7	39.7	9.0	43.046* (df=27)
	전문가	88	5.7	38.6	42.0	13.6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0.0	46.2	38.5	15.4	
	사무 종사자	258	1.6	39.1	37.6	21.7	
	서비스 종사자	122	2.5	25.4	44.3	27.9	
	판매 종사자	39	0.0	38.5	51.3	1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1	27.3	45.5	18.2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32.0	44.0	2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0.0	66.7	33.3	0.0	
	단순노무 종사자	60	0.0	31.7	36.7	31.7	

* p<.05, *** p<.001

<부록 표 4-6> 업종별 개정 양형기준제 인지 여부(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473	3.0	40.2	39.7	17.1	
업종 (n=473)	제조업	158	3.2	46.8	32.3	17.7	7.418 (df=6)
	건설업	69	2.9	42.0	42.0	13.0	
	서비스업	246	2.8	35.4	43.9	17.9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2.3	37.4	41.3	19.0	15.157 (df=15)
	120~500억 미만	83	2.4	48.2	39.8	9.6	
	500~1,000억 미만	30	10.0	53.3	23.3	13.3	
	1,000억 이상	55	3.6	36.4	40.0	20.0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2.8	35.8	42.2	19.3	11.389 (df=9)
	50~99인	53	3.8	43.4	35.8	17.0	
	100~299인	48	4.2	39.6	35.4	20.8	
	300~499인	24	4.2	45.8	33.3	16.7	
	500~999인	26	3.8	57.7	38.5	0.0	
	1,000인 이상	35	0.0	42.9	37.1	20.0	

다. 양형기준의 신뢰성 인식

<부록 표 4-7>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동의	비동의	잘 모름	통계값
전체		1,000	32.1	44.5	23.4	
성별	남자	506	34.4	49.2	16.4	28.204*** (df=2)
	여자	494	29.8	39.7	30.6	
연령	20대*	195	28.2	45.1	26.7	19.546* (df=8)
	30대	190	24.7	48.9	26.3	
	40대	222	28.8	48.2	23.0	
	50대	231	36.8	41.6	21.6	
	60대 이상	162	43.2	37.7	19.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30.8	39.7	29.5	14.945* (df=6)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25.7	45.8	28.5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34.4	45.8	19.8	
	대학원 졸업/재학	96	35.4	46.9	17.7	
권역	서울	195	36.4	42.1	21.5	10.076 (df=10)
	경기/인천	313	29.1	47.6	23.3	
	대전/충청	105	29.5	46.7	23.8	
	광주/전라	95	32.6	47.4	20.0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35.1	41.0	23.9	
	제주/강원	41	22.0	41.5	36.6	
업종	제조업	158	36.1	47.5	16.5	10.999 (df=6)
	건설업	69	34.8	46.4	18.8	
	서비스업	246	31.7	47.6	20.7	
	해당없음	527	30.7	41.9	27.3	

* p<.05, *** p<.001

<부록 표 4-8> 직업별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동의	비동의	잘 모름	통계값
전체		726	32.2	46.6	21.2	
직업	관리자	78	35.9	46.2	17.9	16.694 (df=18)
	전문가	88	37.5	50.0	12.5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30.8	48.7	20.5	
	사무 종사자	258	32.2	45.3	22.5	
	서비스 종사자	122	27.9	45.9	26.2	
	판매 종사자	39	23.1	61.5	15.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27.3	63.6	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0	40.0	2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50.0	16.7	
	단순노무 종사자	60	33.3	36.7	30.0	

* p<.05, *** p<.001

<부록 표 4-9> 업종별 양형기준의 신뢰여부(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동의	비동의	잘 모름	통계값
전체		473	33.6	47.4	19.0	
업종 (n=473)	제조업	158	36.1	47.5	16.5	1.522 (df=4)
	건설업	69	34.8	46.4	18.8	
	서비스업	246	31.7	47.6	20.7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32.5	45.6	22.0	5.980 (df=6)
	120~500억 미만	83	38.6	48.2	13.3	
	500~1,000억 미만	30	33.3	56.7	10.0	
	1,000억 이상	55	32.7	50.9	16.4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32.1	45.0	22.9	18.628* (df=10)
	50~99인	53	39.6	47.2	13.2	
	100~299인	48	29.2	54.2	16.7	
	300~499인	24	37.5	45.8	16.7	
	500~999인	26	57.7	42.3	0.0	
	1,000인 이상	35	17.1	60.0	22.9	

* p<.05

라. 양형기준의 효과성 인식

**<부록 표 4-10> 일반적 특성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1,000	79.9	61.3	66.8	75.0	58.4
성별	남자	506	80.8	62.8	67.8	73.7	58.9
	여자	494	78.9	59.7	65.8	76.3	57.9
연령	20대*	195	75.4	51.8	67.2	65.1	55.4
	30대	190	77.4	56.3	61.1	71.6	55.8
	40대	222	83.3	65.3	65.3	81.5	54.5
	50대	231	78.8	64.1	65.8	77.5	60.2
	60대 이상	162	85.2	69.1	76.5	78.4	67.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78.6	56.0	65.4	75.2	59.8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75.4	61.5	63.7	75.4	56.4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82.9	64.4	69.2	75.4	59.3
	대학원 졸업/재학	96	76.0	58.3	63.5	71.9	54.2
권역	서울	195	82.1	58.5	70.3	72.8	56.9
	경기/인천	313	80.5	60.4	65.8	76.7	59.1
	대전/충청	105	75.2	56.2	63.8	73.3	55.2
	광주/전라	95	75.8	57.9	64.2	72.6	53.7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80.5	68.1	66.9	75.7	61.8
	제주/강원	41	82.9	61.0	70.7	78.0	58.5
업종	제조업	158	85.4	64.6	71.5	79.1	63.3
	건설업	69	85.5	60.9	68.1	66.7	56.5
	서비스업	246	78.5	65.4	67.5	73.6	58.9
	해당없음	527	78.2	58.4	64.9	75.5	56.9

A. 형량의 일관성에 기여
C. 범죄에 부합한 형량 부여
E.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
(비동의, 잘 모름 제외)

B. 범죄자의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 감소
D. 범죄자에 대한 형량 예측 가능

**<부록 표 4-11> 직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726	80.0	62.1	66.4	74.4	58.0
직업	관리자	78	83.3	66.7	69.2	83.3	59.0
	전문가	88	76.1	64.8	61.4	69.3	53.4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84.6	48.7	69.2	71.8	59.0
	사무 종사자	258	80.2	59.7	65.5	74.8	60.1
	서비스 종사자	122	81.1	67.2	64.8	76.2	56.6
	판매 종사자	39	79.5	61.5	64.1	74.4	56.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81.8	54.5	90.9	72.7	54.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84.0	60.0	76.0	72.0	4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83.3	66.7	100.0	100.0	66.7
	단순노무 종사자	60	73.3	63.3	65.0	65.0	65.0

A. 형량의 일관성에 기여

B. 범죄자의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 감소

C. 범죄에 부합한 형량 부여

D. 범죄자에 대한 형량 예측 가능

E.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

(비동의, 잘 모름 제외)

**<부록 표 4-12> 업종별 산업안전보건 관련 규제 인정도
(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473	81.8	64.5	68.9	74.4	60.0
업종 (n=473)	제조업	158	85.4	64.6	71.5	79.1	63.3
	건설업	69	85.5	60.9	68.1	66.7	56.5
	서비스업	246	78.5	65.4	67.5	73.6	58.9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82.0	62.6	69.8	76.4	60.7
	120~500억 미만	83	84.3	74.7	65.1	77.1	63.9
	500~1,000억 미만	30	73.3	56.7	60.0	56.7	46.7
	1,000억 이상	55	81.8	63.6	74.5	69.1	58.2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81.2	66.1	71.6	79.4	60.6
	50~99인	53	83.0	62.3	64.2	79.2	69.8
	100~299인	48	81.3	68.8	52.1	68.8	52.1
	300~499인	24	87.5	70.8	79.2	83.3	70.8
	500~999인	26	88.5	69.2	76.9	73.1	69.2
	1,000인 이상	35	68.6	51.4	71.4	54.3	45.7

A. 형량의 일관성에 기여
C. 범죄에 부합한 형량 부여
E.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 향상
(비동의, 잘 모름 제외)

B. 범죄자의 경제능력,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 감소
D. 범죄자에 대한 형량 예측 가능

마.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양형기준의 인지여부

**<부록 표 4-1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1,000	5.5	35.7	41.7	17.1	
성별	남자	506	5.9	39.7	39.9	14.4	10.045* (df=3)
	여자	494	5.1	31.6	43.5	19.8	
연령	20대*	195	4.1	34.9	38.5	22.6	20.330 (df=12)
	30대	190	7.9	29.5	41.1	21.6	
	40대	222	4.1	37.4	42.8	15.8	
	50대	231	4.3	37.7	45.5	12.6	
	60대 이상	162	8.0	38.9	39.5	13.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7.3	31.6	42.7	18.4	25.600** (df=9)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7.8	30.2	39.1	22.9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3.3	41.3	40.5	14.9	
	대학원 졸업/재학	96	8.3	27.1	50.0	14.6	
권역	서울	195	6.2	38.5	40.5	14.9	24.463 (df=15)
	경기/인천	313	3.5	41.9	38.3	16.3	
	대전/충청	105	1.9	30.5	46.7	21.0	
	광주/전라	95	6.3	28.4	51.6	13.7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8.8	31.5	40.2	19.5	
	제주/강원	41	4.9	31.7	46.3	17.1	
업종	제조업	158	8.2	43.7	38.0	10.1	20.652* (df=9)
	건설업	69	10.1	39.1	37.7	13.0	
	서비스업	246	5.7	36.6	41.1	16.7	
	해당없음	527	4.0	32.4	43.6	19.9	

** p<.01, ** p<.01

**<부록 표 4-14> 직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726	6.5	37.3	41.2	15.0	
직업	관리자	78	10.3	48.7	35.9	5.1	42.424* (df=27)
	전문가	88	9.1	38.6	38.6	13.6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15.4	35.9	38.5	10.3	
	사무 종사자	258	5.0	38.4	40.7	15.9	
	서비스 종사자	122	6.6	29.5	43.4	20.5	
	판매 종사자	39	0.0	41.0	48.7	10.3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0.0	45.5	45.5	9.1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40.0	52.0	4.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50.0	33.3	0.0	
	단순노무 종사자	60	3.3	26.7	41.7	28.3	

* p<.05

**<부록 표 4-15>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인지여부**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잘 알고 있음	대강 알고 있음	들어본 적 있으나 잘 모름	들어본 적 없음	통계값
전체		473	7.2	39.3	39.5	14.0	
업종 (n=473)	제조업	158	8.2	43.7	38.0	10.1	6.371 (df=6)
	건설업	69	10.1	39.1	37.7	13.0	
	서비스업	246	5.7	36.6	41.1	16.7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5.9	35.1	42.3	16.7	21.753* (df=9)
	120~500억 미만	83	6.0	51.8	34.9	7.2	
	500~1,000억 미만	30	20.0	46.7	30.0	3.3	
	1,000억 이상	55	9.1	40.0	36.4	14.5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4.6	36.7	41.7	17.0	17.539 (df=15)
	50~99인	53	7.5	45.3	35.8	11.3	
	100~299인	48	8.3	43.8	39.6	8.3	
	300~499인	24	8.3	54.2	25.0	12.5	
	500~999인	26	19.2	34.6	42.3	3.8	
	1,000인 이상	35	5.7	34.3	42.9	17.1	

* p<.05

사.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의 적정성 평가

**<부록 표 4-16>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4.2	36.9	44.5	14.4	41.1	58.9	
성별	남자	506	4.5	36.2	43.7	15.6	40.7	59.3	.064 (df=1)
	여자	494	3.8	37.7	45.3	13.2	41.5	58.5	
연령	20대*	195	3.6	38.5	45.6	12.3	42.1	57.9	5.702 (df=4)
	30대	190	5.3	40.0	34.2	20.5	45.3	54.7	
	40대	222	3.2	35.1	52.7	9.0	38.3	61.7	
	50대	231	4.3	32.0	46.8	16.9	36.4	63.6	
	60대 이상	162	4.9	40.7	40.7	13.6	45.7	54.3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6.4	39.3	39.3	15.0	45.7	54.3	5.467 (df=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3.9	39.7	37.4	19.0	43.6	56.4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3.3	34.2	48.9	13.6	37.5	62.5	
	대학원 졸업/재학	96	4.2	39.6	47.9	8.3	43.8	56.3	
권역	서울	195	3.1	36.4	50.3	10.3	39.5	60.5	.602 (df=5)
	경기/인천	313	2.6	39.0	41.5	16.9	41.5	58.5	
	대전/충청	105	6.7	33.3	49.5	10.5	40.0	60.0	
	광주/전라	95	2.1	38.9	38.9	20.0	41.1	58.9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7.2	35.5	43.4	13.9	42.6	57.4	
	제주/강원	41	2.4	36.6	46.3	14.6	39.0	61.0	
업종	제조업	158	5.1	38.0	43.0	13.9	43.0	57.0	11.456* * (df=3)
	건설업	69	2.9	52.2	33.3	11.6	55.1	44.9	
	서비스업	246	6.1	39.0	42.7	12.2	45.1	54.9	
	해당없음	527	3.2	33.6	47.2	15.9	36.8	63.2	

* p<.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4-17> 직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726	4.8	37.9	43.9	13.4	42.7	57.3	
직업	관리자	78	5.1	43.6	39.7	11.5	48.7	51.3	6.741 (df=9)
	전문가	88	5.7	36.4	44.3	13.6	42.0	58.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12.8	41.0	30.8	15.4	53.8	46.2	
	사무 종사자	258	3.9	37.6	47.7	10.9	41.5	58.5	
	서비스 종사자	122	4.9	40.2	39.3	15.6	45.1	54.9	
	판매 종사자	39	0.0	30.8	64.1	5.1	30.8	69.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1	27.3	18.2	45.5	36.4	63.6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4.0	40.0	44.0	12.0	44.0	56.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16.7	16.7	16.7	50.0	33.3	66.7	
	단순노무 종사자	60	3.3	35.0	45.0	16.7	38.3	61.7	

** p<.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4-18> 업종별 업무상과실치사죄 중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
적정성**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473	5.3	40.6	41.4	12.7	45.9	54.1	
업종 (n=473)	제조업	158	5.1	38.0	43.0	13.9	43.0	57.0	2.919 (df=2)
	건설업	69	2.9	52.2	33.3	11.6	55.1	44.9	
	서비스업	246	6.1	39.0	42.7	12.2	45.1	54.9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5.6	39.3	42.6	12.5	44.9	55.1	.547 (df=3)
	120~500억 미만	83	6.0	39.8	44.6	9.6	45.8	54.2	
	500~1,000억 미만	30	6.7	43.3	33.3	16.7	50.0	50.0	
	1,000억 이상	55	1.8	47.3	34.5	16.4	49.1	50.9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6.0	34.9	47.7	11.5	40.8	59.2	7.797 (df=5)
	50~99인	53	9.4	45.3	30.2	15.1	54.7	45.3	
	100~299인	48	4.2	31.3	45.8	18.8	35.4	64.6	
	300~499인	24	4.2	50.0	33.3	12.5	54.2	45.8	
	500~999인	26	3.8	53.8	38.5	3.8	57.7	42.3	
	1,000인 이상	35	2.9	42.9	37.1	17.1	45.7	54.3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바. 사망한 사건에 대한 양형 인식

- A는 W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 A는 2017년 5월 9일 09:00경 W개발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W개발 소속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실려 있는 폐합성수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던 B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B를 중증 뇌손상 및 경추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록 표 4-19>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망사건의 양형기준 적정성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1,000	1.4	22.9	45.4	30.3	24.3	75.7	
성별	남자	506	1.8	26.5	42.3	29.4	28.3	71.7	8.736** (df=1)
	여자	494	1.0	19.2	48.6	31.2	20.2	79.8	
연령	20대*	195	3.6	32.8	33.8	29.7	36.4	63.6	19.830** (df=4)
	30대	190	.5	21.6	47.4	30.5	22.1	77.9	
	40대	222	.5	20.7	52.7	26.1	21.2	78.8	
	50대	231	1.3	18.6	48.5	31.6	19.9	80.1	
	60대 이상	162	1.2	21.6	42.6	34.6	22.8	77.2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9	24.4	44.4	30.3	25.2	74.8	1.791 (df=3)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1.7	22.3	46.4	29.6	24.0	76.0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1.2	21.8	45.2	31.8	23.0	77.0	
	대학원 졸업/재학	96	3.1	26.0	46.9	24.0	29.2	70.8	
권역	서울	195	2.1	19.0	46.2	32.8	21.0	79.0	6.641 (df=5)
	경기/인천	313	1.9	24.3	46.6	27.2	26.2	73.8	
	대전/충청	105	1.0	26.7	36.2	36.2	27.6	72.4	
	광주/전라	95	2.1	26.3	45.3	26.3	28.4	71.6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4	19.9	46.2	33.5	20.3	79.7	
	제주/강원	41	0.0	31.7	51.2	17.1	31.7	68.3	
업종	제조업	158	1.3	25.3	44.3	29.1	26.6	73.4	20.585* * (df=3)
	건설업	69	1.4	42.0	34.8	21.7	43.5	56.5	
	서비스업	246	2.0	24.8	48.4	24.8	26.8	73.2	
	해당없음	527	1.1	18.8	45.7	34.3	19.9	80.1	

** p<.01, *** p<.001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4-20> 직업별 사망사건의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726	1.9	24.7	44.5	28.9	26.6	73.4	
직업	관리자	78	1.3	34.6	44.9	19.2	35.9	64.1	12.336 (df=9)
	전문가	88	3.4	23.9	42.0	30.7	27.3	72.7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2.6	41.0	33.3	23.1	43.6	56.4	
	사무 종사자	258	1.6	20.9	46.9	30.6	22.5	77.5	
	서비스 종사자	122	1.6	22.1	47.5	28.7	23.8	76.2	
	판매 종사자	39	2.6	23.1	38.5	35.9	25.6	74.4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9.1	18.2	36.4	36.4	27.3	7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0.0	28.0	40.0	32.0	28.0	72.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0.0	16.7	33.3	50.0	16.7	83.3	
	단순노무 종사자	60	1.7	25.0	46.7	26.7	26.7	73.3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부록 표 4-21> 업종별 사망사건의 양형기준 적정성(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매우 적정	대체로 적정	별로 적정하지 않음	전혀 적정하지 않음	적정	적정하지 않음	통계값*
전체		473	1.7	27.5	45.0	25.8	29.2	70.8	
업종 (n=473)	제조업	158	1.3	25.3	44.3	29.1	26.6	73.4	8.001* (df=2)
	건설업	69	1.4	42.0	34.8	21.7	43.5	56.5	
	서비스업	246	2.0	24.8	48.4	24.8	26.8	73.2	
매출액 (n=473)	120억 미만	305	1.6	26.6	43.9	27.9	28.2	71.8	6.577 (df=3)
	120~500억 미만	83	3.6	36.1	41.0	19.3	39.8	60.2	
	500~1,000억 미만	30	0.0	23.3	46.7	30.0	23.3	76.7	
	1,000억 이상	55	0.0	21.8	56.4	21.8	21.8	78.2	
상시 근로자수 (n=404)	50인 미만	218	2.3	25.2	44.5	28.0	27.5	72.5	5.635 (df=5)
	50~99인	53	0.0	32.1	49.1	18.9	32.1	67.9	
	100~299인	48	2.1	22.9	47.9	27.1	25.0	75.0	
	300~499인	24	4.2	29.2	29.2	37.5	33.3	66.7	
	500~999인	26	0.0	26.9	50.0	23.1	26.9	73.1	
	1,000인 이상	35	0.0	11.4	65.7	22.9	11.4	88.6	

* p<.05

통계값은 더미값으로 산출함

5.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양형인자에 일반적 인식

**<부록 표 5-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
(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전체		1,000	43.9	33.7	33.8	19.7	23.1	59.8	8.4	78.3
성별	남자	506	44.5	33.4	34.4	18.6	25.3	54.9	9.3	75.5
	여자	494	43.3	34.0	33.2	20.9	20.9	64.8	7.5	81.2
연령	20대*	195	41.5	25.6	23.1	15.4	25.1	54.4	12.3	68.7
	30대	190	38.9	39.5	27.4	23.7	20.5	63.2	6.8	80.0
	40대	222	43.7	36.0	37.8	22.1	19.8	64.9	7.2	81.5
	50대	231	44.2	37.7	37.7	21.6	24.7	58.4	7.8	81.0
	60대 이상	162	52.5	27.8	43.2	14.2	25.9	57.4	8.0	79.6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42.3	34.2	36.8	16.7	25.6	58.1	7.7	80.8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38.0	33.0	33.5	21.2	22.3	59.2	11.2	73.2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47.0	33.6	32.4	18.7	22.6	60.3	7.9	80.0
	대학원 졸업/재학	96	42.7	34.4	34.4	29.2	20.8	62.5	7.3	72.9
권역	서울	195	43.6	36.9	35.4	21.5	23.1	63.6	8.2	77.9
	경기/인천	313	44.4	36.1	31.9	18.8	25.6	58.1	8.9	78.9
	대전/충청	105	41.0	35.2	28.6	22.9	22.9	58.1	6.7	82.9
	광주/전라	95	44.2	28.4	37.9	23.2	13.7	67.4	7.4	84.2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43.4	31.9	32.3	17.1	23.1	56.6	7.6	74.9
	제주/강원	41	51.2	19.5	53.7	17.1	26.8	61.0	17.1	70.7
업종	제조업	158	44.9	38.0	35.4	24.7	24.7	56.3	6.3	79.1
	건설업	69	47.8	31.9	36.2	21.7	29.0	53.6	14.5	65.2
	서비스업	246	39.0	35.0	36.2	19.1	23.6	57.7	10.6	76.8
	해당없음	527	45.4	32.1	31.9	18.2	21.6	62.6	7.2	80.5

- A. 피해자(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C. 피해자(근로자)가 술(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D.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이 없이 제외)

<부록 표 5-2> 직업에 따른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전체		726	42.6	35.4	34.2	21.5	23.0	59.5	9.1	77.4
직업	관리자	78	52.6	26.9	39.7	25.6	33.3	51.3	14.1	67.9
	전문가	88	42.0	45.5	39.8	23.9	27.3	59.1	14.8	75.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41.0	41.0	33.3	30.8	17.9	66.7	2.6	82.1
	사무 종사자	258	41.5	36.4	30.2	21.7	19.4	62.0	5.4	82.2
	서비스 종사자	122	37.7	28.7	36.1	15.6	21.3	59.8	9.0	73.8
	판매 종사자	39	51.3	20.5	30.8	12.8	15.4	69.2	7.7	82.1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63.6	36.4	36.4	36.4	27.3	54.5	9.1	90.9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36.0	40.0	40.0	32.0	24.0	60.0	12.0	80.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66.7	33.3	16.7	50.0	33.3	16.7	66.7
	단순노무 종사자	60	40.0	41.7	31.7	16.7	26.7	51.7	13.3	71.7

- A. 피해자(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C. 피해자(근로자)가 술(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D.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이 없이 제외)

<부록 표 5-3> 업종에 따른 양형인자별 가중감경 인식(일반국민)

N=473명/404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경하게	중하게
전체		473	42.3	35.5	35.9	21.4	24.7	56.7	9.7	75.9
업종 (n=473)	제조업	158	44.9	38.0	35.4	24.7	24.7	56.3	6.3	79.1
	건설업	69	47.8	31.9	36.2	21.7	29.0	53.6	14.5	65.2
	서비스업	246	39.0	35.0	36.2	19.1	23.6	57.7	10.6	76.8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305	44.3	36.1	37.7	20.3	21.0	62.3	9.8	78.4
	120~500억 미만	83	34.9	33.7	34.9	21.7	27.7	47.0	6.0	75.9
	500~1,000억 미만	30	43.3	30.0	40.0	26.7	46.7	36.7	16.7	66.7
	1,000억 이상	55	41.8	38.2	25.5	23.6	29.1	50.9	10.9	67.3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8	44.0	35.8	38.5	17.0	22.9	61.9	10.1	78.9
	50~99인	53	37.7	39.6	28.3	28.3	18.9	52.8	7.5	79.2
	100~299인	48	35.4	33.3	27.1	22.9	29.2	52.1	10.4	75.0
	300~499인	24	37.5	29.2	54.2	16.7	33.3	50.0	4.2	75.0
	500~999인	26	46.2	34.6	38.5	34.6	19.2	50.0	7.7	76.9
	1,000인 이상	35	37.1	42.9	28.6	28.6	28.6	51.4	5.7	74.3

- A. 피해자(근로자) 사망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B.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C. 피해자(근로자)가 술(약물)에 취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D. 피고인이 인명피해와 직결된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차이 없이 제외)

나. 산업안전보건법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부록 표 5-4> 일반적 특성별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1,000	52.6	48.6	63.2	78.3	73.4
성별	남자	506	52.8	49.2	62.8	78.3	74.1
	여자	494	52.4	48.0	63.6	78.3	72.7
연령	20대*	195	43.1	33.8	52.8	73.8	64.1
	30대	190	46.3	47.4	57.4	73.2	69.5
	40대	222	58.6	55.4	66.7	82.9	80.6
	50대	231	58.0	53.2	70.1	80.1	77.1
	60대 이상	162	55.6	51.9	67.9	80.9	74.1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60.7	52.6	68.4	79.9	75.6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48.6	38.5	55.3	73.7	68.7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51.5	50.1	64.6	81.7	75.2
	대학원 졸업/재학	96	45.8	50.0	58.3	65.6	67.7
권역	서울	195	56.4	52.8	62.1	81.5	73.8
	경기/인천	313	54.0	45.4	64.5	79.2	74.8
	대전/충청	105	41.9	48.6	63.8	77.1	69.5
	광주/전라	95	48.4	54.7	66.3	74.7	75.8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53.8	47.4	62.2	75.7	71.7
	제주/강원	41	53.7	46.3	56.1	82.9	75.6
업종	제조업	158	56.3	48.1	62.0	79.7	76.6
	건설업	69	55.1	58.0	65.2	82.6	72.5
	서비스업	246	52.4	48.0	63.8	79.3	73.2
	해당없음	527	51.2	47.8	63.0	76.9	72.7

-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D.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E.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인함
 (중요하지 않음 제외)

<부록 표 5-5> 직업별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726	53.4	48.9	63.4	78.8	73.0
직업	관리자	78	55.1	52.6	62.8	76.9	70.5
	전문가	88	47.7	46.6	61.4	70.5	75.0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51.3	46.2	59.0	74.4	66.7
	사무 종사자	258	55.8	53.9	66.7	83.7	76.0
	서비스 종사자	122	54.1	47.5	68.9	82.8	73.0
	판매 종사자	39	48.7	43.6	53.8	69.2	59.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36.4	27.3	36.4	54.5	72.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52.0	36.0	40.0	68.0	6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33.3	16.7	33.3	83.3	66.7
	단순노무 종사자	60	58.3	46.7	68.3	81.7	76.7

-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D.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E.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인함
 (중요하지 않음 제외)

<부록 표 5-6> 업종별 가중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일반국민)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465	54.1	49.5	63.4	79.9	74.2
업종 (n=465)	제조업	158	56.3	48.1	62.0	79.7	76.6
	건설업	69	55.1	58.0	65.2	82.6	72.5
	서비스업	246	52.4	48.0	63.8	79.3	73.2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305	53.8	48.5	62.6	79.0	73.1
	120~500억 미만	83	50.6	48.2	66.3	81.9	78.3
	500~1,000억 미만	30	53.3	60.0	63.3	86.7	76.7
	1,000억 이상	55	61.8	50.9	63.6	78.2	72.7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8	52.8	45.0	61.0	79.8	74.3
	50~99인	53	41.5	54.7	60.4	75.5	77.4
	100~299인	48	58.3	45.8	70.8	83.3	77.1
	300~499인	24	66.7	45.8	66.7	79.2	75.0
	500~999인	26	57.7	69.2	65.4	80.8	80.8
	1,000인 이상	35	62.9	45.7	65.7	77.1	62.9

- A.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B.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음
 C.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D.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E.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책임을 부인함
 (중요하지 않음 제외)

다. 산업안전보건법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

**<부록 표 5-7>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N=1,000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1,000	80.1	86.4	72.2	78.4	88.4
성별	남자	506	78.1	85.6	67.2	76.1	87.7
	여자	494	83.7	87.2	77.3	80.8	89.1
연령	20대*	195	80.5	83.6	72.3	79.5	83.6
	30대	190	80.7	81.1	73.2	79.5	85.8
	40대	222	85.5	89.2	74.3	78.8	90.5
	50대	231	72.8	90.0	68.4	74.5	92.2
	60대 이상	162	81.8	87.0	73.5	80.9	88.9
최종 학력	고졸 이하	234	81.5	89.7	76.9	76.5	88.0
	전문대학 졸업/재학	179	86.0	85.5	70.9	78.2	86.0
	4년제 대학 졸업/재학	491	80.4	86.2	71.3	81.1	90.8
	대학원 졸업/재학	96	64.6	81.3	67.7	69.8	81.3
권역	서울	195	79.4	86.7	67.7	77.4	89.7
	경기/인천	313	78.6	87.2	71.6	75.7	88.5
	대전/충청	105	87.2	83.8	73.3	80.0	83.8
	광주/전라	95	71.4	88.4	71.6	81.1	88.4
	부산/대구/울산/경상	251	84.3	85.3	76.5	81.3	89.6
	제주/강원	41	75.0	87.8	70.7	75.6	85.4
업종	제조업	158	79.7	81.6	67.1	75.3	84.8
	건설업	69	78.3	91.3	65.2	81.2	85.5
	서비스업	246	80.9	85.0	71.5	78.0	87.0
	해당없음	527	80.1	87.9	75.0	79.1	90.5

- A.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B. 피고인이 초범임
 C.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D.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E. 피고인이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였음
 (중요하지 않음 제외)

<부록 표 5-8> 직업별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N=726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726	80.2	85.5	70.5	76.9	87.5
직업	관리자	78	78.4	78.2	52.6	71.8	84.6
	전문가	88	84.6	81.8	68.2	76.1	84.1
	기술공 및 준전문가	39	80.6	84.6	69.2	76.9	84.6
	사무 종사자	258	82.8	86.4	72.1	76.7	88.0
	서비스 종사자	122	87.2	90.2	78.7	80.3	90.2
	판매 종사자	39	63.6	87.2	69.2	76.9	89.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11	72.0	81.8	63.6	81.8	81.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25	100.0	88.0	72.0	76.0	88.0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6	85.0	100.0	83.3	83.3	100.0
	단순노무 종사자	60	80.2	85.0	75.0	76.7	88.3

- A.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B. 피고인이 초범임
 C.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D.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E. 피고인이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였음
 (중요하지 않음 제외)

<부록 표 5-9> 업종별 감경 양형인자에 대한 인식(일반국민)

N=465명/399명, 단위: 명/%

구분		사례수 (명)	A	B	C	D	E
전체		473	80.1	84.8	69.1	77.6	86.0
업종 (n=465)	제조업	158	78.3	81.6	67.1	75.3	84.8
	건설업	69	80.9	91.3	65.2	81.2	85.5
	서비스업	246	80.1	85.0	71.5	78.0	87.0
매출액 (n=465)	120억 미만	305	83.1	86.6	71.1	77.4	86.2
	120~500억 미만	83	70.0	79.5	68.7	81.9	85.5
	500~1,000억 미만	30	81.8	76.7	63.3	73.3	76.7
	1,000억 이상	55	80.1	87.3	61.8	74.5	90.9
상시 근로자수 (n=399)	50인 미만	218	79.2	85.8	71.1	76.6	86.2
	50~99인	53	81.3	75.5	60.4	69.8	83.0
	100~299인	48	95.8	81.3	77.1	77.1	85.4
	300~499인	24	76.9	91.7	83.3	100.0	95.8
	500~999인	26	68.6	80.8	57.7	76.9	76.9
	1,000인 이상	35	80.4	82.9	65.7	74.3	91.4

- A. 피고인이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B. 피고인이 초범임
 C.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D. 피고인이 재발방지를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E. 피고인이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였음
 (중요하지 않음 제외)

다. 산업안전보건법 집행유예에 대한 인식

N=1,000명, 단위: %

구 분	매우 부정	약간 부정	상관 없음	약간 긍정	매우 긍정	부정	긍정	상관 없음
1)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39.6	31.8	18.1	7.6	2.9	71.4	10.5	18.1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7.6	38.9	20.3	11.0	2.2	66.5	13.2	20.3
3)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47.6	28.0	13.7	7.3	3.4	75.6	10.7	13.7
4)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17.4	22.3	22.5	32.4	5.4	39.7	37.8	22.5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8.8	18.8	24.9	42.2	5.3	27.6	47.5	24.9
6)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	12.6	31.1	37.5	13.8	17.6	51.3	31.1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6.9	13.5	46.5	28.1	5.0	20.4	33.1	46.5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5.6	13.2	30.8	40.8	9.6	18.8	50.4	30.8
9)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5.8	35.8	17.7	7.7	3.0	71.6	10.7	17.7
10)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8.1	17.2	36.8	31.1	6.8	25.3	37.9	36.8
1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48.7	27.4	12.6	7.5	3.8	76.1	11.3	12.6
1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64.7	14.2	9.9	6.6	4.6	78.9	11.2	9.9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27.4	31.0	32.4	6.9	2.3	58.4	9.2	32.4
1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50.5	20.7	16.6	8.0	4.2	71.2	12.2	16.6
15) 피해 회복 노력 없음	58.5	20.4	10.6	6.5	4.0	78.9	10.5	10.6
16) 진지한 반성 없음	61.9	17.8	9.9	6.4	4.0	79.7	10.4	9.9
17)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15.7	19.1	45.4	17.0	2.8	34.8	19.8	45.4
18) 진지한 반성	6.3	14.8	32.8	37.8	8.3	21.1	46.1	32.8
19)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8.1	13.0	46.6	27.1	5.2	21.1	32.3	46.6
20) 피고인이 고령	11.2	17.6	47.7	19.4	4.1	28.8	23.5	47.7
2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10.1	15.5	43.5	24.4	6.5	25.6	30.9	43.5
2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9.1	16.5	39.0	29.7	5.7	25.6	35.4	39.0
23) 보험 가입	8.1	15.0	52.3	20.9	3.7	23.1	24.6	52.3
24) 상당 금액 공탁	12.1	18.0	43.3	22.6	4.0	30.1	26.6	43.3

-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 조사(일반국민)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뢰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설정·변경하고,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8월

조사의뢰기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조 사 책 임 : 경남대학교 김도우 교수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19년 ____월 ____일 ____시
에디팅 ID		검증 ID	

응답자 기본 현황

SQ1) 성별 【QUOTA확인】	1) 남성	2) 여성
SQ2) 연령 【QUOTA확인】	1) 만19세~20대	3) 40대
	2) 30대	4) 50대
	5) 60대	6) 18세 미만/70세 이상 【면접중단】
SQ3) 거주지 【QUOTA확인】	01) 서울	07) 울산
	02) 부산	08) 경기
	03) 대구	09) 강원
	04) 인천	10) 충북
	05) 광주	11) 충남
	06) 대전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그 외 【면접중단】	
SQ4) 업종 【QUOTA확인】	1) 제조업【SQ4-1】	2) 건설업【SQ4-2】
	3) 서비스업【SQ4-1】	4) 해당없음【문1번으로】
SQ4-1) 상시근로자수 【QUOTA확인】	1) 50인 미만	2) 50~99인
	3) 100~299인	4) 300~499인
	5) 500~999인	6) 1,000인 이상
SQ4-2) 매출액 【QUOTA확인】	1) 120억 미만	2) 120~500억 미만
	3) 500~1,000억 미만	4) 1,000억 이상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의미
- 산업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업주측과 근로자측으로 구분
 - 사업주측 요인 :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
 - 근로자측 요인 :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
-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예방기준을 준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등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문1. 국회는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2. 귀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6) 잘 모름

문3.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6) 잘 모름

문4.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6) 잘 모르겠다

문 5. 산업안전보건제에 예방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순위별로 1순위로와 2순위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1)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 2)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 3)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 4) 정부의 지원 확대
- 5)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 6)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 7) 기타 ()

문6.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를 해 주세요.

평가항목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참 모름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나 취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자가 내용 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 당 당기관의 규제집행력(고용노동부지도·감독 등) 및 감시기능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별첨부 과 내용 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문8.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9.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 적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차별없이 공평하게(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0.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문11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문11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문10-1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문10-1

문10-1. 처벌규정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형량을 높여야 한다 2) 형량을 낮추어야 한다
3) 기타()

문1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11-1. 귀하는 이러한 가중처벌 방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 문12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 문12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 문11-2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11-2

문11-2. 가중처벌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더 가중해야 한다 2) 2분의1 가중 보다 낮춰야 한다(예: 3분의1 가중 등)
3) 기타()

문12.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선고는 경우에 그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명령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 문13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 문13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 문12-1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12-1

문12-1.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00시간을 초과하는 교육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3) 기타()

다음은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양형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7일 대법원 아래 독립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에 처음으로 살인, 성범죄 등의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8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13. 귀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14. 귀하는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각의 상황이라면 앞서 응답한 형량과 비교하여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황	훨씬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차이 없이	조금 더 무겁게	훨씬 더 무겁게
1) 피해자(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피해자(근로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4) 피고인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문20.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각의 사정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도 그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범죄자를 곧바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징역형을 일정 기간(1년~5년) 미뤄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범죄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 형이 면제됩니다. 이처럼 형의 집행을 유예된다고 하여 이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상 황	집행유예에 매우 부정적	집행유예에 약간 부정적	집행유예와 상관없음	집행유예에 약간 긍정적	집행유예에 매우 긍정적
1)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6)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①	②	③	④	⑤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①	②	③	④	⑤
9)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①	②	③	④	⑤
10)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①	②	③	④	⑤
1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①	②	③	④	⑤
15) 피해 회복 노력 없음	①	②	③	④	⑤
16) 진지한 반성 없음	①	②	③	④	⑤
17)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①	②	③	④	⑤
18) 진지한 반성	①	②	③	④	⑤
19)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①	②	③	④	⑤
20) 피고인이 고령	①	②	③	④	⑤
2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2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①	②	③	④	⑤
23) 보험 가입	①	②	③	④	⑤
24) 상당 금액 공탁	①	②	③	④	⑤

문21. 다음의 사례를 읽고 자신의 경험, 지식, 가치관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A는 W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 A는 2017년 5월 9일 09:00경 W개발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W개발 소속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실려 있는 폐합성수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장방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없이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던 B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B를 중증 뇌손상 및 경추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문21-1. 위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귀하는 이것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걱정하다 **문22**
2) 대체로 걱정한 편이다 **문22**
3) 별로 걱정하지 않다 **문21-2**
4) 전혀 걱정하지 않다 **문21-2**

문21-2. 법원이 A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 2) 더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 3) 기타()

문22.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피고인이 범령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2) 피고인이 범죄전력(전과)이 없는 초범임	①	②	③	④
3) 피고인이 범령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4) 피고인이 재발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①	②	③	④
5)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였음	①	②	③	④

문 23.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할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3)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①	②	③	④
4)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①	②	③	④
5)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함	①	②	③	④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1) 고졸 이하 2) 전문대학 졸업/제학 3) 4년제 대학 졸업/제학
4) 대학원 졸업/제학 5) 기타 ()

DQ2. 귀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1) 관리자 예: 국회의원, 기업 고위 임원, 정부 행정 관리자, 연구 관리자, 교육 관련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예: 연구원, 조사 전문가, 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목사, 보육 교사, 일반 의사, 영양사, 부동산 중개인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예: 생명과학 시험원, 통신 장비 기사, 보건 교사, 조산사, 안마사, 보조 교사, 전도사
4) 사무 종사자 예: 국가행 사무원, 무역 사무원, 일반 비서, 전화 상담원, 통계 사무원, 사무 보조원, 속기사
5) 서비스 종사자 예: 일반 경찰관, 교도관, 간병인, 미용사, 결혼 설계사, 접술가, 주방장 및 조리사, 객실 승무원
6) 판매 종사자 예: 자동차 영업원, 보험설계사, 매장 계산원, 판촉원, 인터넷 판매원, 식품 영업원, 텔레마케터
7)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예: 채소 작물 재배원, 조경원, 가축 사육 종사원, 벌목원, 해조류 양식원, 동물 사육사, 해녀
8)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예: 제빵사, 정육 가공원, 의복 재단사, 도자기 공예원, 선박 배관공, 잠수 기능원, 통신 장비 수리원
9)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예: 곡물 가공 제품 기계 조작원, 인쇄판 출력원, 가구 조립원, 택시 운전원, 화력 발전 장치 조작원
10) 단순노무 종사자 예: 아파트 경비원, 육아도우미, 주유원, 택배원, 거리 미화원, 주차 안내원, 농업 단순 종사원
11) 군인
12) 주부
13) 학생
14) 기타

(이하 **DQ2**에서 ①~⑩ 응답자)

DQ3. 귀하의 종사상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1)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
3) 임금근로자(피고용자) 4) 무급가족종사자
5) 그 외 종사자 6) 기타 ()

DQ4.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 1)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3) 해당 없음

DQ5.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1) 사업주 2) 작업반장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4) 현장소장
5) 근로자 스스로 6) 해당 없음
7) 기타 ()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 조사(경영자)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뢰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설정·변경하고,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08월

조사의뢰기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조 사 책 임 : 경남대학교 김도우 교수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19년 ____월 ____일 ____시
에디팅 ID		검증 ID	

응답자 기본 현황

SQ1) 성별 【QUOTA확인】	1) 남성	2) 여성
SQ2) 연령 【QUOTA확인】	1) 만19세~20대	3) 40대
	2) 30대	4) 50대
	5) 60대	6) 18세 미만/70세 이상 【면접중단】
SQ3) 거주지 【QUOTA확인】	01) 서울	07) 울산
	02) 부산	08) 경기
	03) 대구	09) 강원
	04) 인천	10) 충북
	05) 광주	11) 충남
	06) 대전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	16) 제주
	17) 그 외 【면접중단】	
SQ4) 업종 【QUOTA확인】	1) 제조업 【SQ4-1】	2) 건설업 【SQ4-2】
	3) 서비스업 【SQ4-1】	4) 해당없음 【문】
SQ4-1) 상시근로자수 【QUOTA확인】	1) 50인 미만	2) 50~99인
	3) 100~299인	4) 300~499인
	5) 500~999인	6) 1,000인 이상
SQ4-2) 매출액 【QUOTA확인】	1) 120억 미만	2) 120~500억 미만
	3) 500~1,000억 미만	4) 1,000억 이상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은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의미
- 산업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업주측과 근로자측으로 구분
 - 사업주측 요인 :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
 - 근로자측 요인 :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
-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예방기준을 준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등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문1. 국회는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2. 귀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6) 잘 모름

문3.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6) 잘 모름

문4.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6) 잘 모르겠다

문 5. 산업안전보건제에 예망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순위별로 1순위로 2순위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1)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 2)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 3)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제
- 4) 정부의 지원 확대
- 5)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 6)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 7) 기타 ()

문6.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를 해 주세요.

평가항목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나 취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자가 내용 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 당 당기관의 규제집행력(고용노동부지도·감독 등) 및 감시기능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별첨부 과 내용 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문8.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9.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 적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차별없이 공평하게(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0.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문11**
2)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문11**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문10-1**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문10-1**

문10-1. 처벌규정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형량을 높여야 한다 2) 형량을 낮추어야 한다
3) 기타()

문1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11-1. 귀하는 이러한 가중처벌 방식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 문12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 문12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 문11-2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11-2

문11-2. 가중처벌 방식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더 가중해야 한다 2) 2분의1 가중 보다 낮춰야 한다(예: 3분의1 가중 등)
3) 기타(_____)

문12.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선고는 경우에 그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명령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 문13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 문13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 문12-1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12-1

문12-1.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가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00시간을 초과하는 교육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3) 기타(_____)

다음은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양형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7일 대법원 아래 독립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에 처음으로 살인, 성범죄 등의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8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13. 귀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14. 귀하는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 다음은 양형과 양형기준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이란? 판사가 죄를 범한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형량을 줄 것인지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제란? 범죄의 유형, 죄질의 경중, 형량을 가장감경할 수 있는 여러 요인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 양형기준을 존중하여 양형을 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문15. 귀하는 양형기준제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16. 다음은 위에서 설명 드린 양형기준제의 시행이 형량을 결정하는데 미치는 효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래 각각의 문항에 대해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가장 일치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세요.

평가항목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별로 동의하 지 않음	전혀 동의하 지 않음
1)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u>형량의 일관성</u> 이 높아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2)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u>범죄자의 경제능력이나 사회적 지위</u> 의 부당한 영향이 감소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3)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u>범죄행위에 부합하는</u> 형량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u>범죄자에 대한 형량</u> 을 예측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양형기준제의 시행으로 <u>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u> 가 높아질 수 있다	①	②	③	④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양형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17. 귀하께서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에게 '정액형'을 선고할 경우에 참고할 양형기준이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18. 우리나라 양형기준은 안전·보전·치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업주에게 다른 특별한 가중·감경 사유가 없는 경우 '징역 6월부터 1년 6월까지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형기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문19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문19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문18-1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문18-1

문18-1. 양형기준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 2) 양형기준을 낮추어야 한다
3) 기타()

문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각의 상황이라면 앞서 응답한 형량과 비교하여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황	훨씬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차이 없이	조금 더 무겁게	훨씬 더 무겁게
1) 피해자(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피해자(근로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4) 피고인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문20.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각의 사정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도 그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범죄자를 곧바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징역형을 일정 기간(1년~5년) 미뤄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범죄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 형이 면제됩니다. 이처럼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고 하여 이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상 황	집행유예에 매우 부정적	집행유예에 약간 부정적	집행유예와 상관없음	집행유예에 약간 긍정적	집행유예에 매우 긍정적
1)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6)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①	②	③	④	⑤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①	②	③	④	⑤
9)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①	②	③	④	⑤
10)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①	②	③	④	⑤
1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①	②	③	④	⑤
15) 피해 회복 노력 없음	①	②	③	④	⑤
16) 진지한 반성 없음	①	②	③	④	⑤
17)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①	②	③	④	⑤
18) 진지한 반성	①	②	③	④	⑤
19)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①	②	③	④	⑤
20) 피고인이 고령	①	②	③	④	⑤
2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2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①	②	③	④	⑤
23) 보험 가입	①	②	③	④	⑤
24) 상당 금액 공탁	①	②	③	④	⑤

문21. 다음의 사례를 읽고 자신의 경험, 지식, 가치관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A는 W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 A는 2017년 5월 9일 09:00경 W개발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W개발 소속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실려 있는 폐합성수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던 B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B를 중증 뇌손상 및 경추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문21-1. 위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귀하는 이것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 문22 2)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문22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 문21-2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21-2

문21-2. 법원이 A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더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3) 기타()

문22.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피고인이 벌령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2) 피고인이 범죄경력(전과)이 없는 초범임	①	②	③	④
3) 피고인이 벌령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4) 피고인이 재발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①	②	③	④
5)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였음	①	②	③	④

문23.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할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3)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①	②	③	④
4)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①	②	③	④
5)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함	①	②	③	④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 1) 고졸 이하 | 2) 전문대학 졸업/제학 | 3) 4년제 대학 졸업/제학 |
| 4) 대학원 졸업/제학 | 5) 기타 () | |

DQ2.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사업주 | 2) 임원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4) 총무 또는 인사 노무담당자 | 5) 총괄책임자 | 6) 노조임원 |
| 7) 산안부장 | 8) 작업부장 | 9) 기타 () |

DQ3.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 | | | |
|--------|-----------|----------|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 해당 없음 |
|--------|-----------|----------|

DQ4.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1) 사업주 | 2) 작업반장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4) 현장소장 |
| 5) 근로자 스스로 | 6) 해당 없음 |
| 7) 기타 () | |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본 조사에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법(제33조, 제34조)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응답자 ID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 조사(근로자)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의뢰로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사건의 제재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규제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향후 산업안전보건규정을 설정·변경하고, 해당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소중한 자료로 이용될 것입니다. 아울러 귀하의 응답 내용은 단지 통계적 수치로만 처리되며, 어떤 경우에도 귀하의 개인 정보가 밝혀지는 일은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19년 08월

조사의뢰기관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사수행기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진국 교수)

조 사 책 임 : 경남대학교 김도우 교수

면접원 성명		면접일시	2019년 ____월 ____일 ____시
에디팅 ID		검증 ID	

응답자 기본 현황

SQ1) 성별 【QUOTA확인】	1) 남성	2) 여성
SQ2) 연령 【QUOTA확인】	1) 만19세~20대	3) 40대 5) 60대
	2) 30대	4) 50대 6) 18세 미만/70세 이상 【면접중단】
SQ3) 거주지 【QUOTA확인】	01) 서울 07) 울산 13) 전남 02) 부산 08) 경기 14) 경북 03) 대구 09) 강원 15) 경남 04) 인천 10) 충북 16) 제주 05) 광주 11) 충남 17) 그 외 【면접중단】 06) 대전 12) 전북	
SQ4) 업종 【QUOTA확인】	1) 제조업【←SQ4-1】	2) 건설업【←SQ4-2】 3) 서비스업【←SQ4-1】
	4) 해당없음【←문1】	
SQ4-1) 상시근로자수 【QUOTA확인】	1) 50인 미만 2) 50~99인 3) 100~299인 4) 300~499인 5) 500~999인 6) 1,000인 이상	
SQ4-2) 매출액 【QUOTA확인】	1) 120억 미만 2) 120~500억 미만 3) 500~1,000억 미만 4) 1,000억 이상	

안전보건에 대한 인식도 및 안전보건관리 현황에 관한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 또는 직업병으로 말미암아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의미
- 산업재해발생의 직접적인 요인은 주로 사업주측과 근로자측으로 구분
 - 사업주측 요인 :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
 - 근로자측 요인 :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
- 산업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예방기준을 준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적절한 작업환경 조성 등의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할 의무가 있고(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
-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을 준수, 사업주 등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를 의무를 부과(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문1. 국회는 2019년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이 법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된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2. 귀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6) 잘 모름

문3.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의 준수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높음 2) 높은 편 3) 보통
4) 낮은 편 5) 매우 낮음 6) 잘 모름

문4. 귀하는 우리나라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6) 잘 모르겠다

문 5. 산업안전·보건재해 예방을 위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순위별로 1순위로 2순위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 주세요.

1순위		2순위	
-----	--	-----	--

- 1) 경영자의 안전의식 강화
- 2)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 3) 노사의 적극적인 협조체계
- 4) 정부의 지원 확대
- 5) 산업안전보건법 처벌규정의 실효성 확보
- 6)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및 기술향상
- 7) 기타 ()

문6. 다음의 질문에 대해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표시를 해 주세요.

평가항목	매우 동의	약간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잘 모름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2)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나 취지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3)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자가 내용 을 잘 이해하고 준수하기에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행정규제 당 당기관의 규제집행력(고용노동부지도·감독 등) 및 감시기능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5)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가 잘 준수될 수 있도록 현행 별첨부 과 내용 이 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6)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경영자의 의무 는 실제로 잘 준수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7.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규정에 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조금 알고 있다 3) 보통이다
4)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문8.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이 사업체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그렇다 2) 그런 편이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문9. 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벌 적용과 관련하여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엄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들에 대한 형벌이 일반적으로 차별없이 공평하게(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10.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이러한 처벌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문11
2) 대체로 적정한 편이다 문11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문10-1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문10-1

문10-1. 처벌규정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형량을 높여야 한다 2) 형량을 낮추어야 한다
3) 기타()

문11.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그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11-1. 귀하는 이러한 가중처벌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 문12 2)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문12
3) 별로 적절하지 않다 ☐ 문11-2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문11-2

문11-2. 가중처벌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더 가중해야 한다 2) 2분의1 가중 보다 낮춰야 한다(예: 3분의1 가중 등)
3) 기타()

문12. 2019년 1월 15일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유죄를 선고는 경우에 그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받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명령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절하다 ☐ 문13 2)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문13
3) 별로 적절하지 않다 ☐ 문12-1 4) 전혀 적절하지 않다 ☐ 문12-1

문12-1.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가 적절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200시간을 초과하는 교육도 명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법원의 교육명령 부과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한다
3) 기타()

다음은 우리나라 양형위원회와 양형기준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 다음은 양형위원회에 대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신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에서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27일 대법원 아래 독립위원회로 설립되었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그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2009년에 처음으로 살인, 성범죄 등의 7개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38개 범죄군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설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13. 귀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 1) 잘 알고 있다 2) 대강은 알고 있다
3) 들어본 적은 있으나 어떤 곳인지 잘 모른다 4) 들어본 사실이 없다

문14. 귀하는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에 대하여 어느 정도 신뢰하고 계십니까?

- 1) 매우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4)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5) 잘 모르겠다

문19.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라도, 다음 각각의 상황이라면 앞서 응답한 형량과 비교하여 피고인을 어떻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 황	훨씬 더 가볍게	조금 더 가볍게	차이 없이	조금 더 무겁게	훨씬 더 무겁게
1) 피해자(근로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피해자(근로자)가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를 담당하다가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4) 피고인이 대규모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필수적 안전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문20. 법원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각의 사정들을 어떻게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집행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할 때에도 그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범죄자를 곧바로 교도소에 보내지 않고 징역형을 일정 기간(1년~5년) 미뤄줄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범죄자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지내면 징역 형이 면제됩니다. 이처럼 형의 집행이 유예된다고 하여 이를 집행유예라고 합니다.

상 황	집행유예에 매우 부정적	집행유예에 약간 부정적	집행유예와 상관없음	집행유예에 약간 긍정적	집행유예에 매우 긍정적
1)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2)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3) 동종 전과 (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①	②	③	④	⑤
4)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5) 사고 발생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①	②	③	④	⑤
6)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7)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①	②	③	④	⑤
8)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①	②	③	④	⑤
9)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①	②	③	④	⑤
10)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1)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①	②	③	④	⑤
12)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①	②	③	④	⑤
13)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①	②	③	④	⑤
14) 약물중독, 알코올중독	①	②	③	④	⑤
15) 피해 회복 노력 없음	①	②	③	④	⑤
16) 진지한 반성 없음	①	②	③	④	⑤
17)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①	②	③	④	⑤
18) 진지한 반성	①	②	③	④	⑤
19)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①	②	③	④	⑤
20) 피고인이 고령	①	②	③	④	⑤
21)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①	②	③	④	⑤
22)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①	②	③	④	⑤
23) 보험 가입	①	②	③	④	⑤
24) 상당 금액 공탁	①	②	③	④	⑤

문21. 다음의 사례를 읽고 자신의 경험, 지식, 가치관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으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 A는 W개발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업무 등 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다.
- A는 2017년 5월 9일 09:00경 W개발 주식회사 작업장에서 W개발 소속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차량 적재함 위로 올라가 그 곳에 실려 있는 폐합성수지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A는 위 작업 현장에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인 B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지 않아 위 차량 적재함 위에서 덮개를 씌우던 B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중심을 잃고 지상으로 추락함으로써 B를 중증 뇌손상 및 경추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문21-1. 위 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인 A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A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였다면, 귀하는 이것이 적절한 형량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적정하다 ☐ 문22 2) 대체로 적절한 편이다 ☐ 문22
3) 별로 적정하지 않다 ☐ 문21-2 4) 전혀 적정하지 않다 ☐ 문21-2

문21-2. 법원이 A에게 선고한 벌금 700만 원이 적정하지 않다면 어떤 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2) 더 경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
3) 기타(_____)

문22.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형량을 낮춰줄 수 있는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피고인이 벌령 등의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2) 피고인이 범죄경력(전과)이 없는 초범임	①	②	③	④
3) 피고인이 벌령 등의 위반사실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4) 피고인이 재발 방지하기 위하여 위반사항을 개선하였음	①	②	③	④
5) 피고인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유족에게 배상하거나 합의하였음	①	②	③	④

문23.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피고인의 형량을 더 높여야 할 조건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용	전혀 중요하지 않음	별로 중요하지 않음	대체로 중요함	매우 중요함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①	②	③	④
2)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어떠한 피해배상도 하지 않았음	①	②	③	④
3)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	①	②	③	④
4)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의 전과가 있음	①	②	③	④
5)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함	①	②	③	④

마지막으로 통계분석을 위한 질문입니다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 | | | |
|--------------|---------------|-----------------|
| 1) 고졸 이하 | 2) 전문대학 졸업/제학 | 3) 4년제 대학 졸업/제학 |
| 4) 대학원 졸업/제학 | 5) 기타 () | |

DQ2. 귀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 | | | |
|-------------------|----------|--------------|
| 1) 사업주 | 2) 임원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4) 총무 또는 인사 노무담당자 | 5) 총괄책임자 | 6) 노조임원 |
| 7) 산안부장 | 8) 작업부장 | 9) 기타 () |

DQ3.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 | | | |
|--------|-----------|----------|
| 1) 그렇다 | 2) 그렇지 않다 | 3) 해당 없음 |
|--------|-----------|----------|

DQ4. 귀하가 속해 있는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 | |
|--------------|----------|
| 1) 사업주 | 2) 작업반장 |
|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4) 현장소장 |
| 5) 근로자 스스로 | 6) 해당 없음 |
| 7) 기타 () | |

++++++ 장시간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연 구 진〉〉

연 구 기 관 :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이 진 국 (교 수, 법학박사, 아주대학교)

연 구 원 : 송 강 직 (교 수, 법학박사, 동아대학교)

연 구 원 : 김 도 우 (교 수, 범죄학박사, 경남대학교)

연 구 원 : 양 승 국 (연구원, 법학박사, 아주대학교)

연구상대역 : 박 선 영 (연구위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 구 기 간〉〉

2019. 3. 13. ~ 2019. 10. 31.